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 시 2014년10월14일(화)

장 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 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정 부가 출범하면서 방송통신과 관련된 업무 중에서 산업적 측면의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공익적 측면의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 원화되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서 미래의 먹거리를 선도해 나갈 방송통신 시장의 산업적 측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육성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와 방송통신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방송통신위의 역할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소중한 헌법적 가치가 아 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방송과 통신은 우리들 일 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그 파급력 또한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 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서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다시피 일부 방송사들의 부적절한 보도 행태와 인터넷상에서의 검정되지 않은 악의적인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 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

닐 수 없다는 점에서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 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어깨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정책 전반에 관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 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 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출석을 요구한 일반증 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국회방 송에서 전 과정을 녹화해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10시부터 중계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통위 국정감사는 MBC노동조합 지부장단에서 양태욱 지부장님 등 다섯 분과 전 국언론노조에서 김영곤 부위원장님이 방청을 신 청해 와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관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 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 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서를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오셔서 선 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워 장 최성준 위 부 위 원 장 허원제 임 위 상 원 김재홍 상 임 위 원 이기주 상 임 위 원 고삼석 기 획 조 정 실 장 라봉하 방 송 정 책 국 장 정종기 이 용 자 정 책 국 장 오남석 방 송 기 반 국 장 김영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 위 장 박효종 부 위 원 장 김성묵 임 상 위 원 장낙인 무 사 총 장 박영찬 기 획 조 정 실 장 최옥술 방 송 심 의 국 장 이종대 통 신 심 의 국 장 박행석 권 익 보 호 국 장 박우귀 조 사 연 구 실 장 조규상

○위원장 홍문종 중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존경하는 미래창조과 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4월에 출범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 기에서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에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 현'을 제3기 비전으로 선포하였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통신서비스의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 로 삼아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로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방송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을 마련하였으며 공영방송의 재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인상 승인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예산 증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도입하고 우수한 방송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방송통 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UHD TV와 지상파 다채널방송 등 차세대 방송통신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부와 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광고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고품질 의 방송통신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외주제 작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콘텐츠 제작 기 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와 방송콘텐츠 교류 관련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에 EBS 방송포맷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방송통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7건의 감축 대상 규제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송통신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및 방송접근 권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을 정상

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제정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과 고시를 마련하여 10월 1일부 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미래 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의 주민번호 파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5600여 개의 중소 · 영세 사이트에 대하여 주민번호 파기 기술 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세한 중소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 속적으로 홍보와 기술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 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름다 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캠페인 등 인터넷 자율정 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에게 인 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과 대전, 인천 3곳에 추가로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개소하여 전국 5개 지역에서 주민 들과 방송사들에게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방송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적 가치와 산업 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지켜나감으로써 국민 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원제 부위원장이십니다.

김재홍 상임위원이십니다.

이기주 상임위원이십니다.

고삼석 상임위원이십니다.

라봉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현황은 기 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합니 까?

- ○심학봉 위원 아닙니다, 제가……
- ○**위원장 홍문종** 심학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심학봉 위원 구미시갑의 심학봉 위원입니다.

방통위는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관 으로서 서면으로 받기보다는 오늘 국감장에서 직 접 업무보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문종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업무에 관해서……

최민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민희 위원 지금 심학봉 위원님 말씀이 일부 동의가 됐는데요. 그런데 전체 말고 단통법하고 그다음에 700Mb대 주파수 그 부분을 찍어서 집중 받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홍문종 심학봉 위원님, 어떻습니까? 단통법과 700㎞를 중심으로 중요한 업무에 관해 서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심학봉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홍문종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업무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라봉하** 방송통신 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통법에 관해서는 13쪽을 봐 주시기 바 랍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기 정착을 통해 이통사 간 소모적 지원금 지급 경쟁보다는 요금 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유통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온 ·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미래부, 이통사 관계자 합동으 로 TF를 구성·운영 중입니다.

이통사와 합동으로 지원금 공시・게시 여부, 판매점 사전승낙 여부 등을 점검하서 미진 사항 을 개선 및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점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구글에 대하여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지난 1월 시정명령 한 바 있고 7월 달에는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KT 등 사업자에 대하여 과대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고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간 균형 도모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터넷 윤리 순회강연 등 인터넷 윤리 교육 및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등 민·관 협력 공동 캠페인을 개최하였고 임시조치 개선, 명예훼손 분쟁조정 강화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단말기 유통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 에······

그리고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에 관해서는 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송기술 발전에 맞춰서 다양하고 질 높은 콘 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와 UHD방송 등 차세 대 방송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청자 복지 증진, 기술적 여건 및 방송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 상파 다채널방송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지상파 UHD방송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협의하 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의 주요 현안으로서 첫째는 재난방송 제도 개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시에 재난방송이 정확하고 효율적 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방송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방송평가 시 재난방송에 관한 배점을 상향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자·PD 등 방송현장 관계자들이 재 난방송 준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 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DMB 등 중계설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현안 두 번째,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및 파기 제도 시행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인터넷상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금지가 됐고 기 수집한 주민번 호의 파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협회·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회원사에 주민번호 파기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영세 사이트에 대한 파기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현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드리고요.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나 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효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으로 저희 위원회가 방송통신의 바람직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 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를 포함한 9명의 심의위원은 전문성과 합의제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심의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와 이에 수반하는 경쟁의 심화로 방송의 상업화 및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인터넷 불법 유해 정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 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공공성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심의를 강화하고 방송사업자와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공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방송사업자 자율심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폭력 등 저품격 프로그램 역시 방 송의 공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심의를 통해 개선에 힘을 기울일 계획 입니다.

통신은 그 본래의 출발이 사적인 대화의 확장 에 있는 만큼 통신정보의 심의는 명확한 법령의 근거규정을 두고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유 해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하고 있으며 통신사 업자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유해한 정보를 자율적 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악성 게시글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원 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외에도 그린i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사 및 학부모들로부 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매월 우수한 방송프 로그램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제 작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질 좋고 우수한 프로 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는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 로 대응하여 매체 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공적 가 치를 지켜내는 한편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를 이끌어내어 궁극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의 콘텐 츠 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방송통신 문화의 환경 조성을 통한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신장에 기 여하기 위하여 제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 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가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 신 심의위원과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우선 김성묵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장낙인 상임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최옥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이종대 방송심의국장입니다.

다음은 박행석 통신심의국장입니다.

다음은 박우귀 권익보호국장입니다.

다음은 조규상 조사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은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간단하게 업무현황 보고해 주 세요.

○**최민희 위원** 그냥 서면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홍문종 서면으로 할까요? 괜찮으시겠 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심위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 록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부족하시면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병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전병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발언을 자꾸 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됐고 국감을 하고 있습니 다. 국감은 국감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 민의 대의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 · 역할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증인 출석 문제를 가 지고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7대·18대에서도 상당기간을 방송통신위 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시절에도 KBS와 EBS가 국감 대상 기관이고 그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에 대한 출석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해결을 못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KBS와 EBS는 피감기관으로서 당연히 사장들이 나와서 그리고 그 임직원들이 나와서 국감을 받는데 이사장이 국감 기간에 출석 못 하 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KBS와 EBS의 이사장이 신 줏단지가 됐습니까?

이와 같은 선례와 관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 후배 의원들의 또 후일 이루어질 국감의 나 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국감 중인으로 출석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긴급동의 형태로 다음카카오톡 대표에 대한 국감 증인, 증인이 어렵다면 참고인 정도라도 부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불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다음카카오 대표가 영장집행을 거부하겠다고까지 나섰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소위 국민 감시, 국민 사찰, 전반적인 감 청과 사찰에 대해서 공포가 진행되고 있고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카카오 대표가 영장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에는 마구잡이식 영장집행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그 방식은 적절치 않고 여전히 문제를 헛짚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기본 적인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나 사과가 아직 미흡합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현재 다음카 카오가 보관하고 있는 메시지의 경우에는 감청영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인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라는 식으로 잘못 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카톡 대표가 영장집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실질 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법당국의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반복적인 압수수색 조치에 대해서 민간 회사가 그것을 방어하는 것은 역부족인 것 이고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 조차도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모바일 메신저의 92%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3000만의 국민이이용하고 있는 다음카카오가 10분의 1 이용자에불과한 외국 서비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보안의식과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보호 책임의식이 부족했던 점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인터넷 시대에, 디지털 사이 버 시대에 디지털 사이버에 대한 전반적인 사찰 공포가 퍼지고 있고 이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술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92%의 시장을 점유 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표로서 이용자의 사 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대책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음카카오 대 표의 최소한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두 여야 간사와 위원장께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을 지어 주시고, 확인국감 때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장 홍문종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국감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신청하는 방법에 관해서 지금 여야 간사 간에 얘기가 오가고 있고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시간까지만 참아 주시지요.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확실한……

○**전병헌 위원** 어제도 점심시간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홍문종 이제 두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국정감사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전병헌 위원 예.

○**위원장 홍문종**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우상 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이버 검열 관련해서요.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터넷상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 법률로다루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게시글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삭제할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우상호 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규정을 보면 검찰이 심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 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대책회의를 보니까 방심

위와 인터넷진흥원에 요청해서 거기서 심의하게 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방심위 규정도 보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청 자격 자체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대통 령의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인가 본데, 검찰이 대 통령의 대리인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상호 위원**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겁니까? 법관 출신으로서 생각해 보세 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검찰이 대통령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혹은 명예훼손의 대상자가 된 모 든 사람의 대리인이에요, 검찰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방심위원장님, 혹시 청와대나 검 찰로부터 이런 요청이 오면, '잘 심의해서 삭제하 라' 이런 협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전혀 없습니다.

○**우상호 위원** 청와대 인사하고 접촉하신 적이 없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이런 문제하 고 관련해서 접촉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이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검찰 회의를 보니까 검찰이 방심위와 인터넷진흥 원에다가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좍 조사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게 하겠다, 이런 회의자료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회의 자료…… 검찰청…… 참석했더구먼요, 그 실무자가. 보셨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실무자가…… 예, 참석을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 검찰에서 이런 공문이 올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은, 심의위 원회는 역시 법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절차를 충실하게 지킴으 로써 우리 방심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 자격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명예훼손 뭐 이런 것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를 해서 박효종 교수님을 방심위 위원으로 임명하고 왜 국정홍보비서관인 백기승 씨를 인터 넷진흥원에 임명했는지, 전문성이 없는데, 처음에 는 그냥 뭐 자리 하나 보전해 주는 게 아닐까 이 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의 이 흐름을 보고 '아,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 하는 자들의 글을 박효종 위원장과 백기승 인터 넷진흥원장을 통해서 삭제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어요.

혹시 이런 것을 의논해서 오신 것 아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런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는 심의위원회의 오랜 전통과 법 규정에 의해서 사실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 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최근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와' 덤벼들어 서 마치 무슨 정권의 시녀처럼 모든 기관이 이렇 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일들에 덤벼드 는 걸 보고 우리나라 권력기구의 수준이 이것밖 에 안 되나 하는 그런 한탄을 한 겁니다.

문제가 되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고 기존에 해 온 대로 죽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난리굿을 피워 서 국내 인터넷산업을 이렇게 위축시키나,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말이지요,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사 업 가지고 대통령 모욕 많이 당했어요. '나라 망 쳐 먹는 사업이다' 뭐…… 그때 청와대 홍보비서 관들이 그랬어요. 도를 넘는 공격이고 인신공격 루머가 판을 친다 이랬어요.

지금 보세요. 실제 4대강 사업이 나라 망쳤잖 아요. 그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라고 해 가지고 처 벌한다면 혹은 그런 글들을 제거한다면 건전한 비판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지나면 드러날 수 있는 정책적 판단도 다 봉쇄하게 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주의 후퇴 가능 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심의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상호 위원** 앞으로 심의하실 때 외부의 압력 이 오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편 문제, 방송위원장님, 이게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재승인 조건이 종합편성채널답게 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우상호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3년 가다가 또 그다음 3년 돼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또 재승인해 주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지금······

○**우상호 위원** 이게 보도전문채널이지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보도채널이지요, 뭐 이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3개 종편에 대해서는 재승인 조건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콘텐츠투자계획 준수, 그다음에 재방 비율에 관해서 재승인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자료를 내년 초에 제출받아 가지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엄격히 평가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이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요, 개수화해 가지고 매년 점수를 쌓아 나가서 재승인이 안 되도록, 재승인이 될때 점수 매기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 미리미리 점수를 매겨서 재투자를 강제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보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1년 단위로 심사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종합편성채널로 한다고 하더니 보도전문채널로 운영하면서 각종 편익을 다 취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종편이 종편인데요, 종일편파방송의 준말이에요, 종편이. 하루 종일 편파방송해요. 지상파가이렇게 운영하면 매번 이것 제재 받을 겁니다.

경고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 TV조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돌아온 저격수'는 징계만 15번이에요. 권고 9번, 이게 뭡니까? 유도경기도 두 번 유효면 절반으로 처 줘요. 아무 쓸데없는 것, 이것 백날 해 봤자 재승인에 영향 없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재가 실효성이 없어요, 제재가. 신경 안 쓰잖아요. 제재 받아도 그다음에 또 어기고 제재 받아도 또 어기고…… 도대체 규제기관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이번에는 재승 인 조건에 반기별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 링을 해서 공정성과……

○**우상호 위원** 특히 문제가 뭐냐면요, 이 패널 들이 문제예요.

심야토론 같은 것 하면 여당 야당 명백히 나누어서 균형을 맞춥니다, 패널 구성할 때. 종편 프로 한번 보세요. 패널진들이, 저기에 야당 편이 있어요? 70%가 여당 편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패널 구성 자체의 원칙을 저는 규정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예비집단을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패널집단을 하도록 해야지 하루 종일 편파방송하고 있어요. 우리 정권 때 이렇게 했으면 야당 난리 났어요. 진짜 작살났어요, 시쳇말로. 왜 이런걸 방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 공적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고 있는지는 반기별로 저희가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 받아서지금 전반기에 대한 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 장 민병주 위원입니다.

방통위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이동통신 시장의 아주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요, 아직 뾰족한 대책 마련이 안 돼있고 또 특히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피처폰 시절에는 스팸 문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도입 이후 에는 스팸하고 피싱이 합쳐져서 스미싱으로 발전 했지요. 그런데 과거 대부분의 피처폰 단말기에 는 스팸 신고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 알고 계 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사용자들이 KISA로 스 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 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보급이 되 면서 단말기에서 이 기능이 빠졌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됐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도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준비하는 대응책이 있 으시지요? 뭔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우선 2014년 올 해 5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다시 그 간편 신고 기능을 탑재하도록 해 놨습니다.

○민병주 위원 스팸 신고 기능에 대해서 대비를 시작한 지 3년 반이 지나서 또 표준도 만드신 걸 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만들어진 것, 그나마 다 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계속 좀 관 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다음 질문은 TIB 방송광고 매출 배분 분쟁조정 신청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그런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조와 21조 내용을 보면 방송광고 판 매 거래조건의 차별금지, 방송광고 요금은 합리 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TJB 대전방송의 방송광 고 배분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문가나 SBS 관련자 그리고 방통위 관계자 분들도 인정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도 문제점 인식하 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지난 분쟁조정에서 방송 광고균발위에서 불성립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직접 불성립 사유가 적정 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수립하셔서 본 의원실에 확감 전까 지 제출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분쟁조정 불성립이 된 것은 제도상 상대방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 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바로 그 제도를 고쳐 서 아마 곧 시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 니다.

○민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통위원장,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국정감사 제출자료 30페이지 19번 내용인 데요, 2013년 국정감사 시정사항으로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스포 츠 중계권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중계 역할을 수행하라는 부분이 있지요? 그 옆에 시정 처리 결과를 보니까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요. 추진실적으로 '권고를 1회 했다', 그리고 '올 림픽 월드컵에 대한 보편적 시청에 대한 문제가 없음. 2014년 6월 17일 현재' 이렇게 돼 있네요? 보이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그런데 2014년 6월 17일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추진완료로 답변을 하신 건데 그 이후에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가 있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추진완료라고 말씀드 리는 것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 다.

○민병주 위원 지난번 보니까 한국대표팀의 조 별예선 첫 경기인 러시아전이 모바일 IPTV에서 이른바 블랙아웃이 현실화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아침 7시 출근시간 전국 500만 명에 육박하는 모바일 IPTV 유료 가입자들이 월 드컵 시청권을 방해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있고 또 있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재송신 관련해서 지상파 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의 분쟁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인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어차피 중계권을 가진 지상파와 그것을 방송하는 다른 플랫폼과의 사이 에 원만한 합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으로 알고 있고 물론 최종적인 피해는 우리 국민 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 위원 시청자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과거 2009년에는 '재송신 분쟁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제도 개선

을 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송신 제도 개선안이나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서 따르도록 유도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생각을 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쪽의의견이 워낙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도적으로 조정 절차를 개선을 해서, 지금 쌍방이 저희한테 조정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조정제도를 두고 그다음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재정제도를 두어서 저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따르지 않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방송법개정안을 저희가 곧 의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강력한 개정안도 중요하겠는데요 아마도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대가산정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 원장님께서, 방통위가 나서서 지상파사업자 케이 블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이해당 사자들 전체가 참여하는 지상파 재송신 관련 상 설협의체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방송정책의 최종 지향점은 시청자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지금 미비된 제도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 시청권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업자의 자율협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제도개선과 적정수준의 지상파 재송신 료 산정 지침, 시청자 보호를 위한 후속제도 이 런 세 가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 유승희입 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세월호 보도 심의는 알 려진 바와 같이 철저한 이중 잣대 편파 심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각 한 오보, 모두 다 구조됐다, 전원구조됐다고 하는 9개 방송의 오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행정지도 로 경징계에 그쳤고 JTBC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 다. 그리고 재심 청구도 기각했어요. 다른 거는 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만 기각을 했습니다. 명백한 왜곡ㆍ허위방송에 대해서는 아 주 관대하고 다이빙벨과 같은 권력에 대한 감시 와 비판의 방송에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 고 기각도 다른 것은 다 받아들여서 기각을 하 고, 왜곡·허위보도에 대해서는 기각을 받아들이 고 다이빙벨과 같은 이러한 보도에 대한 재심청 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위원회가 한 번 결정한 권위를 무 너뜨리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 게 했다는 겁니다. 방심위 정말 큰 문제라고 보 고요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 완전자유국에서 부분 자유국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방심위원장님 그거 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것이 방심위의 불공정한 편파심의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BS의 '김미화의 여러분' 그리고 KBS '추적 60분' 천안함에 대해서 방심위 결정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했어요. 어떻게했지요? 방심위가 승소했어요, 패소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CBS 건은 저희들이······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패소했어요, 승소했어요? 패소했잖아요. 패소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패소도 했지만 또 다른 건은 승소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심의를 한 겁니 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수 결제로 하고 있지요? 아홉 분의 위원이, 다수결 제로 지금 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합의제의 정신을 살리면서 다수결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다수결로 하고, 구성으로 보면 6 대 3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당 추 천 6명 야당 추천 3명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는 이 구조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사 후검열이나 마찬가지인 방송에 대해서 사후검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시 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다수결 심의를 하는 것은 정치심의고 사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 에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언론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아닙니까? 방심위원장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공감합니다.

○유승희 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원합의제 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첨예하게 부딪힐 때는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지요? 다수결 로 하시고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다수결 심의가 결국은 정치적인 심의고 이거는 굉장히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주장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여러 가지를 평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정적으로……

○**유승희 위원**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 해서 얘기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단정적으로 위헌적이 라고 말하기는

○**유승희 위원** 단정적으로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는 위헌적인 부분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 의 조항과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것인데……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수결 합의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전원합의제 구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로는 그 것이 불가능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심의 는 방심위가 하고 제재처분은 어디서 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방통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처분의 절차를 개선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정책과제에 들어 있고 지금 방심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 방 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논의하고 있습니까? 몇 차례 하 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 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보고를 받지 못하시다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보고를 받지 못하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통위원장이 직접적으 로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 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잘 챙겨 보도록 하겠 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방심위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문 제를 다시 한 번 반증하는 건데요, 인터넷의 독 버섯입니다. 성매매 음란사이트가 최근 4년간 이 렇게 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작아서 안 보이시긴 한데, 2010년에 9744건 에서 2013년에 3만 4634건이 지금 돼 있어요. 인 터넷 주요 사이트 6곳에 불법정보 시정요구 건을 보면 5만 5700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만 6232 건 한 50% 가까이 육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성 매매 음란 시정요구를 해요.

그러면 방심위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런 독버섯은 놔두고 왜 다이빙벨만 계속해서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중징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 독버 섯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다이빙벨만 중징계 를 하고 있어요. 방심위는 누구를 위한 심의를 하는 겁니까? 방심위원장께서 한번 얘기해 보시 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방심위는 물론 방 송에 대해서 심의할 때에 공정성의 잣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의 성매매 음란 사이트가 독버섯이지요?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또 이게 방송말고

통신도, 통신의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모니터 요원도 확충을 많이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공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그런 음란성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자꾸 이런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서……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탄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방송심의위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이빙벨 잡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독버섯 잡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지요? 아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다이빙벨에 대해 서는 제가 또 다르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 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본분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정치적 심의는 그만하시고 이렇게 독버섯을 먼저 잡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최근 3년간 개인정보유출 건수가 2150만 건인데요 이거는 2012년 90만명에서 2014년에 2000만 명으로 아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해킹이 49%인데나머지는 33개 영업장 현장점검을 하니까 27개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감독을 소홀히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올해도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 주로 영세업체들 위주로 계속 단속을 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단속 인력이나 예산적인 뒷받침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모든 업체를 지금 다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인력과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단속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덕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해운대 기장갑 배덕광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가 보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이 법이 폐지돼야 된다 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확인해 보니까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국민들이 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을 희망이 부풀었는데 이 법 때문에 오히려 더 비싸게 사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100만 원대 가격대가 이루어지고 보조금은 지나치게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 들이 사용하는 단말기 교체주기가 좀 길어지고 또 나아가서 요금이 인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격을 내리거나 또 보조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둘 다 시행하면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말기 1대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너무 적습니다. 첫 주에는 알아보니까 10만 원대이고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20만 원대보조금이 나오는데 과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이번 기회에 보조금을 아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는냐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통신사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보조금을 줄인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동통신사로서는 종전에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했던 지원금을 저가요금제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지급을 하고 또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12% 비율의 요금할인까지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직 제대로안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덕광 위원 아무래도 왜곡된 유통구조 때문에 소비자들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감안하시고, 위원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영업정지 때 통신사가 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통신사가 벌어들인 돈 말씀이십니까? ○배덕광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한 통신사는 보 조금이 절감되니까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 비해서 22%나 오르고 6650억 원이나 벌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쓰지 않으니까 이 돈이 그대로 회사의 이익이 된 셈이 됐는데 통신사 가 입자가 5600만 명이 되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굳이 돈을 써 가면서 가입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 어졌습니다. 지금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옮기 지 않도록 문단속만 잘 하면 자기들의 이익이 보 장이 되니까,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 는 한 지금과 같은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현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수준 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 법은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0만 원 안팎 하는 보조금을 받으려 면 국민들이 얼마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냥 요금으로는 9만 원 이상 또 약정할인을 받더라도 7만 원 이상 요 금제에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월 9만 원에 2년 약정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신사는 공식적으로 그런 요금제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선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상당한 문제가 지금 생 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9만 원짜리 2년 약정 요금제밖에 없다' 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판매점의 이런 행태를 묵인해 주고 있 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위원장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 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미래부의 고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미래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 는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방통위는 지금도 분리공시에 찬성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분리공시

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덕광 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 겠습니다.

이 법은 제가 만들 단통법 개정안인데요, 단통 법 제4조 '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조항 에 '다만 지원금 내용에 대하여 이동통신 사업자 와 이동통신 단말기 장치 제조업자는 분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법제처에서 일단 낸 의견으로 는 분리공시를 그와 같이 했을 경우에 12조1항 단서의 자료제출 규정과 입법 취지가 어긋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배덕광 위원** 어쨌든 제가 본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잘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단통법의 핵심은 분리공시입니 다. 통신사와 단말기 회사가 보조금을 얼마씩 내 는지 공개되면 가격 거품도 빠지고 국민의 알권 리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단말기 회사가 20만 원을 지원했다면 처 음부터 20만 원 싸게 팔아도 되는데 부풀려 팔았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이 오르고 있 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배덕광 위원** 단말기 회사의 중저가폰 출시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 신시장은 지나치게 고가폰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 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난 8월 리서치업체 SA가 발표한 단말기 제 조사의 가격대별 판매 비중입니다.

여기 보면 300달러 미만이 삼성이 62%, LG가 67.6%고 그다음에 고가폰이 37.9%, 32.4%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비싸게 팔고 외국에서는 싸 게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비싼 단말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서 위원장님은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단말기 가격 부분에 관해서 제조사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야기는 전하겠습니다만 가격 결정 자체는 제조 사가 하는 것이라서 강제력은 아마 없을 것 같습 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양을 가지면서 가격을 낮춘 그런 단말기들이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추가질의하시지요.
-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배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개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단통법상 분리공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분리공시에 문제는 없다'이렇게 답변하셨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분리공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고시안에 집어넣었었습니다.
- ○이개호 위원 그런데 방통위 심의와 의결을 거 치면서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죽자 사자 반대를 하셨나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반대를?
- ○**이개호 위원** 예, 반대를 하셨던데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반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이개호 위원 그래요? 제가 잠시 후에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주화병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당 소속 위원님들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이 OECD 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핸드폰을 사서 쓰고 있다는 것을이게 모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통법상 분리공시가 무산된 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분리공시도 그 한 원 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공시가 되지 않은 것 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분리공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할 때 모든 통신 소비단체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 한 나머지 제조사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부까지도 모두 분리공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방통위만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반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금년 7월 9일 제27차 방송통 신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자리에 허원제 부위원장 나와 계시지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 **○이개호 위원**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 이야기를 하시다가 '법적으로 구분공시의의무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 저희가기간을 두고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허원제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정한 이 법에 따르면 그것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것은 강제화되어 있지 않지요?'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총대를 최성준 위원장님이 메시더라고요. 죽 얘기를 하 시다가 '혹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죽죽죽 말씀하시고 '각 제조사별로 각 이동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개별적인 장려금 규모는 공 개되지 않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9월 24일 그날 오후에 또 이런 얘기가 됩니다. 허원제 부위원장이란 분 이 '오늘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회의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분리공시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 을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최성준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 십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내 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된 분리공시가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 다'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십니 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후로 보면 허원제 부위 원장님이 계속해서 분리공시를 주장을 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 력을 하신 흔적이 회의록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리공 시가 무산된 가장 큰 책임이 저는 방통위에 있다 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읽으신 부분은 7월 달에 처음으로 분리공시 를 논의했을 때 이야기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 리공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주장 하는 논거들을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분리공시가 법에 위반 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단정할 단계가 아 니라는 또 제 자신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분명히 8월 8일에 저희 방통위는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고 시에 집어넣고 그것을 언론에도 공표한 바가 있 습니다.

그리고 규제위에서 심사하기 전까지 저희 방통 위는 관계기관과 매우 치열하게 분리공시가 관철 이 되어야 된다는 저희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이 야기를 해 왔습니다.

○이개호 위원 위원장님은 9월 24일 회의에서 다소 분리공시를 주장하는 듯한 발언을 몇 차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허원제 부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분들, 특히 허원제 부위원장께서 총 대를 메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반대를 계속합니 다.

결국 이러한 흐름이 단통법상 분리공시가 무산 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그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사 그리고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 시합니다.

허원제 부위원장님은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것 역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위원장님 견해 어떠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부위원장님 개 인의 견해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분리공시에 대해서 지금도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 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 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리 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 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주장이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단통법으로 인해서 우 리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단말기 가격 수준이라든 지 요금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매우 송구 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통법이 원래 의도했던 좋은 취지가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바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요금 인하의 효과가 나 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 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같이 느끼시는 그 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심학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학봉 위원 구미시 갑의 심학봉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심학봉 위원 본 위원은 평소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을 살리는 데 아주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 는 기관이 지역방송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역방송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학봉 위원** 중요하지만 방통위에서 거기에 걸맞은 재원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십니 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역방송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좀 증액된 예산을 청구했 습니다마는 정부안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심학봉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 은 인정을 하고요. 지역방송사가 28개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심학봉 위원 그런데 광고매출이 2011년도 5369억 원, 2012년도에 4555억 원, 2013년도 4200 억 원 이렇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민방 인 TBC 대구방송의 경우에는 자체 프로그램 제 작 비율이 2013년도의 경우에 2012년도 대비 10%나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방송을 단순히 시장 논리나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우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위원님 생 각과 같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통위에서 지역방송 특별법 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심학봉 위원 그 시행이 12월이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심학봉 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요, 당장 제가 살펴보니까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됐는지 아시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2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학봉 위원 그 23억 가지고 28개 지역방송을 지원한다, 평균을 따져도 1억이 안 되잖아요? 우 리 국민들이 정말로 위원장님 그 의지를 믿겠습 니까, 이렇게 해서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은 액수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와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물론 지역방송을 위해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방송광고 결합 판 매라든지 등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 ○심학봉 위원 아니, 기존 제도로서 잘 안 되니까 특별법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습니다.
- ○심학봉 위원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예산의 확고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 ○심학봉 위원 그런데 방통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력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방송국 밑에, 직제상 말이지요, 지금 지역방송팀에 일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저는 전혀 방통위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봅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3명밖에 없고 예산도 23억 편성해 놓고 이 특별법 왜 만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사실은 내 년부터 과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또 조직 협의 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

지가 못하고 그냥 2명 증원 차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드시……

○심학봉 위원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을 텐데 요. 우선 3명의 인원에다가 23억을, 한 군데에다 가 1억도 지원 못 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역 방송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위원장님 의지를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신이 없는 거예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학봉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학봉 위원 그러면 그런 약속을 믿고요. 그래서 으서 기여바소이 기그 괴자치 어려

그래서 우선 지역방송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 까 방송통신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심학봉 위원 이것을 지금 제가 다른 데하고 수평적으로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을 면제를 하든지 감면하는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에 관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거의 작업이 완성이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방송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징수 방안을만들고 있습니다.
- ○심학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도 23억밖에 못 하고 인력도 3명밖에 없고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이그래도 이런 국감을 통해서 아, 국회가 지역방송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을 면제하든지 감면하는 조치를 이번 마지막 국감 때, 그때는 무슨 결론을 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거의 작업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국감까지 저희
-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국감까지 저희가 명확하게 그 안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심학봉 위원 그러면 방향성이라도 갖고 오시 면……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방향성이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방송이나 중앙방송 다 포함을 해서 방송시장 의 가장 핸디캡이라고 보면, 문제점이라고 보면 광고시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심학봉 위원 제가 오늘 바쁜 국감 시간에 업 무보고 때 왜 업무보고를 받자 그랬느냐 하면 정 말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와 정책이 뭔지 듣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타이 틀은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시장 활성화' 이렇 게 했는데요. 여기를 봐도 광고시장을 어떻게 활 성화를 하겠다든지 확대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 인 안이 없습니다.

지금 방송사들끼리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가 경쟁한다고? 그런데 방통위가 이런 출구 전략을 잘 짜서 방송광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 는 대책을 좀 내놓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 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광고총 량제라든지 KBS 수신료 문제라든지 간접광고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책 임감을 가지고 이 광고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사들끼리 또 종편은 종편끼 리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거 지요. 그런데 무슨 방법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 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 가 당장은 답을 가져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고 민을 깊이 하셔서 우리 마지막 국감 때는 대안이 라도 좀, 방향성이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 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 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지금 방법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올해 내로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서 업무현황에는 기재를 못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인국감 때 광고제도의 구체적인 방향 또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희들의 대책 같은 것을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학봉 위원 조금 고민하셔서 구체적으로 가 져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심학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광주 남구 출신 장병완 위원입니

최성준 위원장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 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이번 에 단말기 구입비용이 상승하게 된 근본적인 이 유가 여러 위원님들이 분리공시의 무산에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은 거기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 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장병완 위원** 그런데 이개호 위원이 분리공시 무산의 책임이 규개위나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방통위에게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했 는데 저도 다른 시각에서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단통법이라는 게 사실은 사업 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법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장병완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학원론입니 다마는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야 소비자 후 생이 증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공정거래법 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도 보조금이 무분 별하게 방만하게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 를 일단은 경쟁을 제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쟁을 제한하면서도 통신비 부담 완화 라는 취지를 달성하려면 이 법 체제 내에서는 어 떻게든지 또 경쟁을 촉진시켜야만 하는 그 구조 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법의 취지가 안 살아나 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묘수가 사실은 분리공시인 거예요.

그 묘수가 분리공시인데 이 분리공시가 무산되 면서 경쟁의 한 축인 제조사 간의 경쟁이 무너졌 고 그리고 분리공시가 안 되니까 단말기 구입비 용이 이통사가 보조금을 줄였느냐 제조사가 보조 금을 줄였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되니까 사실은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법 시행 이 전보다도 보조금을 큰 폭으로 줄여버렸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단말기 구입비용의 상승이라는 현 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데 동의를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면이 있습니 다. 인정합니다.

○장병완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분리공시가 무산된 책임이 법제처를 중심으로 한 규개위에 있다고 방통위에서는 좀 강변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개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은 방통위에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분리공시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규개위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내용을 삭제 권고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최종 고시안 결정을 위해서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장병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재심사를 청구하 자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있었습니다.
- **○장병완 위원** 그렇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장병완 위원 그런데 규개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실제 최근에도 4건이 재심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재심사된 건 중에서도 이미 재심이 수용된 사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규개위 심사 이후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사실은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재심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무 국장도 제대로 모르는 발언을 해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이기주 상임위원은 아예 재심 요구한 사례가 없었다고, 할 수 있기는 한데 재심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합니다.

이것은 방통위가 규개위의 분리공시 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증명을 해 준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규개위에는 분리공시에 반대하는 산업부라거나 법제처라거나 기재부 측 정부위원 이 참석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의 생각과 달리 다른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부 근무를 해 본 사람이면 누구 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이 좀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 했더니 우선 그때 규개위 결정이 9 월 24일 날 있었는데 법 시행일이 10월 1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시행해 본 뒤에 보완 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도 이런 실무자들의 답 변, 아마 위원장님이 보시고 답변이 왔는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동의를 하시는가요? 그러면 일정 기간 시행해 보고 나면 도대체 얼마 정도 기간을 시행해 보고 이것을 시정을 할 생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분리공시의 영향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완 위원** 위원장님도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간, '호갱'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 ○**장병완 위원** 국민들을 더 이상 호갱으로 여기 는 그런 자세는 지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두 번째로 저는 방통위가 이번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규개위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법제처의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규개위의 결정 문서에도 법제처의 반대 논리가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제처가 왜 이 분리공시의 고시 제정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나 보니까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법제처에게 의뢰를 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는 반대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예측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여한 이기주 상임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어요.

이기주 상임위원, 그 당시 차관회의에 참석을 했지요?

-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예.
- ○**장병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에 의뢰하 자는데 왜 동의를 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두 차례 열렸는데요. 첫 번째 회의에는 법제처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회의에서 방통위나 미래부 입장과 산업부 입장이 대립된 가운데 굉장히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내서 그다음 두 번째 회의 때 법제처도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다시 한 번 하자……○장병완 위원 통상 일반적인 국무회의나 차관

회의에서 물론 법제처나 유관기관의 의견도 중요 하지만 사실은 안건 제출 기관의 의견이 가장 중 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 체는 처음부터 분리공시 시행에 소극적이거나 오 히려 반대하는 입장을 이기주 상임위원이나 아까 이개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허원제 부위원장 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원장은 제대 로 통제를 못 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 다.

김재홍 상임위원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법제처하고의 진행된 상황을 위원회에 서 사전에 고지를 해 주셨나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김재홍** 와서 법제처 갔다 온 얘기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 제처의 의견이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니고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속력이 있 는지 여부는 저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개위의 전체 분위기는 법 제처의 법률 검토 의견이 지배했던 것 같고요.

저희 방통위는 내부 많은 토론을 통해서 사실 은 분리공시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합의안을 규개위에서 부결시켜서 크게 유감스 럽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장병완 위원** 1분만······
- ○**위원장 홍문종** 추가질의 하시지요.
- **○장병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면 마무 리가 되니까요.
- ○위원장 홍문종 그러면 하시지요.
- ○**장병완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통위는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서 야당 추천 위 원들과 같이 논의할 때는 분리공시를 하는 것으 로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방통위 밖에서는 반대하 는 부처들과 함께 법제처의 공식적인 의견을 하 고 결과가 그쪽으로 유도되도록 동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단통법을 창조경제를 이끌 핵심 법안이라고 해서 정말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 들의 실망이 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도 이렇게 당초의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분리 공시가 무산된 데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고 앞 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 한 입장을 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검토해 가지고 저기 할 일이 아니라 이것 은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이기 때문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일어난 현상으로 봤을 때 분리공시가 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분리공시를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서는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 이기주 상임 위원도 차관회의에 가서 거의 싸움 싸우듯이 분 리공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 행된 지 보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고시를 고치고 법을 고치고 하는 것을 제가 제 입장에서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 희가 다양한 원래의 목적이었던 가계통신비 인 하, 단말기 가격 인하와 요금 인하가 되는 방안 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배덕광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울시 강동구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

지금 3일째 국정감사 시작을 하는데 2개 위원 회가 와 있기는 하나 지금 봤던 그 어느 위원회 보다 뒤에 여성분들이 많네요. 많이 부족하기는 하나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후퇴하지 않는 모습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말로 들어갈게요.

세월호 참사 때 제가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주요 방송사 재난방송의 오보·왜곡·불공정보도로 인해서 대국민 신뢰도 가 많이 추락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재영 위원 그로 인해서 방송매뉴얼, 보도지 침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언급됐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사들의 재난보도

준칙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실효성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오늘 업무현황 페이 지 19번에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조사 당시 나왔던 기준에 대한 얘기에서 가장 핵심적 이었던 것이 방송사에 내려가는 부분이 방통위 행정결정이나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강 제성이나 불이행 시 벌칙조항이 없다는 게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정명 평......

○이재영 위원 과태료를 지금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 는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과태료를 받거나 안 받거나 별 상관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면 그것 무의미하겠지 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재영 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재난책임기관이 몇 개입니까? 두 군데지요? 소방청하고 기상청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두 군데입니다.

○이재영 위원 좀 더 많은 기관이 등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 지금 확대하는 것도 저희 개선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개로 확대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자력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수해 관련해서 다양한 기관들을 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개선방안책이 언제까지 나오기로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저희 초안은 거의 나와 있고요.

O이재영 위원 초안 좀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제출로? 노력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리고 그다음에 10월 30일 날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열어서 그 안을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게 있고요.

지금 재난방송 보도 요청 후 방송사가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포맷으로 재난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재영 위원** 획일화된 포맷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 봐 주시지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방송사들이 그때 당시 재난방송을 하던 모습입니다. 보면 이게 재난방 송인지 아닌지 저 콘텐츠를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재영 위원 동영상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미국의 EAS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봐 주시지요.

소리는 안 나오지만 보시면 오른쪽 화면에 나와 있던 파란색 배경에 'EAS TES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TEST'라고 하는 이유가 재난 방송 시에 이런 화면들이 나갈 거다라는 것을 미국의 모든 방송국들이 동시에 예행연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예행연습을 통해서 저렇게 날짜, 언제 하겠다는 공지도 나가고요. 저게 텔레비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라디오까지도 아주 획일된,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보도자료가나갑니다. 그리고 예행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미국의 EAS 정도 수준의 획일된 방송콘텐츠, 재난방송에 대한, 보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우리 방통위가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은 고려하셨는지, 했으면 이번 개선방안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번 개선방안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민방 위 때도 보면 저희가 모든 민방위에 대해서 미리 공지하고 사이렌도 울리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다지 생소하게 생각하 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준을 지금까지 마련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했 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것이 이루어지지 전에는 각 방 송사마다 보도준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이재영 위원** 혹시 그것이 다른 케이블방송이 나 이런 데 공유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방송통신의회에서 고시로 재난……
- ○**이재영 위원** 이것은 고시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도 그러면 개선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래서 그것 중에 서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서 올리는 것 에 대해서 저희 개선안에……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방송수신 음영지 역, 도서 · 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음영지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한꺼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순차적으로 예 산을 반영을 해 나가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해소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것도 지금 개선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 기억에는 이것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라서 개선안에는 특별하 게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 부분도 꼭 넣어 주셔야 된다 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재난이 도서 · 산간에서 일어났을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주거하는 주민들한테 꼭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제안인데 아무래도 SNS 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도서 • 산간 지역에 SNS로 혹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 한 생각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도 지금 포털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마지막으로 4월 23일 대한기자협 회에서 제시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보신 적 있습니까? '가'부터 '자'까지 한 9개 정도가 나와 있네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대한기자협회에서 스스로 자신들 이 재난보도에 대해서 성찰하고 약간 이것에 대 한 보완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이재영 위원** 이게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책을 하 고 싶은 게 방통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방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기자협 회에서 이런 것을 마련했다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통위가 선제적으로 못 했다는 것에 대해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최근 4년간 방통위 소관 기관들만의 개인정보 유출이 1억 620만 건입니다. 이것을 국민으로 따 지면 국민 1인이 2.1회 개인정보가 유출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금융권이나 소위 공정위나 금감 위 이런 쪽의 산하기관은 제외하고 방통위 소관 만 그런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것이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 ○전병헌 위원 그런데 과징금은 총 177억 원을 과징을 했어요. 개인정보 유출 1건당으로 나누게 되면 166원의 과징금을 낸 셈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거래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상 불법 개인정보가 1건당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정도에 따라서 10 원에서부터 100원 그 정도 사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헌 위원** 일반적으로 150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개인정보 유 출과 관련된 과징금은 너무 싸다, 한마디로 시장 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를 하고 있어서 자꾸만 재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특히 KT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과징금을 10

억을 물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873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이때는 7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3월 1170만 건이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과징금 얼마 했지요? 8500만 원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1억이 조금 안 되 는……

○전병헌 위원 도대체, 이와 같이 같은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소위 누증이 돼서 더 가중 과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통위는 KT한테 로비를 받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과징 처벌이 오히려 점점더 경감이 됩니까? 왜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규정 자체가 과 징금 부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번에……

○**전병헌 위원** 아니, 매출의 1%까지로 되어 있는데 KT 매출의 1%가 8700만 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개정된 것은 그런데 지금 KT 사건은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았 기 때문에……

○전병헌 위원 아니, 1%였다가 지난 5월 달에 개정을 해서 3%로 늘렸어요, 매출금의 3%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그 법률적 규정 내에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기존에도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KT 매출의 1%가 고작 8700만 원입니까? 그것도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그것도 세 번째인데, 이와 같은 조치는 매우 미흡하고 이상한 조치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때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밖에 부과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 과 기준에 따라 그렇게 부과된 것이고요. 그 문 제점 때문에 지금 개선을 하고 또 더 나아가 서……

○전병헌 위원 매출의 1%였고 금년 5월에 법률 개정을 해서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이 반 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지는 기관이나 법 인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엄한 과징금을 물려야 되는 데 동의합니다.

○전병헌 위원 우리 통신요금 인하 문제와 관련 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신요금 경쟁이 있어야 되 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전병헌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만 통신요금 인하라는 핵심적인 본질을 외면한 채 일종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간접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공개한다든지 마케팅 비용을 억제를 해서요금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식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단통법 같은 경우도 소위 단말기 제조사에서 주는 장려금 그리고 통신서비스사에서 주는 보조금 이것을 줄임으로 해서 그 혜택을 소비자한테 물려주겠다, 넘겨주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단말기 유통법이 꼭 이동통신사나 제조사의 보조금을 줄이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전병헌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가격 인하 경쟁이 있어야소위 요금이 현실적으로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단말기의 거품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에 거품이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고액서비스 체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지요. 이세 가지가 통신요금 부담의 핵심적인 3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병헌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통신요금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3종 세트에 대한 각각의 처방이 필요한데 그것은 첫째,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단말기 자급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금의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요금인가제가 폐지가 돼야 됩니다. 어제도제가 지적을 했지만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공인한요금담합제도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것도 폐지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고액요금서비스 중심의 서비스를 알뜰폰 저가요금서

비스 체계로 전환하는 말하자면 정책적인 지원과 집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자 급제의 실현, 요금인가제 폐지, 그다음에 알뜰폰 서비스 지원이라는 이른바 3종 세트가 작용돼야 현실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하고 효과적 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석 3조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3개의 돌, 3석 1조로 해서 이른바 계속 올라가는 가계통신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업무가 미래부의 업무이 긴 합니다마는 당연히 저희와 관련이 있기 때문 에 바로 미래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 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헌 위원 최성준 위원장께서는 지난번 인 사청문회 당시에 조속한 지상파 UHD 상용화를 사실상 약속하신 바 있거든요.

어제도 보고를 받았는데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 동으로 700Mb 대역대 활용 방안 공동연구반을 운 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 연구의 성과는 어떻게 되 어 있는지 또 UHD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입장 인지, 기본적으로 UHD 채널은 콘텐츠의 질 향상 과 디바이스 기계의 시장 이런 것들로 볼 때 경 제적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UHD 채널 상 용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 신 것처럼 지상파가 UHD TV 방송을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파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 우수 한 콘텐츠를 생산해 왔기 때문에 UHD TV가 제 대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파의 UHD TV 가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 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서울 중구의 정호준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송광고 법규 위반이 갈수록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만 80건이나 발생을 했 고요. 그중에는 CI E&M을 비롯해서 상위 방송 국 3곳이 50%를 넘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 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 ○**정호준 위원** 이게 보니까 주요 방송국들이, 50%가 넘는다는 방송국들이 어쩌다가 한 번 하 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방송법을 위반하는 형태가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은 광고방송에 서 위반항목이 다르다고 50% 감경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법조인 출신이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 만 상식적으로도 강도 전과가 있고 그 뒤에 또 절도죄가 있다면 가중처벌 되는 게 합당한 것 아 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식과 달리 위반항목이 다 른 경우에 1차 위반으로 보고 50% 감경해 주는 이 방송법상의 감경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준 위원 예, 그것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항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반복 적으로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위반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보다 광고수익이 더 많으니 까 사업자들은 법 위반을 하는 게 더 이익이 된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태료 수준이 광고 수입보다 낮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방송광고 시장에서 이런 반복적인 위반 사업자에게는 좀 더 엄격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더 엄격한 제재를 좀 더 하시 는 것이 어떨까, 뭐 어떤 데는 삼진아웃제도도 있는데 그게 좀 과하다 싶으면 어쨌든 이것은 분 명히 과태료를 올리시든지 뭔가 제재를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기준을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당연히 그 과태료를 가중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만으로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해서 그 이후에 더 중한, 뭐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조치를, 그 과정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광고 위반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원 래 방통위에서 하다가 또 중앙전파관리소 그리고 다시 또 KCA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독관청의 잦은 교체가 어떻게 보 면 감독의 소홀로 귀결되고 사업자들의 반복적인 광고 위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모니터링요원을 직접 고용을 해 가지고 광고 스크린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 ○정호준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해서······
- ○**정호준 위원** 하반기부터 할 예정입니까, 그 럼?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하고 있습니다.
- ○정호준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래서 예산적인 뒷받침만 되면 가능하면 저희가 KCA로부터 가져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호준 위원 좀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미래부와 방통위에게 불확실한 업무 분장 때문에 업무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땜질식 처방이다 이 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장님이 그 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집중적으로 방통위가 좀 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광고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 그 다음에 유료방송에 대한 토막광고·자막광고 폐 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송사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논리만 앞세운 특혜 정책이다 이 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권리와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광고총량제 그리고 또 광고 규제 완화 이게 전면 철폐되거나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물론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지상파에 되고 있는 광고 규제는 너무 칸막이 식으로 되어 있어서 광고산업 활성화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를 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상 파에 대한 광고총량제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저희 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방송광고 시장 전체의 활성화이지 어느 한쪽에 편향된 그런 정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준 위원 그 밸런성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상파와 그 외의 매체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광고시장을 좀 새로운, 그냥 수익 마켓으로만 보시고 상승하는 지상파에 어떻게 보면 광고수익을 통해서 제작비 충당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채널사들이 좀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방송시장이 발전돼야 되는 것이지 시청자들의 불편과 권리 제약을 하면서까지 방송 발전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 다 고려를 하실 걸로 믿고 이런 부분에 밸런싱을 좀 잘 맞춰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시청자권익 보호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청자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 ○정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혹시 이번 연도 심의 건수 대 제재조치 비율이 반토막으로 된 사실 알고계시지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러니까 어느 방송…… 종편을 말합니까?
- ○정호준 위원 예.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 ○정호준 위원 2013년 전체 심의 건수 제재비율이 42%에서 21%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방심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비율이 2013년 8.5%에서 2014년에 22.6%로 3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이 그런데 행정지도와 법적 제재까지 합하면 사실은 종편에 관한 제재 건수는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준 위원 민원이 굉장히 늘었다고 저는 생 각을 합니다. 그런데 는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하는 데요. 방심위는 이러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과는 좀 역주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014년에 '문제없음'이라고 했던 내용을 보면 참 이상한 게 많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될 뉴스 진행자가 '민주당이 동물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시청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 셨고, '민주당이 반대하면 잘한 정책', 뭐 '야권 정치는 김정일의 유훈정치', '정의구현사제단은 조폭사제단' 뭐 이런 걸 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 구하고 '개인의 견해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하셨거든요.

종편을 감시해야 될 우리 방심위가 오히려 종 편을 두둔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사실 공정성에 관 한 부분은 항상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요 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어쨌든 지금 법 규정과 또한 자신의 판단력을 아주 사용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 ○**정호준 위원**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방통위원장님도 혹시 이런 '문제없 음' 의견에 대한 재심의를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 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재심 절차와 관련해서 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재심에 대해 서는 방심위에서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와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견해가 서로 존재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절차 개선 방안을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 ○정호준 위원 꼭 그런 절차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상식에 맞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정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최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저는 대통령의 명예는 전 국민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이버상의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청와대 마음대로 한다면 뭐 하러 다른 기구를 둡니까? 그냥 청와대 두고 1부, 2부, 3부 이렇게 하지.

특히 이 자리에 나온 지금 계신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 저희가 왜 방송통신위원 회와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뒀는지 그 점을 늘 잊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확인 할 게 몇 가지 있어서요.

검찰이 소집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 단 대책회의에 방통위도 참석하고 방심위도 참석 했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 ○최민희 위원 그런데 방통위는 제가 검찰의 방 침에 반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 는 이게 없어서 이따가 혹시 어떤 입장을 내셨는 지 확인하고 싶고요.

방통위원장님은 법률가시잖아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최민희 위원 검찰이 직접 댓글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한다, 이것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직접 할 수는 없 다고 생각합니다.
- ○최민희 위원 예, 그러니까 위반이지요? 정보 통신망법 위반적 발상이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민희 위원 저는 검찰이 이렇게 법 위반적 발상을 하면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방통 위원장님과 방심위원장님은 검찰이 지금 댓글 문 제, 직접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발상은 안 되는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부 내에서 입

장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직접 하는 것 은......

○최민희 위원 그리고 방심위원장님, 저는 방심 위원장으로 오시기 전에 권력 핵심과 혹은 청와 대 가까운 분들과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심위원장으로 오신 이후에는 방심위원 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방심위는 이게 정부기구도 아니고 좀 거리를 둔 특별한 독립적 형태를 둔 이유 아시고, 이게 뭐 종편 쪽에 아는 분들이 있어도 '종편 자판기 위원회'이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방통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속기록 읽어 봤거든요. 9월 24일 속기록 읽으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걱정을 어떻게 그렇게 네티즌들이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 놨는지……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요지는 뭐냐면 이번 단통법은 전 국민을 호갱화시키려는 법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단말기나 요금제가 높아서비싸게 이동통신을 쓰게 되면 국민들이 싼 방법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논리를 대서 다 비싼 쪽으로 국민들을 유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호갱과 호갱 아닌 국민이 있었는데 이제 전국민을 호갱화시켰다 이런 거고요.

이 만화가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진짜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보조금 상한선 정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와 감시만 했어야지요.' 이게 국민들의 시각인 겁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속기록 읽으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 단말기유통법이 마치 겉으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갈등 같지만 결국 정부기구가 나서서 이통사 제조사의 갈등을 해결하는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거잖아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통법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 도 법을 발의하셨는데 저는 그냥 법제처에 빌미 를 줬던 단통법 12조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그게 빌미로 이용되어서 방통위와 미래부가 그 뒤에 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찬성해 주실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12조1항 단서의 삭제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할 부분인지는 저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최민희 위원 그 취지는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그것이 분 리공시에 저해가 되는 규정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사실 미래부는 정권이 바뀌면 존속할까 이렇게 걱정을합니다. 그러나 방통위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않습니다. 방송을 총괄하는 기구는 위원회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방통위원회가좀 더 의연하게 미래부와의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700mk 연구반, 지상파 UHD 불가능한 결론 사실상 냈는데 여기 방통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 배정된 통신용 40mk폭을 존중하고 나머지 68mk 내에서 논의하자 이거에 방통위가 왜 동의하십니까? 이거 맞습니까, 고삼석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삼석** 그 내용은 지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는 거기에 동의한 사실 없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700Mb 연구반에 방통위 안 들어가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연구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연구반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의견인 것이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은 아닙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기 배정된 40 版폭을 제외한 60版폭에 대한 수요 검토 진행하기로 한 것에 찬성 안 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걸 찬성 반대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40‰가 통 신용으로 배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이미 결정 돼 있는 부분이니까 존중은 하지만 반드시 그것 이 어느 경우에도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 지 않습니다.

○최민희 위원 예결위에서 제가 UHD 방송이

UHD TV가 경제에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700Mb 대역에서 UHD를 빨리 지상파에서 구현해야 이 게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된다, 그래서 통신에 기 배정된 40대역에 대해서 이거 뭐 방통위 의결만 한 거고 이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얘기했을 때 위원장님께 서 예결위에서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는 또 통신 에 기 배정된 40대역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셨습 니다.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무시를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기본적으로 되 어 있는 게 방통위 의결을 거쳤고 이후 행정절차 를 안 거쳤고요 주파수 배정표에 700Mb대역은 방 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방통위 의 결만 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확한 입 장을 밝혀 주십시오. 어제 미래부는 국회와 논의 하겠다고 했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도 그 부분에 대 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같이 참여해 서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최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아직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 다마는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2시 15분에 감사 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이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홍문종 의사진행발언이요?

이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시지요.

○**이개호 위원** 최성준 위원장님께서 7월 9일 제 27차 방통위 보고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 찬반양 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리공시에 부적절한 면 을 언급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의사진 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성준 위원장님 발 언을 죽 살펴보면요, 제조사 장려금 규모 비공개 가 입법취지라고 하시면서 분리공시의 부적절 의 견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언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를 다시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 제가 잠깐 말 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홍문종 말씀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그때 발언한 기 억으로는 '저는 분명히 분리공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부에서 분리공시 찬성 하는 의견들 죽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다 른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분리공시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개호 위원** 찬성을 하는 데 대한 논거는 전 혀 얘기를 하지 않고 반대의견만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 부분은 다 른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논거를 죽 말씀을 하셨 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기 전 단계기 때문에 찬성논거와 반대논거를 같이 나열을 해 놓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반대논거들을 참고하시라 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알았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2시 15분에 감사를 계 속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최성준 위원장님, 단말기유통법 이 소비자들의 고가 단말기나 고액 통신요금 부 담을 덜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고 제일 핵심 수단은 보조금 제한을 하는 것이었지 않습 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한 플러스 그다음에 보조금을 차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그게 4개월 동안 법 시행 예고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1일자 로 시행이 되면 제1차적으로 단말기 구입할 때 보조금이 옛날보다 훨씬 적다 하는 것은 알려져 있었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인다 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쎄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단순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과 실제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 느끼는 체감 가격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일부는 아예 몰랐을 수도 있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마는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과거처럼 보조금을 그렇게 못 준다는 내용이란 걸 몰랐던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알았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직접 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이 나가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그런 것을 다 알았다 하더라도 이 수단이 최종적인 법의 내용이 아니고 이건 수단이고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그동안에 호소해 왔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그거는 점차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제도가 소비자 후생에 낫다라는 결론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직접 당사자인 소비자들에게 그거까지는 아직 이해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든 아니면 현장의 판매점 대리점이나 아니면 이통사 제조사들 차원에서든 간에 충분한 홍보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 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유통망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 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과거와 같이 제조사나 이통사들이 대량으로 보조금을 갖다가 뿌리고 그 보조금이 결국은 돌 아 돌아서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그 소비자들의 부담과 희생의 토대 위에서 유지되는 유통 망 이것이 그대로 가만 놔둬도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는데다가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통신비 부담을 가지고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 장려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 유통망을 통해서 뿌리고 하는 이 구조가 이제는 점점 시장에 일정부분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유통망 종사자들은 알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응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영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그 부분을 집어서 설명을 못 해 주고 주로 제도 전체에 대한 홍보 설명 위주로 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거에 대한 이해와 또 그런 이 해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의 정착에 각 주체들이, 기업이면 기업 소비자 또 유통망 종사자 정부 이 런 주체들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 순기능적으로 적응하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적응되는 데는 제도 의 얼개 구조상 최소한 두세 달 이상은 걸리거든 요. 소비자들이 이제는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해 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또 통신 비가 그다음 달에 나한테 오는 고지서가 과거보 다 더 낮아져서 그 후생을 혜택을 입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제조사들은 단 말기 가격을 낮추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통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은 보 조금을 가지고 잉여보조금을 가지고 통신비를 낮 춰 주는 그 조치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그 시간, 이 제도의 정착 또 성패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제 막 초기 단계인데 시장의 격한 반응 때문에 그렇겠지만 벌써부터 제도가 실패니 어쩌니 또 이렇게 대안까지나오는 게 저는 솔직히 이게 제도 정착에 오히려난조를 일으키지 않을까 교란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벌써 이 법이 실패다, 새로 운 법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벌써 대중 속에 소 비자들, 시장에다가 이 법은 한시적인 법 곧 없 어질지도 모르는 법 하는 그런 인식이 박히고 그 러면 굳이 따라야 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인 데 그 법을 전제로 해서 내가 적응할 필요도 사 실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인식이 되 면 제도 정착에 굉장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보고 그것 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왜 그런가를 살 펴보고 또 그것을 최소화하는 작업은 해야 되지만 바로 즉자적으로 반응해 가지고 '제도 실패했다', 이제 겨우 2주 지났는데 '제도 실패했다. 다른 법 개정하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른 제도를 내놓 는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제도인들 정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해야 될 역할 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추가질의 때 다 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부가 해야 될 후속조치들이 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들로서도 이 제도 가 안착이 되어서 원래 원했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 니다. 다만 그 과도기에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에 그분들이 과거보다 좋지 못한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원래 이 제도 자체는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단말기 가격 이나 요금 가지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원금을 비롯한 휴대폰을 구입하는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 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시간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기본 방침은 일 단은 이 제도를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우선 응급 처방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보완 해 나가겠지만 기본 틀은 가지고 갔으면 하는 것 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문종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원식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여쭤 볼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기업의 편을 들거나 아니 면 대기업에 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시 여쭤 볼게요.

먼저 단통법 분리공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 데 저는 이게 무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다수 국 민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좌절되는지 또 대통령 이 국민들한테 선언한 공약이 어떻게 무산되는지 의 전형적인 과정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방통위가 다섯 군데, 미래 부가 세 곳에 법률 자문을 미리 받았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최원식 위원 그리고 대략 분리공시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었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 습니다. 그 부분이 분리공시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
- ○최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 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통사 는 모두 동의했고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도 삼 성 빼놓고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다 동의한 거 맞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LG전자는 처음에 는 반대하다가 동의로 돌아섰습니다.
- ○최원식 위원 법제처 해석이 문제인데 제가 법 사위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심의 위원이 100여 분 계신데 대부분 이름은 밝히지만 어디 로펌 소속인지 비공개하고 있고 또 사건에 참석하는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도 비공개라는 것 알고 계세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번 일에 관해서 말 씀하시는……
- ○**최원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 정확하게 법령해 석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원식 위원 하여간 법제처 유권해석이 법원 에서도 종종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 ○**최원식 위원**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지금 분리 공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계신 거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러니까 법제처 의 해석하고는 다른 입장입니다.
- ○최원식 위원 그런데 허원제 부위원장은 갑자 기 9월 24일 그전에는 1년 정도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공개적으로 자 기는 분리공시를 반대했다라고 밝히고 또 위원장 은 재심사 포기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포기라기보다는 그 당 시 상황이 10월 1일부터……

○**최원식 위원** 재심사를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 재심사는 고시를 저희가 확정을, 그러니까 저희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고시를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 사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했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 결국은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뭐 대안 강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원래 추진했던 고시안의 일부가삭제가 됐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하기보다는 일단 통신시장의 흐름을 본 다음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같이……

○최원식 위원 그것은 너무 한가한 판단 아닙니까? 단통법을 추진할 때에는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공약이었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려는 핵심적인사안이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그 부분은 안 됐으니까 나머지는 한번 상황 보겠다 이것은 너무 한가한 주장 아니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물론 그렇게 평가하시 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최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민들이 방통위가 가계 통신비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기대가 높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실망도 크고 분노까지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수립해서 뭔가 가계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지금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다시 이것을 법률로 추진하려는 동향도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신다든지 무슨 입장이 있으셔야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 요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됐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 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평가사업의 법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지금 방송법 31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평가위원회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다시 채워야 되고 또 내용의문제인데요, 이 평가는 주로 군소 사업자, 중소PP라도 제작역량이 뛰어난 사업자를 긍정적으로평가할 수 있을 것처럼 제도의 취지가 보이지만실제로는 자원 경쟁력이나 유통 경쟁력에 배점이높아서 중소 PP 육성과는 관련 없이 PP 사업자를 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쟁력평가로 변질된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의 총점 상위 20위까지의 채널의 기업 결합 여부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10년도는 20개 채널 중에서 계열 PP 채널이 19개, 개별 PP가 1개, 그다음 2013년에는 20개 채널 중에서 계열 PP 채널이 13개, 개별 PP가 7개로 집계되는 등 대기업이나 지상파 계열의 PP 사업자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래서 방통위는 평가의 반영 비율이 지금 10%인데 20%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미래부는 지금 지상파 계열 PP나 MPP가 상위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현실에서 단순히 반영비율을 상향하면 중소 PP가 또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의견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지금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을 하면서 중소 PP와 지역 지상파 등 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 비율을 매년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등 중소 PP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데 오히려 방통위는 이와는 다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 PP, 대기업계열 PP에 대한 평가가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소 PP 지원은 지금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평가가 틀렸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것 상당 부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원 경쟁력이나 유통 경쟁력보다는 제작 경쟁력의 배

점을 일단 높였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원래 지원 자체가 제작 능력이 뛰어난 중소 개별 PP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제도의 운영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방통위가 협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래부보다, 행정부서보다도 대기 업 중심의 정책이 나오고 있고, 분리공시도 관철 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 고. 또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도 결과치를 죽 분석해 보니까 대기업 계열 PP를 주고, 이러한 방통위가 과연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 에 중소 PP나 어려운 지역 PP를 제대로 할지 난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역량 평가 같은 것은 제도를 고 치고 또 법적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이 평가 자 체도 가능하면 저희 상임위원이 위원장인 위원회 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높이는 등의 여 러 가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국민과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그리고 부 위원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처신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의견을 확실히 내세우든지 그래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별히 국민과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이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군현 위원** 방송통신위원장님!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이군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인정보 누출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알고 계시 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군현 위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막아야 될 텐데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방 통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개인 정보 실태조사의 대상과 횟수를 늘리고요, 우선

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KT 에 과징금을 일단 부과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올봄에 유출된 부 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 ○이군현 위원 올봄에 했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이군현 위원**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정 처분을 할 뿐만 아니라 엄격히 행정처분을 시행 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 에 동의를 합니다.
- ○이군현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접수 이후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가 잘 이 루어졌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 아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그렇게 계획 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군현 위원 지금 개인정보 누출 건수가 얼마 나 되는지는 보고받으셨나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건수로 치면 2014년도 에 64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군현 위원** 아니,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누출 ۰].....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개인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덩어리로 말씀을 드린 거 고요. 개인으로 치면 24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이군현 위원 2171만 건 이렇게 보고자료를 받 았는데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이군현 위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 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신사 영업점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대리점과 그다음에 판 매점을 합쳤을 때 중복 계산된 것을 빼고 나면 지금 한 2만 5000여 개, 그다음에 중복된 것까지 계산하면 4만 6000여 개까지 나오는데요, 세 통 신사가 중복된 게 있어서 그것을 제하면 한 2만 5000여 개에서 한 2만 8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군현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는 5만 2000개

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금년에 처음 하신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 서요?

○**이군현 위원** 그렇지요. 이동통신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조사가 금년에 처음인 것으로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관해서는……

○이군현 위원 아니요, 영업점에 대해서, 이통사들 영업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게 최근에 금년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현장조사는 불법 지원 금, 옛날에 불법 보조금 지급될 때도 현장조사는 많이 해 왔었습니다.

○이군현 위원 많이 해 왔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군현 위원 현장조사를 지금까지 거의 안 해 온 것으로, 방통위가 영업점에 개인정보 보호 위 반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서는 올해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군현 위원** 방치하고 왔던 것 아닙니까, 지 금까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그래서 영업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리고 33개의 영업점 현장조사 결과 81.8%가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 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마는 많은 수가 위반한 것으로 해 서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 다.

○이군현 위원 33개 조사해 봤는데 81.8%, 82% 정도가 위반했다니까 이게 몇 만 개, 5만 2000개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전체 이통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어떻겠습니까? 33개 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정보 실태를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도 개인정보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마련을 하셔 가지고 저희 실에다가 좀 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밑의 사람 시키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우선 지적된 데는 또 확인을 하고 그다음 하반기에 더 늘려서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취급하는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인원으로모든 업체를 다 조사하기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나 그런 것을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게 시대가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차원에서는 지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위원회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관 련해 가지고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현행법 위반 이다 이런 시비가 들어와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 위 입장이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가지고 와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하려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했고……

○이군현 위원 현재 시민 개인정보가 자기는 모르는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이것을 수합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집됐다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본인이 제3 자에게 이미 공개해 놓은 것을 수집을 하는 것인 데요. 그 부분도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수집하는 절차가 현행법에는 위반되는 소지가 있 다고 의견을 준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O이군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법률을 하셨으니까, 이 개인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수집돼 가지고 이게 개인을 감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염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비식별화해 가지고 어느 개 인의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좀 더 확대해서…… ○**이군현 위원** 그렇지요, 누구인지 모르게 해 가지고 비식별화해 가지고 데이터로만 이용을 해 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를 하려고……

○이군현 위원 그게 중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가이드라인 안에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단계가 일단 수집을 해 와 가지고 비식별화하는 데 수집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하여튼 이 빅데이터 산업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제 고도화되고 과학기술이 발 전되고 하니까 빅데이터 산업도 진흥도 되고 또 개인정보 오남용도 막고, 이게 참 고민인데 두 가지를 잘 가져가야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군현 위원**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서 선진 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을 시키셔 가지고 철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향 후 추진방향, 일정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저희 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도 외국 제도는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외국의 법하고 우리나라 법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것은 당연히 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군현 위원 제 취지는 아시겠지요?

시간이 가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마 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 홈쇼핑과 관 련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뭐던가요, 위원장님 보 시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무튼 저희들 광 고심의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과대광고 도 있고 간접광고 있고 협찬 고지 위반, 여러 가 지가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형 홈쇼핑 업체들이 지금 매출이 5조, 6조 이런 식 이 되잖아요, 빅3만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이군현 위원** 이렇게 엄청난데 최근 3년 동안 의 전체 홈쇼핑 제재의 84%가 허위·과장광고 문제거든요. 여기 집중돼 있는데 방심위에서 홈 쇼핑에서의 과대 그다음에 허위광고에 대해서 심 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재승인을 할 적에 벌점 을 먹게 되면 이게 다 반영이 되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박효종 교수님이 사회에 계실 때 다 존경받는 학 자 아니십니까? 가졌던 초심 잃지 마시고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단속 좀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명심하겠습니 다.

○이군현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이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울산 울주군 출신의 강길부 위원 입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 내년에 MMS를 활용해서 초·중학교 사 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보고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강길부 위원 그리고 또 제3기 방통위원회의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에도 MMS 추진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의지가 대단히 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이 어떻 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MMS는 새로운 방송 기술로서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다만 지상파에 활용을 할 경우에 지상파가 너무 커지는 문제에 대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 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는 방향 내에서 또 그리고 국민들한테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는 방향 에서 먼저 EBS에 대해서 시험서비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 케이블방송사나 종편, 보도 PP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간에 이해가 상충되어서 갈등이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전 국민적인 관 심사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EBS에 한해서 시범방송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영국·프랑스·일본·미국도 MMS로 인해서 발생한 채널은 교육과 어린이 채널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현재 EBS는 지상파 이외에 수 능·내신·논술교육을 비롯해서 초·중학교 교육까지 편성한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유료방송에 배정된 채널이 200번대 이상이고 일부 사업자에서는 시청료가 더비싼 프리미엄급 상품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접근이 제약이 따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가계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우리나라 가정의 특성을 고 려할 때 EBS에 대한 제한적 MMS 도입을 검토 해야 할 때라는 그런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8월에 정책과제 발표 때도 언론과의 일문일답에서 EBS의 MMS 방송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 었는데 방통위 차원의 정책 추진방향과 향후 계 획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인 지상파 EBS의 채널이 둘로 나눠지면 다양한 교 육방송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하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MMS 자체를 하려면 방송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전에 일단 시범서비스 형태로 EBS에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요. 거기에는 광고도 안 붙고 목적도 좋기 때문에 다른 거부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송출이 지금 EBS가 자체 송출은 못 하고 있고 KBS 송출을 빌려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효종 방심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온라인 청소년 유해매체 확산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해외 포털에 대해서는 음란물 유통에 대해서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지금 어쨌든 청소년 유해매체물 이것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튼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 심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길부 위원 구글의 검색엔진은 성인인증 없이도 아주 수위 높은 선정적인 사진이 검색되거나 음란사이트로 접속이 바로 가능합니다. 더욱심각한 것은 구글의 검색엔진이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인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어 있고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앱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에도 성인 앱에 대한 특별한 표시도 없고 다운로드에도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인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와 노력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앱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구글이 전체의 한 98%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심각성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법적 논리로 국경 간에 공급이 자유로운 플랫폼의 특 성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나 계약 체결의 관행은 국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에 이런 측면에서 자국 내 이용자들의 보호 등 을 위해서 자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 해서는 국가관할권을 통해서 해외기업에 대한 규 제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나 방심위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지금 어쨌든 청소 년 유해매체를 광고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서 여러 가지 형사처벌할 수 있는 등 제재 규정 이 마련되어 있지만 특히 인터넷광고 매체들은 사실 굉장히 교묘하게 유해매체 선정 기준을 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정말로 노력해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 청소년 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하여 튼 심의와 그다음에 모니터에 아주 최선을 다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방통위원장도 한 말씀 해 주시지 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로서도 기본적으 로 방심위와 같은 입장이고 특히 포털에 대해서 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방침대로 하 도록 하고 그다음에 요사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음란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도 미성년자에게 스마트폰을 개통 해 줄 때에는 기본적으로 차단 어플리케이션을 깔지 않으면 개통시켜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 시행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 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강길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홍의락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현재 9개 지역민방이나 18개 지 역MBC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 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 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이것은 특히 미디어렙 도입으로 지상파 중앙 3사와 지역방송의 광고매출이 큰 차 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보면 201 1~2013년 같은 기간 중앙 3사의 광고매출이 0.1% 줄어든 반면에 지역방송은 12.3%나 줄어들 었습니다. 지역방송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물론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방통위의 정책적 지원이 절 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1년에 비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 수율이 낮게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 한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 수와 관련해서는 지역방송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 적인 징수의 틀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올해 연내에 개선방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 ○홍의락 위원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홍의락 위원 그런데 그렇게 검토하시더라도 여전히 형평성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징수율이 2.78%인데요. 현재 IPTV나 종편, 보도PP, 그러니까 뉴스Y나 YTN 같은 경 우는 방발기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 료방송인 케이블SO, 위성방송사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낮 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방이 징수율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논란되고 있는데 물론 법으로 규정된 기금은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형평성 이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 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하나 보는 관점은 기본적 으로 지역민방들이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사용 대가가 거기에 또 일부 좀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기본적으로 지역방 송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징 수율 제도를 개선을 할 때……

- ○홍의락 위원 그러면 이 형평성 논란이 논리적 이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개선의 의지는 있는데
- ○**홍의락 위원** 그러면 개선을 하시도록 해 주셨 으면 좋겠어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 ○**홍의락 위원** 종편 같은 경우에 한 푼도 물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도 지금 종합 해서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 ○**홍의락 위원** 개선을 좀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 ○홍의락 위원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지역방송 방발기금 질의를 했지만 오는 12월 지역방송발전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투자의 어려움으로 열악한 제작환경에 놓여 있는 지역방송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셔서 지역방송팀에서 지역·중소방 송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서 37억 요구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그런데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14 억이 삭감됐고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활성화를 위 해서 6억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심사는 기재부 몫이지만 특별법까지 마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삭 감되게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 까? 좀 더 어떤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방통위는 올해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예산 20억이 신설됐는데 요. 고작 3억 증액됐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역방송인 들에게 계속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할 듯하지만 지역방송인들 입장에서 희망고문을 당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의지와 적극성을 또 정책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말씀을 해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지역방송사들한 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될 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일부라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을 좀, 분리공 시 무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화면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9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보면 이통 3사 및 팬택의 의견과 삼성전 자 의견이 딱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서로 상반됩니다. ○**홍의락 위원** 딱 분리되는데 결정은 삼성전자 의견대로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상위법을 위배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통 3사 및 팬택의 의견과 삼성전자 의견 대립에서 삼성전자 의견이 채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규개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데 삼성전자 의견은 단통법에 분리공시 근거가 없고 장려금의 공개로 인해서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통사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이통사는 사실 공공재인 주 파수를 국가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는 곳이지 않 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업비밀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조사 정도의 수준까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따라서 이통사는 자기들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는……

○홍의락 위원 찬성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그런데 정부 측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의견을 들었다는 의미는 정부 측에서는 이통사의 영업비밀도 인정하고 제조사의 영업비밀도 인정했기 때문에 분리공시 정책을 삭제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의미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방통위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면 즉각적인 재심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1일 시행을 맞출 수 없다'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요즘 하루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밤을 견디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오늘 밤 이 추위를 못 넘기면 죽습니다. 그렇지요? 내년 봄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올 겨울을 어떻게 넘길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아우성이에요. 그러면즉각적이고 아주 민첩한 행동을 해 줘야 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 실천해 보고 그 결

과를 봐가면서 해결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느 긋한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도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재심사 청구를 못 한 것은 일단 10월 1일부터 시행될 때 그 고시가 없으면 공시 및 게 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일으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고시를 분리공시가 빠진 채로 의결을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홍의락 위원 그런데 그 날짜에…… 추가 1분 다 썼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예, 추가질의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권은희 위원**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여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정보 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를 해야 한 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권은희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동 시행령 29조(본인확인조치)를 보면 '공인인증기관이나 또는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 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 ·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 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 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권은희 위원 그러면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청소년 보호의 책무와 본인확인조치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밀한 점검을 못 해 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권은희 위원 이 부분에는 좀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제 JTBC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060' 성인 전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것은 봤습니다.
- ○권은희 위원 그것 보셨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권은희 위원 성인전화 2만 5000개 중에서 2만 1000개가 성인인증이 엉터리라고 합니다. 초등학 생도 그냥, 95년생이 지금 만 19세가 되는데요, 그 이후 번호만 입력을 하면 무사통과입니다. 사 실 인증이 필요가 없어요. 청소년들한테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데요.

성인인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기서 직접 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060-900-1112' 보이 스채팅 번호인데요. 일단 제가 번호를 좀 눌러 가지고 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걸며)

제가 '590230'을 눌러 보겠습니다. 2월 30일은 없는 거지요? '590230'을 눌렀는데 성인인증이 완 료가 되네요. 이것 정말 큰일이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이 주민등록 수집을 못 하고 생년월일 수집으로 바꾸면서 지 금 생년월일을 그렇게 넣으면 다 되지 않도록 생 년월일과 휴대폰번호를 매칭시켜 가지고 본인확 인을 하도록 했는데……
- ○권은희 위원 지금 그게 안 되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상당수 업자들이 그것을 매칭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저 희도 그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바로, 자율적 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취하려고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 ○권은희 위원 지금 비싼 것은 1분당 1000원 이 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러는 사이에 '060' 번호 업체는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고요. 또 이 업체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이통사의 매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060' 관련해서 모니터링은 어 떻게 되는지 위원장님이 파악은 못하신 것 같은 데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정보통신진흥협 회에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고 있는 데 이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은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2012년에 방통위에서 나온 보도자료

입니다.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해서 이용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 통신사업자 공동으로 전 화정보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하겠다고 나온 홍보자료입니다. 이렇게 홍보자료 는 내놓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통 3사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방통위가 나서서 이 부분을 꼭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라든가 미래 부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리고 명의도용이 우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명 의도용된 휴대폰을, 우리가 대포폰이라고 하지요, 단순한 명의도용피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 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고 얼마 전에도 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현재 명의도용 피해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최근 5년간 도용 접수 건수만 8 만 2000여 건이 되고요. 실제 명의도용 건수가 2 만 1000여 건, 피해액은 123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있는 지역구가 포함된 대구 경북에서 SK네트웍스가 10만 대 이상 대포폰을 개통한사실이 또 검찰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래서 방통위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통 3사를 확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결 정한 바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일단 수사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우선 SK네트웍스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다른 통신사까지 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어쨌든 지금 문제가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대포폰을 개통한 일당이 또 구속이되었고요. 그래서 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부정사

용에 대한 실태점검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이 내국인의 경우에는 6개월 내이더라도 다시 본인확인을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 이동통신사가 6개월 내의경우에는 본인확인을 다시 안 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고쳐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포폰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대포폰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도 철저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은희 위원 그 조치한 결과는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것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확인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 다.

○**위원장 홍문종**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인천 부평갑 문병호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KBS 이사를 추천할 때는, 선임할 때 절차를 거칩니까? 뭐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반적으로 이사 전원이 교체가 될 때에는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보궐 이사의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문병호 위원** 혹시 공모라든가 그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러면 관행적으로 해 왔단 말씀 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데 보임할 때는 공모를 안 거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절차 위반 아닙니 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절차 위반이라고까지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규정……

○**문병호 위원** 아니, 그러면 방통위에서 주먹구 구식으로 방통 위원들이 아무나, 친구나 지인이 나 아무나 추천해도 되는 겁니까? 공모 절차를 거쳐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그렇게 하면 안 됩 니다마는 과거에도 몇 번 보임을 할 때에는 공모 절차 없이 상임위원 추천으로 해서 그렇게 해 왔 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KBS 이사를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추천하면 안 됩니다. 절차를 그동안에 진행했고 당연히 공 모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보 임할 때는 왜 공모 절차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임의 추천을 받아 갖고 하십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이인호 이사장 이사 추천은 무효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고 절차에 중 대한 하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한번 다루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현재는 규정이 없어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그래서 무 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를 전체적으로 할 때나 또는 보임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도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허원제 부위원장님, 이인호 이사 장을 이사로 추천한 분이 허원제 부위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와대 인사로부터 부탁을 받았 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그런 적 없습 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 적 있지요. 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세요?

지금 위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아닙니다. 그 런 적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러면 어떤 경위로 해서 이인호 이사를 추천하게 됐습니까? 개인적으로 잘 아시 는 분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아니요, 제가 우리 최성준 위원장께서 같이 논의를 해서 추천 을 했습니다.

○문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인호 이사를 최초에 이사로 추천하자고 말을 꺼낸 사람이 허 원제 부위원장님 아닙니까? 어떤 경위로 해서 이 말씀을 꺼내게 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우리 상임회

의에서는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위원 장과 논의 과정에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허원제 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꺼낸 분 아닙니까? 그러니 까 그게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고 추천하라고 해 서 추천하신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그것은 사실 과 다릅니다.

○**문병호 위원** 그러면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 습니까? 평소에 잘 아시는 지인입니까, 이인호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제가 방금 우 리 최성준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추천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병호 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을 꺼낸 사람 이 … 위원장님이 꺼내셨어요, 이인호 이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제가 처음에 꺼냈 습니다.

○**문병호 위원** 어떤 경위로 위원장님은 이사를 추천하게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KBS 이 사를 추천함에 있어서 KBS 내부의 분보다는 외 부에 또 덕망이 있고……

○**문병호 위원** 아니, 이인호 이사장님하고 평소 에 잘 아시는 관계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문병호 위원** 그러면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 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과거에 KBS 이사를 역임하셨는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위 원로로서 덕망 있는 분이 어떤 분 들인지를 이렇게 그냥 알아봤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것 누가 믿겠습니까? 청와대하 고 사전에 다 약속이 돼서 청와대로부터 이인호 교수를 이사장으로 위촉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추천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정을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호 위원 만일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위원 장님이나 허원제 부위원장이 위증하시는 겁니다. 그것 책임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병호 위원** 더 좀 알아보고 다시 또 질의하

겠습니다.

다음에 방심위 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이버상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검찰이 직접 삭제하겠다 하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것이 적 법한 겁니까, 위법한 겁니까? 방심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 방심위에서는 어쨌든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니터를 통해서 심의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그것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제재를 결정합니다.
- ○문병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찰도 만약에 그런 삭제를 할 필요가 있으면 방심위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방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삭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걸 삭제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 자기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심위원장님?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 하여튼 방심위에서는 어쨌든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삭제라든지 이용 해제라든지 이런 걸 할 수있다고 봅니다.
- ○문병호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검찰의 입장에 대한 방심위원장님의 견해가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르다고 보세요?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마 지금 검찰도 자기 스스로 이것을 삭제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호 위원 아니, 검찰의 보도자료 보면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관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삭제하라고 요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저희들로서는 심의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문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검찰이 직접적으로 그 기관이나 또는 개인에게 사이버상의 게시글을 삭제하라 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방심위에 요청을 해서 그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 ○**문병호 위원** 그다음에 방통위에 묻겠습니다.

광고총량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 ○문병호 위원 요새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소신을 갖고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 ○문병호 위원 그런데 일부 종편에서는 이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반대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님께서 결심을 못 한다 그런 견해가 있던데, 지금 결심하셨어요, 추진하기로?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총량제가 실시됐을 경우에 지상파의 광고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매체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아마 곧, 잘하면 이번 주 내로 저희에게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 ○문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박효종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것 많이 지적들 하셨던데, 어쨌든 불법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고시정 요구하고 있는데 그 양 자체도 많아지고 또모니터링도 열심히 하시고 사업자들하고 업무 협의도 되고 이래 가지고 심의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 ○김재경 위원 그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불법금융 이런 것은 한 1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되어 있고 마약류, 사행행위 등등 상당히 많이들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 기관에서 우리한테 넘기는 게 있고 신고를 받거나 우리 자체 인지로 적발하는 게 있는데, 외부 기관에서 오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를 안 한다면서요? 왜 그러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무튼 저희들이 외부에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심의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스스로 모니터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절차에 따라서 심 의를 합니다.

○김재경 위원 아니, 가령 예를 들면 범죄 혐의 가 있다든지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식약청에다 통보해 가지고 이걸 수거해서 폐 기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외부 기관 통보는 잘 안 한다면서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김재경 위원 왜 그럽니까? 뭐 인력 문제도 있 고 또 보니까 남의 부처 일에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뭐 해외 서버 때문에 이 게 여러 가지 조치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 것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피해가 가중 되는 역효과 등등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는 대던 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원천적으 로 그 정보를 차단하고 생산자를 처벌하지 않는 한은 이게 시정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 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에 전념하는 이유는 결 국, 특히 이게 불법정보, 유해정보 이와 같은 것 들은 수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그것이 오랫동안 또 남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2차 피해, 3차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김재경 위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 는데, 정말 공익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에서 눈앞에 보이는 걸 그냥 우리 할 일만 하고 서로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침을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좀 전향적으로 무슨 용역을 주든 지 해 가지고 이것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이것 많이 지적됐던데 요. 소위 말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가지고 조금 심의 건수가 줄어들다가 올해 보니 까 이미 작년도보다 훨씬 많은, 상반기만 해도 1000건을 넘어선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삭제하는 건수는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접속 차단을 하는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아마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또 그걸 하는 사람들이 IP를 자주 바꾸고 이러니 까 적기에 대처를 못 하는 아마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작년 국감에서도 그걸 지적 했더니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서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조치 만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이게 좀 선제적일 필요 가 있다라는 거지요.

단순히 우리가 차단하는 거기에 머물게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국가체제를 흔들 수도 있고 우리 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 국의 어떤 범죄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좀 선제적인 조치 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강구를 하셔야 된 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아무튼 특히 해외 서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할 수 있 고 또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맥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 고 똑같은 겁니다.

너무 '우리 일' 딱 이 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 고 보다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주문 입니다, 이게 다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명심하겠습니

○김재경 위원 이게 실무자가 오남석 국장인 것 같던데, 아까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 모두에 한 말씀을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카톡 이게 요 즘 아주 그냥 불붙듯이 관심이 많습니다. 잠깐 좀 나와 보시겠어요?

주무국장님 맞으시지요? 제가 잘못 짚은 건 아 닌가?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이용자 정책국장입니다.

○김재경 위원 이것 좀 재밌더라고요. 저장 기 능이 있다던데, 가령 내가 내 단말기에서 오 국 장하고 통화를 하고 내걸 지워 버렸단 말이에요. 지워도 이미 서버에는 그게 남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카톡 같은 대화 말씀이십니까?

○김재경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예,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그게 참 문제라. 이게 쓰는 사람이 지워 버렸는데 어딘지 모르게 내 정보가 거기에 남아 있다라는 것, 이것 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면 통화기록 조회하고, 옛날에 보면 그게 쫙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금 징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정도로 남아 있는 거지 그 내용을 다 살려 가지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현재 통신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문자 메시 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제가 누구하고 며칠 며 칠 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몇 개월 간 통비법에 따라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 고 있고요. 문자 메시지 내용은 통신사업자들은 보관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신문에 났다 시피 카톡 DB에 며칠간은 보관하는 형태로 있다고……

○김재경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나는 이게 NGO 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불붙듯이 아마항의를 할 것 같은데. 내가 내 단말기에서 지워버렸는데 그것은 같이 연동돼서라도 지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게 거기에 남아 있어 가지고 나한테 득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몰라, 시비 거리 붙어 가지고 네가 그 말 했냐, 안 했냐둘이서 싸움해 가지고 증거로는 쓸지 모르겠지만이게 진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 것같아요. 그래서 그 약관라든지 뭔가, 오 국장님한번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예, 그 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번 물어볼게 요.

감청을 실시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사실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 미래부 소관 사항이라 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저는 사실 잘 모 르고 있고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움을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님들이 되게 실망하실 것 같은데, 그거 국장님 답변이라. 감청이 실시간 되긴되는 거지요? 옛날에 법사위에 있을 때 불법 감청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답변하더니 나중에 국정원장들 그것 때문에줄줄이 구속되더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내용 파악이라도 좀해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예, 명 심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님들 국장님 답변에 대개 다 실망하고 계실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금방 상황 파악하고 있는 건 인지를 하셨을 테고 이거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보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최민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최민희 위원 할까요?

○위원장 홍문종 하세요.

○최민희 위원 이 의사진행발언은 사실 안 하게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KBS 이인호 이사장하고 EBS 이춘호 이사장 건에 대해서 저희가 증인요청을 했고 어제도 점심시간전에 답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오늘도 점심시간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아무 답이 없으셔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홍문종 간사님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 는데요······

○최민희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요?

○우상호 위원 조금 전에 또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본격적인 협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죄송합니다.

이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할 순서 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단 했다가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 다.

당초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던 류호길 MBN 상무이사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철회하 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박영우 한국인터넷진 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 관계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이 어렵 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정감사에는 참고인 한 분만 출 석하게 되었으며 오늘은 일반증인이 없는 관계로 증인 선서 절차 없이 참고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출석현황과 불참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하시지요.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관증인과 참고 인에 대한 신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6분으로 하고 부족하시면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우상호 위원 오늘 보도에 보면 이통3사의 하 반기 영업이익 실적이 30%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지금 영 업이 더 잘 돼서 실적이 는 게 아니고 그 영업이 익이라는 것이 바로 단통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묶으니까 추가로 더 풀어 왔던 마케팅 비용이 절 약돼서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거든요? 원래 단통 법의 취지는 이런 영업이익을 요금인하로 유도하 도록 만든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시장이 정상화된 것은 다행히 잘 됐습니다, 이용자의 편 익 차별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바로 두 번째 목 표인 요금제 인하로 가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이

통3사의 이런 막대한 영업이익이 요금인하로 이 어지도록 만드는 정책적 수단과 노력이 필요하 다,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동의합니다.

○**우상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리공시든 또 다른 제도든 시급히 서둘러야만 이 법안 통과 이 후 이 법을 추진했던 각 주체들이 신뢰를 얻게 된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점검해 보니까, 재난방송의 특징 은 신속한 방송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에도 골든타임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보 니까 재난방송 개시 시간을 보면 1시간 2시간 이 상 지나서 재난방송한 경우가 10% 이상이에요, 좀 심한 경우는 25%까지. 그러면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1시간 2시간 지난 다음에 방송한다는 것 은 사실 별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난방송이 재난 이후 즉시 가장 빠른 시간 내 방송을 통해 서 국민에게 알려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유 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장, 조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우상호 위원** 우리가 지금 단통법을 통해서 이 용자 차별을 중지시키고 정상화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 문제가요 결합상품 문제입니다. 지금 KT 나 각종 인터넷 회사들이 보면 인터넷 플러스 무 선전화 유선전화 묶어 갖고 결합상품을 파는데 보면요 하여튼 공짜, 무료, TV 플러스 인터넷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결합상 품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하신 지가 3년이 넘었는 데 이걸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이거 조사하실 겁 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조사를 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여기도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아 주 극심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부 문제가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으로 한 것 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시장에서 결합상품에 이용자 차 별이 발생하는 문제도 시장 교란행위지만 두 번 째 더 심각한 문제는 방송이라고 하는 고유한 영 역이 끼워 팔기 상품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위 성TV IPTV 이런 것들요. 심지어 씨앤앰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케이블방송까지도 방송이 인터 넷과 인터넷전화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한 미끼상

품이 됐어요. 단가를 보면요 3000원 6000원이에요.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방송산업이 새로운 콘텐츠 육성산업으로 가는 자본 축적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합상품 제도를 바꿔야 될 것같아요. 이게 계속되는 한은, 그러니까 지금 위성방송이나 IPTV는 콘텐츠를 안 만듭니다. 다른방송국에서 만든 콘텐츠를 재방송해 주면서 미끼상품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은 드라마도 제작안 하고 오락도 제작 안 하고. 이런 데다가 왜방송 허가를 해 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래서 결합상품에서 아예 방송을 떼어내서 방송은 고유하게 판매하도록 하든가 이런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영업에 관한 부분이어 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우상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인터넷을 팔고 전화 파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 안 그러겠는데 방 송을 미끼상품으로 팔고 있는 걸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영업상 특징이라고 봐줄 수가 있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봐준다는 것은 아닙니 다. 봐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 금 지적하신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결합상품의 세 번째 문제는요 고 용상태가 아주 불안정합니다, 간접고용. 최근에 티브로드나 씨앤앰 간접고용 때문에 노조들 데모 하고 있는 거 다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이게 SK브로드밴드, 유플러스, 통신과 관련되어서 인터넷 상품 파는 데는 다 간접고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협력회사 밑에 또 다단계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기사들은요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매일 고치러 다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재허가 승인조건입니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와 조직의 안정적 관리 문제에서 이 업체들 SO MSO들의 이런 잘못된 간접고용 행태도저는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방송통신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용의 안정과 산업의 발전. 처음에 이거 허락받을 적에요 이 회사들이요 전부 경제효과 부풀렸어요. 몇조의 효과 몇 명의 고용가능성,

무슨 몇 명의 고용가능성이에요? 다 간접고용이에요, 다 비정규직인데. 허가받을 적에는 그렇게 경제가치를 부풀려서 허락받고 다 이런 식의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미래부 소 관 업무여서 미래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 하신 부분이……

○**우상호 위원** 물론 재허가 문제는 미래부의 문 제입니다만 방송을 관할하고 있는 지도하는 입장 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강조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 MSO나 SO들이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하는 데가 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어떤 경우는 지급 지연기간이 굉장히 길고 주긴 주는데 1년 후에 주고 이러는데 PP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어쨌든 SO를통해서 공급해서 거기서 얻어진 수익도 갖고 재투자하는 것이 기본 순환구조인데 이런 현상들이만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감독 한번 해보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얼마 전에 조사를 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소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서도 고치도록 하고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우상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방송의 제작, 배급, 프로그램 재판매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방송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대책을 세우셔 야 할 때다 생각듭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은 조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주 위원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 위원 장 민병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방송통신위원장님,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모두 광고시장 침체에 따라서 경영환경이 악화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수년 전부터 거론된 상황인데 실제로 개선된 상 황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4 일 날 3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에서 지상파도 연내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하셨지 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시겠다고 발표는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 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각계의 의견수렴 은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요 최종적으로, 원래 저희가 갖고 있던 통계자료가 있었는데 거 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돼서 좀 더 치밀 한 통계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돼서 그게 아마 곧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의견수렴 마쳐서 곧 시행령 개정 작업 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병주 위원 광고총량제 관련해서는 이해관계 가 다양하게 얽혀 있어서 해법 찾기가 쉽지는 않 으실 텐데요 그 자료도 신뢰도를 고려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특히 방송사의 경영환경을 개 선하면서도 우리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꼼 꼼히 따져 주시고요. 국민들의 시청권 보호와 방 송광고 활성화가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민병주 위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본 의원 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방심위 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민병주 위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항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 지를 표시하는 경우 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민병주 위원 그래서 정보통신 심의규정 제10 조2항에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 방심위의 실무는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심 의규정 아닌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아무튼 거 기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3자의 신고 나 방통위의 직접인지 등을 통해서 명예훼손 정 보를 인지한 경우에도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래서 그 문 제는 어쨌든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사실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일일이 본인 의사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또는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 서....

○민병주 위원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거라 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한 영역 부분을 정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 점에 대해 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제가 나누어드린 책자 중에 '해 외 주요국의 방송 공정성 개념 및 접근 철학 분 석'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냈는데요. 작년에 제가 미방위 들어오면서 방송의 공정성 관련된, 공공 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언론적인 기능과 관련해서 계속 된 논쟁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 방송의 공정성 이라는 게 사회 변화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 있 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은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방송체계와 정책목 표 그리고 정치적 시스템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 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를 죽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론과 방송환경에서 방송 공정성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기 위해서 공정성 개 념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난 것 중 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율 성, 자율 규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방심위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송의 공정성 과 정치적 독립성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가 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아주 의미 있게 반영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병주 위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자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있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자율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자기규율이기 때문에 아무튼 자신의 뜻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서도 책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 위원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철학적인 의미를 보면 '자신의 욕망이나 남의 명령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의지로 객관적인 도덕법칙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율이라는 게 자유하고는 다르고 방임 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법과 원칙과 도덕적인, 객관적인 이런 부 분이 다 지켜지는 상태에서 간섭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동 의하시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위원님의 의 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민병주 위원** 앞으로 심의하실 때 이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우리 심의위 원회가 아무튼 그 뜻에 맞게 고민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서울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통신료 인하의 제대로 된 처방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

습니다마는 하나 더 덧붙여서, 논의의 혼란이 좀 있는 부분이 법해석의 혼란인데 단통법 4조5항에 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통사의 직영점은 어떻게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거냐, 적용되면 안 되는 거 냐 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원래 저희 생각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또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판매점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법조항 에 보면 법인격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 영점은 법인격이 같지 않습니까, 이동통신사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유승희 위원 그렇게 한다면 법적 해석을 명백 히 해서 추가 예외조항이 중소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을 검토하 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 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유승희 위원 그리고 정부광고에 대한 광고심 의인데요, 방심위원장께 질의하는데요.

정부광고는 일방적으로 홍보될 수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우리가 정부광고 라고 했을 때 물론 공익광고도 있을 수 있습니 다.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어떤 심의든지 사후의 심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승희 위원 사후심의인데 사후심의한 적이 있나요, 정부광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광고 는 공정성 그다음에 공공성, 진실성 이것을 전혀 담보하지 않아도 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렇지 않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렇지 않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유승희 위원 그런데 국책사업 4대강의 경우에는 정부광고비가 106억 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은다 알고 계시고 굉장히 4대강 찬양하는 일방적인홍보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여기에 따라서 방송광고를 사후심의하고 있는데 이 국책사업 관련한 광고에 대해서는 어 떻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러니까 저희들 로서는 어쨌든 민원도 물론 받고 모니터도 하면 서 사후심의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 규정 에 입각해서 어쨌든 광고라면 어떠한 광고라도 사실은 심의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방송광고심의규정 18조의 진실성 부분하고 42조 정치광고의 금지조항을 보면 4대 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되면 안 되는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광고심의규정에도 정부의 광고에 대한 항목을 별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래서 혈세가 일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저희들도 2009년에 정부의 미디어법 홍보광고에 대해서 5 건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또 2010년에도 5건이 있었고 올해도 아무튼 2건은 있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래서 엄격한 기준이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하여튼 고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고민만 하고 안 하신다는 얘기입 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료방송 미환급금 부분에 대해서 방통 위원장께 질의하겠는데, 최근 4년간에 유료방송 미환급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105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5년이 지나면 영업의 수익 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미환급금이 많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중 출금, 과 오납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씨앤앰이 28억 8870만 원, 티브로드 22억 2700만 원, 현대HCN 16억 500만 원, CJ헬로비전이 15억 3600만 원 이 렇게 되고 있어요. 회사에 따라서는 좀 주는 데 도 있는데 갈수록 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두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환급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게 5년 뒤에는 그냥 회사 영업 의 수익으로 들어가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되는데 발 생한 원인이 과거에 계약을 할 때 단체계약을 하 면, 개별 호수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어느 연립 주택 이렇게 단체로 계약한 것들이 있어서 그 환 급할 대상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익으로 쓰도록, 그러니까 사업자가 갖는 게 아니고 주소 불명 등 은 공익으로 쓰는……

○유승희 위원 방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 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 일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유승희 위원** 최근에 종편 4사가 영업 2년 만 에 시청점유율이 12%를 넘어섰어요. 2배로 넘어 섰거든요. 그런데 지상파는 3%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유율을 말하는 건데요, PP는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종편 4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건 수는 지속적으로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 의 질은 떨어지고 점유율은 높아 가고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 3월 19일에 방통위 재승인 의결한 종편·PP에 대해서 재승 인 조건을 다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철 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지 않아도 지 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방기 부분에 대해서 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 하게, 상세하게 대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 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유승희 위원** 방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이 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유승희 위원 그 정체성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가진 상임위원들이 다양한 추천 경로를 통해서 구성이 됐는데 중요 결정을 할 때는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중심으로서 해서 일부가 다수결로 밀어 붙이는 것 같아요.

이사 선임 부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인호 KBS 이사장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의 추천 과정에 대해서 여러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답이, 답변이 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 어쨌든 위원장께서이것을 어젠다로, 안건으로 상정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미리 논의를 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미리 논의했을 때 그러면 합의에 이르러서 그게 어젠다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안건으로 상정이 된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처음에 이인 호 이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회의일자 말씀드리 고 하고 난 그때에는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며칠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9월 1일 날 이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회의석상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논의를 어느 정도 하 다가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좀 더 원만 하게 운영을 해서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했으면 더 바람직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 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합의 정신이 잘 지켜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삼석 방통위 원께서 경위를 얘기를 해 보시지 요?

○**위원장대리 조해진**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 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답변.

○**위원장대리 조해진** 답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삼석**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합의제 원칙 말씀하시나요? ○유승희 위원 합의제 원칙이랑 이인호 이사가 추천된 그 경위, 그러니까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에 뭔가 이분에 대해서합의가 일단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게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위가 잘 안 지켜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보충설명을 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삼석 전임 KBS 이길영 이사장께서 사의 표명한 게 8월 25일 월 요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인호 이사장으로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께서 의견을 내신게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 오후에 그런 의견을 내셨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 재홍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인호 이사장이 좀 뭐랄까, 그 카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 셨고요. 저 또한 한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 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9월 1일 날 회의 소집을 당일 날 통보를 하셨고요. 김재홍 위원과 저는 회의를 좀 연기하고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검증 을 하기를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오전에 전체회의를 해서 허원제 부위원장께서 정식으로 추천을 했고요. 김재홍 위원과 저는 이사장 추천 건에 대해서는 절차와 그다음에 추천자에 대한 적격성에 대해서문제 제기를 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세 분께서 의결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그다음 날바로, 9월 2일 날 임명 재가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때 또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덕광 위원** 해운대 기장갑 배덕광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께 700Mb 대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구 방통위 시절 열일곱 차례나 논의를 거쳐서 700™z 대역의 일부를 통신사업자에게 할당키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통신사에 주어도 나머지 주파수 대역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바뀌었 습니다. 700 대역의 일부가 국가재난안전망으로 용도가 결정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상파 가 사용하기에 주파수 대역이 부족하고 또 통신 사는 당초 받기로 한 주파수 대역에서 조금도 양 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가재난안전망 구축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의 문제일 뿐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 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 떻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그때 저희 업 무가 아니어서 예상이 가능했는지 여부는 저로서 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재난망에 20Mb가 필요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배덕광 위원**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 통위와 미래부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 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 ○배덕광 위원 지금까지 몇 번이나 회의를 열었 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별도의 연구반을 제외 하고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지금 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덕광 위원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게 있 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제일 중요한 것 은 지상파 UHD TV 방송을 하기 위해서 주파수 를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상파 UHD TV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각 방송사의 앞 으로의 계획 같은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 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상파 방송사들 을 직접 기술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덕광 위원 공동협의체 말고 공동연구반이라 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 누구가 참여합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거기에는 주로 실무자 들과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 오래 논 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따로 만든 이유는 거기서는 실무적인 이야기만 계속 할뿐이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 는 상황이어서 거기의 연구를 기초로 하면서 여 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을 고려한 차관급 정책협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배덕광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논의는 공동연구반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여기서 실무자들끼리 첨예하게 대립 하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논의하다가 보니까 답도 나오지 않는 회의만 계속하고 성과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상황이 좀 진행 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배덕광 위원 아시다시피 700Mb 문제는 워낙 첨예한 문제라서 해결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파수는 일 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 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 ○배덕광 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공동연구 반에 국민 대표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면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연구반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공동연구반이 지금 상당한 정도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 여서 거기에 중간에 또 새로운 분이 들어가서 역 할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
- ○배덕광 위원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 ○배덕광 위원 기술 분야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가 뭔지 확인해 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물론 700Mb가 지적하 신 것처럼 한정된 주파수를 국민들한테 가장 필

요한 데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과정에서 여론조 사를 하는 것이 어떤지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700Mb와 관련해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현재까지는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의제를 올려서 논의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상임위 차원에서 올려서 논의를 해야될 때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덕광 위원 아마 지금까지 사업 당사자가 주 최하는 토론회가 몇 번 있었는데 아무래도 패널 구성의 신뢰성 확보라든지 공정한 회의 진행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국 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연다면 이런 오해도 받지 않고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 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공청회 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도 거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700Mb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 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 ○**배덕광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해진 배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 이개호입니다.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한 수신환경 개선의무가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개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말에 일몰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는 빨리다시 법안이 개정이 돼야 되나요? 다시 되살리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도 최재천 의원께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상으로는 미래부 쪽 예산에 수신환경 개선 예산이 지금 일부씩 계속, 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디지털 전환이 제가 미래부 감사때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기대만큼 활성화되지않고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적 불비도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속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또 지역 지상파방송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방송이 방송환경 또 광고시장 여건 변화때문에 함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8개지역 지상파방송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죽 보니까 지난 2년 동안지역민방을 비롯한 28개지역 방송사가 매출액이무려 12.3% 또 광고 매출액은 18.7%가 줄어들었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러니까 매년 거의 10% 가까이 광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난 6월 3일 지역방송 특별법이 제정이 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개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한 두어 달 앞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제정이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도 필요한 예산안 편성을 하는데 3억 늘어났더라고요. 20억에서 23억으로 3억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전부 프로그램 제작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고요.

실제로 지금 지역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유통을 활성화한다든지 지금 법안에도 죽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한 예산은 전혀 편 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신청한 게 기재부에서 깎였나요?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제작지원 37억 과 유통활성화 6억, 43억을 요구했는데 저희 나 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정부 안에서 는 23억만, 유통 쪽은 다 삭감되고 제작지원만 23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개호 위원** 예산이 더 확보가 되고 또 필요 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위원장 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의지를 가지고 강 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개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 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부가 아니고 위원회로 직명이 이루어진 취지는 너무 잘 아시 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다소 실망스러운 것은 그동안에 취지와 맞지 않게, 합의제 기관의 취지 또 위원 회 기관의 취지와 맞지 않게…… 표결 처리는 당 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난 2010년 이후에 최근까지 사안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 들이 퇴장을 한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자 료를 받아보니까 열두 번 정도. 그런데 퇴장을 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표결을 하시더구먼 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 위원회 제도의 취지 에 맞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활한 합의를 유도 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서로 위원 님들 간에 불화나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 고 또 관리해야 될 의무가 위원장님께 있다고 생 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꼭 합의제 기관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개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에 심학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학봉 위원 구리시갑의 심학봉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생이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어제 제가 미래부 국감 할 때 국회 방송 혹시 보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보다 안 보다 해서 제 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 겠습니다.

○심학봉 위원 어제 제가 7005 관련해서 여 러 가지 얘기를 하고……

우선 위원장님께서 주파수가 공공재라는 데 대 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동의합니다.

○심학봉 위원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 다, 미래부장관한테. 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관리권자이지 소유권자가 아니다, 그래 서 국민들이 이 중요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 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청회라든지 논 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홍문종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최양희 장관한 테 요구를 해서, 또 많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그런 과정이 없이 결정하는 것은 난센스다 이렇 게 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동안에 지금 논의되 어 있는 것들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 럼 국회에서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논의된 것들 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자리가 만들어지면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학봉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미래부 에서 700째 중에 40째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 침을 정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오늘 방송통신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보면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소관 사 무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심학봉 위원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700 №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오히려 미 래부보다는 여기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해석이 좀 문제가 있 기는 합니다마는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 위원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파수 배분은 또 미래부 업무로 되어 있어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한다기 보다는 결국에는 미래부 과제에 방송통신위원회 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의 방안을 당연히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뿐만 아니라 방송정책 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 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70000에 있어서 UHD 주파수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학봉 위원 미래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 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적극적으로 요구 를 하고 있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7월 28일 날 발언하고 8월 25일 발언을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는 확고한 방송용 주파수에 대한, UHD 방송에 대한 그 입장을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히 견지해야 된다고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는 그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상파 UHD TV 방송이 되도록 주파수가 확보가 되

○심학봉 위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론화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스탠스가 확실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늘 같은 생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심학봉 위원 두 번째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문화 융성이라고 보면 문화 융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송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9월 1일 날 대통령께서 MBC 사옥 거기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심학봉 위원** 그때 방송에 관한 대통령의 워딩 이 뭐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정확한 표현은 제 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심학봉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송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가 앞으로 우리의 블루오션이다'이런 워딩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님께서는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이 주파수 확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좀 견지하여 주시고, 그리고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광고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규제를 풀고 더 활성화할 수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종합감사 할 때 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심학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심학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완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간단히 한 1분 정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예.

○장병완 위원 지난주부터 어제 오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민희 위원과 전병헌 위원님께서 이인호 KBS 이사장의 증인 채택 요청을 했을때 저는 사실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의견표명을 자제했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여야 간에 많이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데 반해서 지금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주요 의제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잘 정리가 되리라고 믿 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시간도 없고 또 이 문제가 그렇게 끌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대부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집 행기관만 기관의 대표이고 의결기관이 기관의 대 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즉 말해서 공공기관으 로서의 KBS 이사장은 당연직, 말하자면 기관의 대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은 여야가 협의해서, 협상 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직 기관증인 으로 나와야 맞는 것이지요. 각종 어떤, 모든 공 공기관의 이사장들이 기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기관의 주요 구성요소인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혹시 어떤 논의의 범위를 좀 제한하거나 하는 건 할 수 있 지만 이것 자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다, 그래서 빨리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오늘 정회까 지 갈 필요도 없이 두 분 간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 주셔야 되고, 이것을 결론을 내느냐, 마느냐가 우리 미방위가 국민들에게 제 대로 국감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 한 시금석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방통위원장과 방 심위원장하고 여기 위원님들에게 지금 합의제 행 정기관으로 방통위하고 방심위를 만든 이유에 대 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장대리 조해진 위원님 질의신가요? 아니 면....

○**장병완 위원** 지금부터는 질의로 해도 좋습니 다. 시간 아직 안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로 해 주십시오.

했는데,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 가 기본적으로 어떤 독임제 기관하고는 달리 다 양한 철학과 의견을 가진 분들을 전제로 해서 그 것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합 의제 기구로 처음부터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당연히 비효율을 좀 수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 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역대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방심위원장님들이 이것을 약간 독임제식 으로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종다수 방식의 의 결 관행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미방위도 여야 간에 사실은 여러 가 지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상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만큼 정부 측에서도 합의제 기관으로 두 기구를 만들었던 그 취지를 반드시 깊이 생각 해서 조직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장병완 위원**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 심학봉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이

지역방송과 관련된 미방위의 좀 안이하고 이런 미흡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방 송 지원특별법이라는 게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사 회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 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만장일치로 이 법을 통과시켰고 12월 달에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시행이 지금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필요한 후속조치 로 시행령이라든지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 한기준 고시, 또 뭐 관련 단체에 관한 고시 이런 것들은 이번 목요일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기본적으로 시행령과 이런 시행 을 준비는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이 걸, 제가 아무래도 법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관 심이 많아 가지고 죽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정 말 대단히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셨다시피 이 법의 내용을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할 조직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법에 따른 시행을 위해서 지역방송 추진 인력들의 증원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위원장님 얼마나 노력을 하 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지만 조직 관련해서는 직접 안행부장 관.....

○장병완 위원 예를 들어서 조직 증원을 위해서 안행부장관을 몇 번이나 만나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뵙고 말씀도 드렸 습니다.

○**장병완 위원** 또 기재부장관에게 예산 이야기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기재부장관은 아니 고 예산실장 뵙고 예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뭐, 글쎄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확보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장병완 위원** 제 자신 안행부, 기재부 그리고 또 심지어 안행부를 관할하는 조윤선 정무수석한 테까지도 수차례 부탁을 하고 예산도 부탁을 했 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 미흡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제 경험을 그래서 꼭 말씀드

리고 싶어요. 증원이나 예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자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렇게 새롭게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은 역시 기관장의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기관장이 과연, 저쪽 상대 기관장에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것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아셔야 하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이 근성이 좀 부족합니다. 즉 말해서 한 번 행안부나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가서라도 기어코그것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과거 공무원 조직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근성이 조금 부족해요. 그것은 위원장께서 직원들, 간부들을 좀 다그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장병완 위원 우선 오늘 업무보고 자료 23쪽을 한번 보십시오. 23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내년도 방통위의 예산 아닙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지출은 65억이 감액이 되어서 4.3%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내부거래가 1400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 기재부가 여타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방발기금에서 뺏어 간돈이 1400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방발기금은 기재부 책임이 아니에 요. 기재부는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저기를 하지만 방발기금은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법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징수하고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장병완 위원 즉 말해서 지금 방통위는 스스로 걷어서 한 세입은 재정당국에다 갖다 바치면서 주요 사업비는 70억이나 삭감이 되었다 그런 이 야기입니다, 주요 사업비가 70억이나. 그런데 그 것 대부분 보십시오. 방송 인프라 개선, 그다음에 방송기반 구축, 전부 다 인프라와 관련된 저기입 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지역방송은 아직 디지털 전환도 채 끝나지 않았고 또 UHD 방송 준비도 해야 하고 막대한 투자비가소요되는데 기본적으로 재정당국은 그러한 방송환경에 대해서 필요성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이야기입니다,이 이야기는.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저는 재정당국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봤

을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방통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무 안이한 자세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앞으로도 그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조직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제가 그쪽 접촉을 하면서 지역방송에 대해서, 증원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것은,특히 이번에 증원을 단통법 시행에 따르는 증원하고 지역방송 시행에 따르는 증원을 동시에 제출하다 보니까 지금 방통위에서 단통법 시행에조금 역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지역방송 쪽에다좀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사실은 안행부나 기재부가 별로 그렇게 어프리시에이트 (appreciate)를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증원도 1명 하려는 것을 제가 결국 최종시점에서 1명 더 늘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방송이 만약에 이 상 태로 갔을 때 고사가 되고 그 고사된 후폭풍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재부 공무원 들은 전혀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제가 예결소위 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증액을 하겠습니 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논리로, 이런 당 연한 권리를 찾으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장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울시 강동을 당협 위원장 이재영입니다.

최성준 위원장님, 700Mb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래서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 논 의가 다시 재검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를 하 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 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방통위 위원장님께서는 장관급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렇 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해석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28일 8월 19일 언론에 나왔 던 기사 내용이, 처음 7월 28일에는 지상파에 힘 을 실어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 는데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위치 가 위치이다 보니까 말씀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 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유념하겠습니다.

(조해진 간사,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영 위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 신 부분인데요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해정보에 지금 무방비 상태로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보이세요? 저 화면에도 있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다음에서 소위 잘나가는 하나의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아니면 포털 이고요 그 안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미즈넷'이라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기 옆에 보 면 가제가 '요리 라이프'라고 돼 있습니다. 요리 하는 것이겠지요, 이걸 보면. 그런데 첫 번째 제 목이 '아내와 동창', 이게 순수한 사이인가요? 제 가 봤을 때 요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거라는 상상이 듭니다. 그 밑에는 '아빠와 바람피운 여 자, 가정 파탄 내고 왔어'이것도 요리와 별로 관 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즈넷홈 첫 페이 지거든요.

이 옆에 보면 '미즈토크'라고 보이시지요? 저기 위에 있습니다. 저 부분입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요 또 비슷한 내용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이건 좀 페이지가 길어서 스크롤을 밑으로 할 수가 있 거든요. 죽 해 보면 밑에 '미즈토크 주간 베스트' 가 있어요. 이걸 가 봤더니 미즈토크 주간 베스 트에 나왔던 첫 번째 제목이 '몰래 가 봤더니 침

대에 남편과 내 친구가', 4번 같은 경우는 '부부 성관계 우리 신혼 때부터 이랬어요', 5번이 '주요 부위 어쩌구저쩌구 뭐지요?' 이거예요. 좀 민망스 럽지요? 아직도 여기에는 요리 라이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첫 번째예요, '몰 래 가 봤더니 침대에 남편과 내 친구가' 있던 것 을 봤더니 실질 제목은 또 다릅니다. '제 고딩 대 딩 베스트프렌드가 남편 모 모 모입니다'라는 제 목이 적혀 있어요. 제목도 다르지요?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댓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댓글에 대해서도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잡 혀 있는 스크린 사진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짧 은 부분입니다. 댓글의 내용이 더 심합니다. 그런 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요 추천을 1329건을 받 았고요 조회한 수가 지금 55만 3721건입니다.

이 사이트가 뭘 요리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 을 요리했나요? 친구를 요리했나요? 제가 왜 이 렇게 깊숙이 들어가느냐, 이게 패드예요.

(패드를 들어 보이며)

저거는 PC상에서 제가 클릭해서 들어간 거고 요, 이게 다음 모바일의 첫 페이지입니다. 보이세 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이 부분을 누르면 소 위 말해서 다음에서 미는 콘텐츠가 여기 달려 있 습니다. 미즈넷이라고 보이지요? 있어요. 거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클릭해 볼게요. 바로 아 까 보였던 오늘의 사연이 쫙 나옵니다. '아빠와 바람피운 여자, 가정 파탄 내고 왔어', 이거 아까 제가 수도 없이 읽어 드렸지요? 그 뜻은 뭐겠어 요. 이 주간 베스트가 결국에는 다음 미즈넷에 있어서 가장 선전하고 싶어 하는 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을 제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 도 청소년들이, '이건 유해 콘텐츠가 있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아까 보셨듯이 부제목에는 요리를 위한 삶같은 아주 건전한, 주 부들이 굉장히 좋은 요리 방법 기법을 재료를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이트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니터링은 잘 되고 있 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은 포털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재영 위원** 아니, 포털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자기네들이 만들어 낸 콘텐츠인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O이재영 위원 이거는 자기네들이 모니터링 안하는 거고, 모니터링을 떠나서 자기가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런데 포털에다 맡겨 놓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동안에 저희가 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이 내용이 얼마 동안이나 우리에게 문제가 됐던 건데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영 위원 1분 안에 맞출 테니까 시간 좀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우상호 추가질의 안 하실 거예요?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대리 우상호**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에서 1분을 뺄게요.

○**위원장대리 우상호** 알겠습니다. 1분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전부를 모니터링 한다고 말씀드릴 수없습니다마는 지적되는 부분을 바로 찾아서 방심위 통해서 이게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종합보고 때까지요 어떻게 하실 건지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요 박효종 방심위원장 님, SNS 있지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유사합니 다. 비슷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뉴미디어라고 해서 지금 사실 적극적으로 모니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게 청소년 유해매체, 특히 청소년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모니터도 하고 심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방통위원장께서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밝히신 대로 UHD 상용화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의 부가가치에 대한 잠재력도 충분히 인정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지금 700째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700째에 남아 있는 주파수 폭이 108째목이잖아요? 그중에서 40째를 미래부에서는 통신용으로 쓰겠다라는 결정을 잠정적으로 해 놓고 있는 것 같고 또 20째는 재난망으로 쓰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될 때 나머지 남은 주파수 대역폭 가지고 지상파 3사가 UHD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전국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단 그걸 그런 식으로 60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거 가지고는 지상파가 UHD 전국 서비스는 하기 부족합니다.

○전병헌 위원 일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 국 서비스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현재 기술로는 물리적 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조금전의 방발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지방 방송발전에 대한 정부 측의 홀대 문제와도 상당히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UHD 방송 서비스는, 지금 HDTV 화질이 4배 내지 16배까지 이렇게 좋은 고화질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미래부의 방침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역에는 적어도 UHD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또 한번의 매우 심각한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원장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미래부하고 정책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런데 어제도 여기 여야를 초월 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UHD 채널의 필요성과 주파수의 확보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부장관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저께 참 밤늦게까지 하는 과정에서 미래부의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보류하도록 그렇게 사실상의 위원회 의결로서 확정을 했는 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주파수심의위 원회 상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 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재난망에 대한 주파수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 지요?

○전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재난망에 대한 주파수 선정 문제가 어느 대역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재난망 20Mb 선정 폭이 결과적으로는 UHD 지상파 서비스가 가능 하느냐 불가능하느냐 특히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 느냐 불가능하느냐라는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난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어저께 지적을 한 것이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청회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 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실상의 의결 절차를 거쳤으니까 방통위원장께서 주무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재난망 부분은 안행부 쪽에서, 재난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확정해 주기를 안행부에서는 UHD 부분에 있어서……

○전병헌 위원 어차피 700Mb대에서 20Mb는 재난 망으로 쓰기 때문에 어느 대역을 결정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재난망 입장에서는. 단 재난망이 어느 대역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UHD 전국 서비스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또 아 예 UHD 서비스를 지상파가 못 하게 될지 이것 을 갈음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 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더군다나 지금 재난망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 문제도 현재 700Mb대역은 방송용 아닙니까? 현재는 방송용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용 주파수로 분배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것 아닙 니까? 그러니까 현재 재난망에 대한 주파수심의 위원회 상정도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방통위원 회에서 상정을 해서 그것을 재난망으로 할당받도 록 하는 것이 옳은 절차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방통위는 손을 놓고 있고 미래부나 행안 부에서 이러한 주파수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 는 것 같아서 이것 대단히 방통위에 심각한 문제 가 아닌가 이런 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 명하고도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아까도 말 씀드렸듯이 저희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를 하도록 법에 돼 있지만 또 다른 법에는 미래부가 주파수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전병헌 위원 아니, 전파법상 주파수 배분표에 700Mb대는 여전히, 그러니까 미래부가 생기기 전 이나 또는 이전에 방통위원회에서 이 700Mb 대역 을 통신용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변경을 시켜 놨 으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지금 이른바 2012 년도에 광개토 플랜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년이 지나는 동안 전파법상의 주파수 배분 표조차도 고시를 바꿔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여전히 지금 700㎞ 관리와 상정의 문제는 방통위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부처에서 700Mb대 주파수 변경 심의를 상정을 했다면 그것은 월권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방통위는 자기 권한을 앉아서 빼앗기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향후 국가경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 다고 우리 본 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이 공감한 UHD 상용 지상파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 다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어제 우리가 이 후에 그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 일 단 보류를 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미래부하고 상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김재홍 위원하고 허원제 부위원 장 다 한마디씩 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 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김재홍 UHD 700Mb 대역에 대해서 2기 방통위인가에서는 광개토 플 랜으로 장기 플랜으로 정해 왔습니다마는 그 후 속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그런 한 에는 아직까지 현행에서는 방통위가 그 대역을 관장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위원 허원제 부위원장님 말씀해 보세 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저도 지금 전 병헌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이 문제는 전 파법상 주파수 회수 재배치에 해당이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회수 재배치를 위해서는 총리실이 운영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안건을 누가 올리느냐 그 부분은 지금 미래부가 올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미래부하고 방통위가 같이 협 의해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까지도 그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삼석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표하고요 저희 위원회는 지금 지상파 UHD 방송의 차질 없는 도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주파수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과 상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들이 결정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최성준 위원장님의 활약을 기대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미래부하고 협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병헌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UHD를 할 수 있는 방송용 주 파수가 제대로 확보가 못 되면 UHD 시대에는 지상파가 없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상파가 없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 있 나요, 우리와 비슷한 OECD 기준이라든지 유사 한 국가들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처럼 수도권 정도만 할 수 있고 지방은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부 이야기를 들어 보면수도권 먼저 하고 지방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래부가 수도권은 초고화질 선명한 화

면을 보고 지방은 그것보다 흐릿한 HD 화면을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 길는지 그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산업 적 측면만 또 기술적 측면만 생각하고.

수도권은 초고화질을 보고 지방은 흐릿한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지방 민심이 그것을 용납을 할 것인지, 지금도 굉장한 소외감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부족하면 수도권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은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 생 각에 방통위나 더 나아가서 국회가 더 소통해 가 지고 미래부가 단순히 산업적 또는 기술적 관점 에서 벗어나 가지고 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같이 진행할 수 있도 록 해 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덕분에 미래부에서도 원래는 내일 자에 주파수 배정문제 결론을 내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다시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한 것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여전히 방송용 주파수를 온전한 주파수를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더 많이 소통을 해 주시고 우리 국회도 주도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서 재난망뿐만 아니라통신망, 방송망까지 다 충실하게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저는 고민하면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하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배제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리 겠지만 조금 더 고민하면 다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지금 단말 기 제조사들이 해외 이통사들에게 장려금을 지급 하고 있는지 또 있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급을 하고 있으리라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쪽에서 전혀 그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분리공시를 단말기 유통 법 초기 단계에서 적용 안 하고 제조사들을 빼 준 동기가 단말기 제조사들이 해외 이통사들에게 는 장려금을 지급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분리공시 를 통해서 국내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가 공개 되게 되면 해외 이통사들로부터 똑같은 장려금 지급 요구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해외 경쟁력이, 대외 경쟁력이 없어진다,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분리공시를 일시 보류를 해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 그것을 확인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오신 제조회사의 책임자께서 는 정확한 답변은 피했지만 부분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적어도 제가 이전에 들은 보고하고는, 제조사들 로부터 들은 보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규모가 국 내 이통사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유사할 정도 로 상당하다면 분리공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공시해서 국내 장려금이 해외에 공개 된다고 하더라도 해외 이통사들이 더 달라고 할 소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경쟁력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분리공시 를 계속 보류할 건지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원래 취지대로 도입할 건지를 결정하려면 그것 확인하 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 후에 그 법의 취지대로 제조사들이 장려금 규모 를 줄여 가지고 그것을 단말기 가격 인하로 전환 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지 여부를 확 인을 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장려금을 뿌려서 단말기 가격도 안 내리고 계속 그렇게 하 고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는 분리공시를 도입 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동감입니다. 동감 이고 사실은 저희가 8월 8일에 분리공시를 결정 을 했는데 그날 오전에 삼성전자의 대표, 대표자 는 아니고 하여간 책임 있는 사람을 불러서 지금 말씀하신 해외 장려금 관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서 지금 분리공시라는 것이 제조사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전체 규모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제조사가 이통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면 그 장려금 중에서 일부가 지원금에 포함되고 일 부는 이통사에게 이익이 되고 일부는 또 대리점, 판매점한테 장려금으로 나가고 이런 다양한 용도 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그중에 일부가 밝혀진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 장려금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영업에 지장이 없을 것 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 니까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 을 드렸는데 저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거의 원래 서면으로 했던 주장을 반 복하셔서 저희가 그런 것 등을 고려해 가지고 분 리공시가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분리공시를 고시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제조사가 자신들이 지원금에 들어가는 얼마만큼의 장려금 을 주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단말기 가격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다시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정호준 위원 정호준입니다.

지금 계속 700Mb UHD 방송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방송이 잘 되려 고 그러면 그만큼 콘텐츠가 잘 뒷받침되어야 된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UHD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앞다투어 홍 보를 하고 있고 시험방송을 했었나요, 그렇지요? 하고 있나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 **○정호준 위원** 하고 있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정호준 위원** 그런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 는 UHD 콘텐츠는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호준 위원 지금 케이블이나 IPTV에서 내보 내는 이 방송콘텐츠가 대부분 보니까 다큐멘터 리, 만화, 그마저도 외국산 콘텐츠가 대부분을 이 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위원장님 이런 사실 을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유료방송 위주로 UHD 방송을 하게 되면 부족한 콘텐츠도 문제지만 시청자들이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해야만 UHD 방송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과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호준 위원 지금 유료방송 업계는 UHD 콘텐츠를 만들 여건이 안 됩니다. 부족한 콘텐츠를 보강하고 UHD 산업기반을 확산하려면 제작여건이나 환경이 뒷받침되는 방송사들이 UHD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호준 위원 모든 국민이 UHD 방송을 즐기라고 말하고는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부르짖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상누각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UHD 산업 진흥과 활성화 측면에서 꼭이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UHDTV 방송과 관련해서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동감을 하며 따라서 지금 지상파한테 앞으로 UHDTV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출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미래부하고 주파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뒷밤침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호준 위원 콘텐츠 부분도, 다른 것도 다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역량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방통위에서 챙겨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통위원 장님 말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될 일들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통위원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정책들이 발언에 의해서 좀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700Mbz 관련해서 많은 발언을 하셨는데 그 때마다 시장과 업계가 흔들렸고 며칠 뒤에 논란 이 거세지면 위원장님 발언을 다시 주워 담고 이런 식이 반복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개토 플랜을 통해서 7000版의 주 파수를 잡아 놓았는데 위원장님께서 7월에 오찬 간담회에서 상용화를 강조하시면서도 '400版 폭의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이런 말씀을 발언하셨어요.

그리고 또 미래부에서는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방통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자 그 이후 한국경제 인터뷰에서는 '통신사에 배정된 40 LL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가능하면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방법을 찾아보겠다'하고 또 왔다갔다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 8월 19일에는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IT리더스포럼 강연에서는 '지상파 방송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활용해 UHD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고 당시 위원장님은 '기존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들은 바었다', 기존에 쓰던 주파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700째 논란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적해결책을 느닷없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자꾸 왔다갔다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표현한 것은 제 나름대로는 같은 생각을 표 현한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또 질문에 따라서 아 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의 리더스포럼의 질문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문이 그런 식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할 여지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제가 기술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언제인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이 부각이 되어 가지고……

○정호준 위원 잘못 들으면 700‰대역이 아닌데에서, 기존 대역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호준 위원** 앞으로는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레슨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발언들이 사전 에,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합의제기구 이기 때문에 이게 방통위원들과 합의되어서 했던 얘기들이 아니시지요? 협의되고 합의됐던 얘기로 발언을 계속 하셨던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까 죽 위원님이 말 씀하셨듯이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기본 방침은 지 상파 UHDTV를 어떻게 되든지 주파수를 확보해 서 하는 것임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 제가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공감대하에서 저희가 지금 차관급 정책협의회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준 위원** 700Mb 관련해서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미래부의 일반적인 주장에 방통위가 끌려 가는 모습은 없었으면 좋 겠고 협의, 합의를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국회도 이것을 협의하 는 데 같이 함께 조인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노 력을 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정호준 위원** 700Mb뿐만 아니라 또 방통위원장 님 말씀 중에 지상파 광고총량제 그다음에 지상 파 다채널방송 MMS 허용, UHD방송 활성화 같 은 지상파 현안에는 적극적 개입하시면서 지상파 를 제외한 다른 방송 분야 논란에는 좀 소극적으 로 대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간의 재송신료 문 제,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의 자율적 해결 원칙이다' 이렇게 미온적인 태 도만 보이고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방통위원 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분쟁 해결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다만 과거에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런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 제도권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 주는 그런 재정 제도를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정호준 위원** 기준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정호준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 주시 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기형 적인 정부조직법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아무튼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혼란이 계 속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통위의 미래부 의 업무분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저는 마 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일부 부분적인 부분에서 미래부의 것이지만 방통위가 더 적합한 것 그런 것을 상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것들 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래 부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 ○정호준 위원 역할분담에 대한……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꼭 필요한 부분은 서로가 정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정호준 위원 그래서 업무혼란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지역방송의 위기 탈출 의 해법으로 지역성 구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 다. 지역방송이 구현해야 할 가치가 지역성이고 지역성은 지역의 기업・대학・지자체・시민단 체 · 주민 등 모든 당사자가 지키고 가꾸어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공감합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이 지역성 구현을 위해서 는 지역방송사 제작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거 든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획일적인 이 런 것보다는 이제 다양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지역 특성이 많이 강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회가 통과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한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이 신청한 것의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또 하나는 지역지 상파방송사 매출 대비 2.78%의 금액을 방통기금 으로 분담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강길부 위원 이게 다른 파트하고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던데,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8개 지역 방송사가 약 116억 원의 방통기금을 분담을 했는 데 방통기금으로 받는 지원액은 2013년 20억이지 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강길부 위원 20억이 되다 보니까 납부액 기준으로 보면 17.2%에 불과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방송 지원에 대해서 방통위가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가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인력이든지 또 예산이든지 또는 저희의 정책의 우선순위든지를 그곳에 좀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장비 및 자체제작 투자 부담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역지상파들에 대해서 방통기금 징수율을 한시적으로 인하를 하고 그 인하된 재원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프로그램제작 등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지역방송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이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일단은 기금을 내고 그다음에 그 기금의 용도를 정하는 것인데요. 지 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게 내고 잉여분을 지역방 송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방안에 대 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상호 간사, 홍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길부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금년 6월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이되고 또 지방자치시대가 성숙해짐과 동시에 지역방송인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방송이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01년에 시작해서 2008년까지 진행되었던 지역방송의 날 그리고 지역방송대상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역방송의 날 부활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방송대 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방통위가 주최하는 방송대 상에서 지역방송 부분을 따로 해 가지고 상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지, 효율성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다음에는 방통위가 운영 중에 있는 5곳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방송문화 공공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중앙대 연구용역에서 1광역시 1센터 구축 그리고 미디어 취약계층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이 제공되는 시대에서 UCC 등 시청자의 프로그램 제작욕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할 때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수를 늘려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역시 또 예산이 뒤따르는 부분이어 가지고 지금 성북과 그다음에 울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그런 어려움을 하여간 잘 헤쳐 나가면서 우선 있

는 시청자미디어센터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 록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강길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최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민희 위원 방통위원장님, 지금 지역방송 지 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최민희 위원 답을 굉장히 쉽게 하시네요.

지역방송 지원 문제는 사실은 민주정부부터 '지원하자'다 동의합니다. 막상 지원하려고 하면 참 방법 찾기가 힘든 문제를…… 저는 들으면서 지금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700Mb대 방송용주파수 문제에 대 해서 방통위가 왜 이렇게 미온적인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임위원님들 제외하고 방통위의 핵심, 기획조정실장・방송정책국장・이용자정책국장・ 방송기반국장이 전부 비방송전문가예요. 정통부 출신입니다. 적어도 이 중에 방송기반국장이나 방송정책국장, 그중에서도 방송정책국장만 방송 전문가가 앉아도 이렇게 위원장님이 여기 와서 고생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4명이 다 정 통부 출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정책 국장이 방송 경력이 없어요. 이러니까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돈 안 되는 지역방송 왜 지원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 반론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인사하실 때 적어도 빅4 중에 하나 정도는 방송인 출신으로, 방송전 문가로 앉히셔야만 이게 정책결정이 바뀌는 겁니 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이인호 이사장 추천 관 련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꼼 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날 이길영 이사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그만뒀습니다. 맞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최민희 위원 8월 28일 날 상임위원회 비공식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맞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회의라고 할 것은 없 습니다. 상임위원 간담회……
- ○최민희 위원 비공식간담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최민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임 이사장은 9월 30일까지만 임명하 면 되는 겁니다. 일정상 맞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9월 30일이 아니고 하 여간 사직한 30일 이내로 하면 됩니다.
- ○최민희 위원 그렇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최민희 위원 30일 이내니까.

지금 문제의 회의가 있었던 것은 9월 1일이었 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 어요.

그런데 제가 이 속기록을 받아서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날 회의가 9월 1일 날 9시 10분에 시작해서 혹시 몇 시에 끝났는지 기억하고 계십 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10시 25분쯤 끝난 것 으로 기억합니다.
- ○최민희 위원 10시 24분에 폐회를 했어요.

'합의제로 운영하라'그러니까 쉽게 '예' '예'라 고 대답을 하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박효종 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제가 방송위원회 할 때보다 다수결이 엄청 늘 어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의제로 운영해 달 라고 부탁드렸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문 창극 후보자 KBS 관련 보도, 합의제로 결정하셨 지요?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 ○최민희 위원 몇 시간 걸렸어요?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한 4시간 반 걸린 것 같습니다.
- ○최민희 위원 그 과정이 쉽던가요?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좀 쉽지는 않았습 니다.
- ○최민희 위원 어려웠지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다수결로 했을 때보다는 위원 간에 사후에 뒤탈 은 없었지요?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 ○최민희 위원 그게 합의의 힘입니다.

장낙인 위원님 어떠셨어요? 과거에 다수결로 매번 소수자로 무시당하다가 어렵지만 4시간 반 동안 하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뿌듯하셨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상임위원 장낙인 저도 그때 퇴장한 상태에서 합의가 됐기는 하지만 상당히 기분은 좋았습니다.

○최민희 위원 합의제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면 그냥 몸에 밴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기겠다는 의지 없이 합의제 절대 못 합니다. 그 안건 하나에 4시간 반을 토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의록을 죽 살펴보니까 한 위원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 제발 한 차례 연기해 달라'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합의제 위원회 아닙니까?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의결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사가 아닙니다'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토론만 하고 시간이 있으니 결정은최소한 일주일 뒤로, 추석 연휴 뒤로 미루어 줄것을 제안합니다' '사업자들한테도 반론권이나 변론권을 보장하면서 왜 상임위원들의 심·결권을이렇게 침해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보니까 세 분은 비슷한 의견이고 두 분이 이렇게 계속 거의 애걸하다시피 하시네요. 아니, 일주일 정도 늦춰서 결정하면 큰일 나요? 왜 이 렇게 급하게 하셨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때……
- ○최민희 위원 아니,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일주일 후에 의결하면 세상이 무너집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 ○최민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는 추석연휴라 가지고 할 수가 없고 그러면 2주후로 넘어가야 되는……
- ○최민희 위원 그런데 2주 후로 하면 어때요, 30일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하늘이 구 멍 납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그 판단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KBS 이사회의 이사장이 사직을 한 상태여서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이것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잔여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보궐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최민희 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이런 애걸까지 하시는 위원들을 무시하고 하신 게

잘하셨습니까? 거의 애걸인데요. 그러다가 이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위원장님 인 것 같아요. "다수가 오늘 추천하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추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이 "합의제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거듭 간청합니다. 다수결로 하면 안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시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위원이 뭐라고 하냐면 "한 달의 시간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 가 위에서 내리꽂은 낙하산 때문인지, 어떤 오더 때문인지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받아 들일 사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싸우세요. 뭐 "그것 시비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입니다" "언성 높이지 마세요"가다섯 번이 나와요.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합의제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방통위원회의 합의제 운영, 이렇게 해도 됩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운영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민희 위원 그리고 9월 1일 날 의결하고 9월 2일 날 대통령께서 임명하십니다. 완전 전광석화 예요. 이러니까 한 위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낙하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해 보세요.

이러고서 합의제 하겠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고통 없이 합의제가 됩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 앞으로 유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희 위원 유념만 하시면 안 되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합의제 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1분 더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도 주신 적 있으시니까.
- ○**위원장 홍문종** 추가질의에서 1분 빼는 조건으로 드렸다는데요.
- ○최민희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뭐.
- ○위원장 홍문종 예, 하세요.
- ○최민희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는 상임

위원회에서 다툴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 어요. 행정기관에서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저는, 위원장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허원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기주 상임위원님, 세 분이 두 명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면, 자꾸 그렇게 하 시면 방통위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는 생각 은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급 하게 하려고 하면 나머지 두 여당 추천 상임위원 들께서 '저렇게 애원하시니까 뭐 한 1~2주 연기 합시다'이렇게 왜 안 하셨습니까? 두 분 답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글쎄, 시간을 더 충분히 가지고 얘기를 해서 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인호 이사장님을 추천을 했고 이인호 이사장님이 KBS 이사장으로서 충분히 자격 그리고 경륜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표결을 해도, 어차피 두 분이 퇴장을 하셨기 때 문에 표결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 ○**최민희 위원** 이것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예, 그러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권은희 위원**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방통심의위원회 위원장님, 2012년 8월에 입양 특례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혹시 바뀐 입양제도 에 대해서 아십니까?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입양 절차가 22곳의 입양기관을 통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은희 위원** 이제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을 의무화했고요. 그다음에 입양 시 법원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입양이 상당히 성행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려는 생모와 입양을 숨기려는 양부모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 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불법 입양 시도가 실제 개인 간의 아동 거래로 이어지 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 다.

혹시 위원장님,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입양 관련 된 게시글 본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게시글은 저 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은희 위원 사이트에다가 '개인 입양'이라고 검색하면 불법으로 아이를 입양하려는 게시글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 위는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혀 수행하고 있 지 않고요.

지금은 불법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이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심의를 하려면 불법성을 확인을 해 야 되는데 그 문제가 조금 쉽지 않아서 저희들도 곤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현재는 중앙입양원이라는 데에서 직원 한 명이 포털사이트 내에 개인 간 입양 알 선이라든가 아동매매 등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을 하고 있고 이 모니터링한 것을 다 찾아내 가 지고 여기에서 삭제 요청 이런 것들을 방심위를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 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고 있습니 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인지 아닌지 말 씀하셨는데요. 지금 입양법이 이렇게 바뀌었고 인터넷에서 아이를 거래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입 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방심위가 옛날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자・ 난자 매매 그리고 대리모·대리부 알선 등 이것 도 불법으로 해서 총 211건을 시정 요구를 한 사 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약, 도박, 음란물 등에 포함해 서 불법입양 관련한 정보도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 위원회도 어 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야 한다 고…… 예, 공감합니다.

○**권은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 이내에 한번 확인을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적극적으로 살펴서 어쨌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권은희 위원 예.

방송 모니터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방송심의 절차에서 방송 모니터는 방심위에서 심의 대상을 인식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 서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모니터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니까 전업주부가 76.3%고요. 연령이 30대가 33.3%, 40대가 48.1%, 30~40대가 81.4%입니다. 이렇게 특정 연령대에 편향되어 있으면 다른 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성별 연령대 직업 등의 좀 다양한 구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2013년부터 주부 이외에도 장애인 학생 남성 등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은희 위원 요즘 청소년 방송 모니터 제도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모니터 요원은 모두 자원봉사자로서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 안을 드린다면 이것을 단순한 자원봉사에만 그치 지 말고 방심위가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학교 측 하고 협의를 해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한테 사회자원봉사활동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 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기 부여를 할 수 있 는 대책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하여튼 위원님의 제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는데 온라인 활동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시고요. 그냥 한 번 얘기해서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멈 추면 안 되지요.

아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방송사들을 보면 패널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연령대, 성별 등 차별화해서 모니터링 요원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심위도 여기를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요, 모니터 요원 운영제도를 좀 더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 요원 운영 제도를 조금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은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권 위원님.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원식 위원** 인천 계양을의 최원식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여쭐게요.

본 위원이 세월호 참사 방송보도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더라고요. 특히 기본적인 재난방송 관련 법령 및 준칙을 정비해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에서 이게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지연되고 있지요? 언제쯤마무리할 계획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 이 초안은 되어 있습니다. 초안은 되어 있고, 10 월 30일인가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 그 초안 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가 KBS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KBS가 주관방송사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번에 제 역할은 충분히 다 못 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주관방송사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관방송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 일본밖에 없던데,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일본하고 그다음 에 영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냥 주관방 송……

○최원식 위원 미국 영국 독일 등 없고요. 미국 영국 같은 데는 개별 방송사의 재난방송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굳이 뭐 주관방송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리고 또 과거와 달리 재난을 보도할수 있는 방송과 미디어의 종류가 급증하고 또 주관방송사가 전체 미디어를 하나로 규합하고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

렇다면 주관방송사 제도를 계속 지속하느냐 이것 도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 ○최원식 위원 그러시고, 주관방송사가 제대로 한다 할 경우에도 가끔은 이것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시에 따라서……

이번에 보니까 KBS 재난방송 시스템 지원하 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으 셨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최원식 위원 그런데 세월호 때도 KBS가 전 원구조가 오보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 려 또 그런 오보를 낸 적도 있고요. 또 그 당시 의 여러 가지가 있고, 이번 9월 30일 전남 홍도 앞바다 보도에 있어서도 다른 보도전문채널보다 뒤늦은 것 아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보도에서 봤습니 다.
- ○최원식 위원 이렇게 뒤따라가는 회사가 계속 주관방송사로 있으면 이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오 히려 적정한 시기마다 평가를 해서 바꾸는 게 경 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은가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 ○최원식 위원 재난방송에 대한 법령 정비 검토 마치는 대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최원식 위원 그리고 방통위의 내부를 보니까 지금 재난방송 담당 인력이 두 명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최원식 위원 재난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소 화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담당 인력이 몇 명 정도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인력 배치 · 증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나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확인국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통위가 2012년 4월 웹진 '신통방통' 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위한 재난방송을 실 시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고 했는데 아직 영어조차도 제공되지 않고 있는 데, 지금 12월 달에 자막기능을 영어는 하겠다라

- 고 계획하시고 있는 거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원식 위원 그런데 이에 더해서 지금 국내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다국어 자막송출 시스템 개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최원식 위원 그리고 사이버 망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여쭐게요.

뭐 다 아시고 지적된 얘기지만 대통령께서 9월 16일 날 한마디 하시니까 9월 17일 날 법무부장 관이 지시해서 9월 18일 날 대검찰청 주재 유관 회의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유관회의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겠다 이러는데 위원장님, 모바일이나 인터넷 상시 모 니터링하는 나라가 외국에도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원식 위원 불가능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 니까 인터넷 유신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회의에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인터넷윤리팀장이 참 석했습니다.
-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미래부는 적극 협조하 겠다고 그랬는데 방통위도 참석해서 협조하겠다 고 그러셨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특별한 의견은 이야기 를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때 참석한 현황 하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잘 좀 점검해 주시고 요. 아시다시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세 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2002년도 39위였다가 2006년 31위까지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9년 69위, 올해는 57위로 하락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보도를 봤습니다.
- ○최원식 위원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돼 있 지만 지금 그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의문인데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이런 언론자유지수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쎄, 공감이라기보다 는....

○**최원식 위원** 그거는 쪽지를 보고서 대답할 문 제가 아닌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건 아닙니다. 공감 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낮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평가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이버 인권을 잘 보 장하시리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 입장을 충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에 있어서 이거 우리나라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도 아시지요? 지금 사이버상 허위사실 아니면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상시 모니터링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원래 불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본인이 구체적으로 처벌의사를 밝혀야지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말한그런 상시 모니터링 자체도 법체계랑 안 맞는다는 건 맞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방통위원장님께서 표현의 자유 정보인권 규제완화 측면다 그걸 고려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법조 인 출신이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 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아까 실무국장한테 카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계속 물어볼게요.

이 업무가 미래부 소관이라고 아까 밀어 버리 던데 방통위가 사업성 이런 것은 전혀 고려 안 합니까? 앞으로 이게 진짜 미래 우리의 유망한 사업인지 아닌지 거기에 연관되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어 주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문제 를, 공정성 뭐 이런 것만 따집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용자 보호 규제하고 그다음에 금지행위 문제 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김재경 위원 하여튼 저보다는 고민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규제가 이거하고 반사 적인 관계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서로 연결은 돼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아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며 보니까 며칠 사이에 탈퇴자가 200만 명이 넘어섰다는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종국에는 운영자들이나 이게 어디 다른 나라 그걸로 자꾸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산업쪽으로 봐서는 뭔가 득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자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정책당국에서 책임 있는 답을 좀 빨리 내줘야 되는 거지 이거 오죽 답답 하면 사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법조인이 돼서 그 런지 모르지만 뭔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공 개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위원장님도 옛날에 판사 하셨으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정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까지 할 정도로 다급하다 그러면 같이 고민을 공유해 가면서 뭔가 시장에 대해서 같이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냥 도처에서 산발적으로 문제제기만 되고 있고 해법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고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부장관님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업계 대표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도 불러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역할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어제 미래부 국감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일리지 적립 이런 업무를 방통위에서 하고 멤버십 서비스 이건 또 미래부에서 관장을 하고 그렇게 이원화돼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성격이 좀 다르긴 다르겠더라고. 다르긴 한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업무하고 관련되는 것만 제가 범위를 좁혀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보니까 마일리지제도 개선을 2004년 도 2009년도 2011년도 이렇게 한 세 차례 정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데이터 통화료 결제 가능 그다음에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그다음 미사용자에게 SMS 이메일 발송 소멸안내 상세정보 기재 이런 것들이 있는 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용률이라는 게, 2012년부터 올 상반 기까지 이통3사의 평균 마일리지 사용률이 33.3%밖에 안 되고 이 기간 중에 1450억 원에 이르는 마일리지가 고객의 번호이동과 해지로 소 멸,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던데요, 저희들 받은 통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뭔가,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단체들이 알면 굉장히 조직적인 불만이 표출될 그런 부분 아닌가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좋은 지적을 해 주셔 서, 일단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마일리지가 그만 큼 있고 이것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을 알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획기적인 방 법을 찾아보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제일 문제가 번호이동이 아주 경 쟁적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잦다는 거 아니겠습 니까? 그런데 바꾸어 버리면, 어제 이통3사의 실 무자들 불러 가지고 '알려 주느냐' 물어보니까 여 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 니까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겨 가 버렸는데 기존에, 소위 말해서 고객을 놓쳐 버린 이통사 입장에서 '당신, 우리 회사에 마일리지 이만큼 있 는데 이걸 이렇게 활용해서 써라' 이런 거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각 지대에서 금액이 이만큼 커지는 걸 저희들이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적절하게 지도를 하든지 약관 을 소비자들한테 불리하지 않게 고치는 이런 정 도로 방통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 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재경 위원 잘 좀 한번 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홍의락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일반적으로 정부가 조직을 개편

하면 과거의 정부조직이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개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방통위가 지난번에 굉장히 무소불위 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방송용 주파수 는 방통위가 하고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관 리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했잖습니까? 그래서 새 로 주파수를 분배하고 재배치는 국무조정실 주파 수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옛날 방송통신위 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도 포 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재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는 그것 을 그대로 이어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홍의락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 씀드리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같은 것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의사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런데 주 파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방통위에서 는 추천을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추천이 아니 고....

○**홈의락 위원** 위촉은 안 되어 있지요? 위촉이 안 되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잖습니까? 그런데 어제 미래부장관은 10월 말까지 이걸 결정을 하 고 주파수 배분표는 7005대는 11월 말까지 결정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하고 잠깐 말씨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방통위원장님 얘기 하실 때, 차관급 정책협의회는 뭡니까? 미래부하 고 둘이, 방통위와 두 분이서 계속해 나가는 겁 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 ○**홍의락 위원**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없고?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주파수심의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있는 것이고요 그 전 단계로 하는 겁니다.

○홍의락 위원 주파수심의위원회는 그래서 임의 적으로 미래부하고 두 부서가 협의를 하는 거네 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서 원래 재난망 부분은 10월 중에 결정을 하 고....

○홍의락 위원 그런데 재난망을 10월 중에 결정 하려고 하면 주파수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않 습니까? 그런데 아직 구성도 안 하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질 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통3사 마케팅비가 2013년도 8조 원 정도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통계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이게 굉장히 많고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통위원장님께서 보조금 상한제를 30만 원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8일자에 발표한 한국투자증권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이것으로 인해 이통사가 39.5% 정도 이익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평균 보조금이 14년 3월 달에는 57만 원이고 SKT 기준으로 보면 번호이동으로, 8월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으로 결정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조금 상한제가 너무 적게 결정된 것이 아닌 건 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건데요 이것을 민간증권 회사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방통위에서도 물 론 분석을 했겠지요. 분석을 했고, 그래서 30만 원에다 플러스 15% 정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통사는 제조사하 고 달라 가지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영업 비밀 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 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30만 원으로 결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상 이익을 어떻게 했다든가 추정액을 어떻게 결정했든가 인상액을 어떻게 했다든가 이것에 대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보고 싶습니다. 주 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영업자료라고 제출하기 가 힘들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감 전 까지 여기에 대한 근거 30만 원으로 결정한 근거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좀 빼 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서, 저는 30만 원으로 결정한 이유를 확인해 보 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이 저희 통계에의하면……

○**홍의락 위원**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는 데, 근거를 한번 알고 싶어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계산한 근거 통계자료

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의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60만 원 50만 원 정도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조금 통계가나오는데 30만 원으로 결정한 것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 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방심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심위원장님 오셨을 때 방심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KBS 문창극 징계 문제에 대해서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합의하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9월 4일이었지요? 그런데 9월 4일 날 방통위에서는 방통위원장님이 9월 1일 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시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의결했느냐, 이인호 이사장을 결재했느냐?' '허원제 부위원장출장 때문이다, 추석 연휴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사회를 빨리 정상화하겠다고 그러시지만 KBS 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열립니다. 그리고 8월 달 역시 정기 이사회가 마지막 수요일, 11차례밖에 안 열렸습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다른 이사들은, 2008년 이후에 보궐이사가 있었지요? 적어도 3일 내지 6일 걸려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인호 이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전 격적으로 그냥 통과시키고 방망이 두드리고 했는 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날 허원제 부위원장님께서는 공항에 가기 바빠 가지고, 출 장 가신다고 그러셔 가지고……

1분만 더 주시지요.

○위원장 홍문종 나중에 1분 뺍니다.

○홍의락 위원 예.

공항에 가셨지 않습니까? 회의시간 1시간도 말미를 안 두고 그렇게 급하게 전격적으로 결정하셨던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인의 추천에 의해서 상의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다는 것을 삼척동자라도 믿기가 힘들다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 부위원장님이 출장 가신다고 그랬는 데 나는 한 달 출장 가나 싶었는데 9월 1일 날 가셨다가 9월 6일 날 귀국하세요. 그러면 추석 끝나고, 추석이 언제입니까? 추석이 끝나고 금방, 추석이 9월 9일입니다. 마치는 게. 그러면 그때 회의를 해도 되고 이사회 정상화를 한다고 그래 도 마지막 수요일 날 열리는 이사회인데 9월 1일 날 그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부탁이나 누구의 지시나 이런 것이 아니 고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사 실이 저나, 저도 그렇게 삽니다, 이 인생을 살면 서 이렇게 겪어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문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이인호 이사장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절차위반으로 이인호 이사 선임절차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통상적 으로 거치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들이 임의로 선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사 선임할 때 방통위에서 검증절 차 거치지 않습니까? 신원조사도 하고 말이지요. 몇 가지 요건, 질문지 줘서 다 답변하게 하지 않 습니까? 그렇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보궐이사의 경우에는 추천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조회할 부분 조회하 고 본인의 진술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호 위원** 추천 이후에 받았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받아서 그 절차를 다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호 위원 그런데 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아니, 누구를 추천하면 사전에 검증해 가지고 서 류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추천한 다음에 검증서 류를 받습니까? 만약에 추천한 다음에 하자가 있 으면 도로 취소합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범죄형 조회라든지 그런 걸 해 가지 고 그런 것이 나와서 결격사유가 발견이 되면 그 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문병호 위원** 어떻게 중요한 자리의 공직을 추 천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당연히 사전에 검증절차를 거쳐 가지고 검증을 완비한 다음에 추천을 해야지요. 어떻게 추천한 다음에 검증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규정 에 있습니까? 규정에 없잖아요? 상식에 부합하게 집행을 하셔야지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은?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전에도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아서……
- ○**문병호 위원** 전에 한 번인가 있었다면서요? 한 번인가, 보궐로 보임한 건 한 번인가 있었다. 는데 그때도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왜 잘못된 관행을 따르시는 거예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절차를 다 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병호 위원 그리고 이 규정에 보니까 원래 전체회의 할 때는 이틀 전에 위원장이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해서 위원에게 통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만 긴급한 경우, 긴급 을 요하는 경우만 예외적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됩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전 주 목요일 날 수 집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의를 열었습니다.
- ○문병호 위원 이게 긴급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이틀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 ○문병호 위원 통보를 했어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목요일 날 통보를 했 습니다.
- ○문병호 위원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 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정확하게 답변하 세요.

- 이 이인호 이사를 처음에 추천한 사람이 위원 장입니까, 허원제 부위원장입니까? 정확하게 얘 기해 보세요. 누가 처음에 이 말을 꺼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먼저 여러 다양 한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정한 다음에 부위원 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자 꾸 통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과거 에도 추천 행위는 부위원장께서 하셨다고 그래서 부위원장에게……
- ○문병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인호 교수

하고 사전에, 그전부터 전화를 한 사이라든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잘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추천하기 위해서 이인호 교수하고 서로 대화하거나 전화하거나 서로 얘기한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이사장이……

○문병호 위원 아니, 어떻게 사전에 추천하면서 추천받을 사람한테 동의도 안 받고 추천을 합니 까? 동의 안 받으셨잖아요, 이인호 교수한테, 그 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그러니까 말씀 은 드렸습니다. 동의라기보다는 추천한다는 말씀 은 드렸는데 그것을 동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 렇습니다마는……

○문병호 위원 추천하는 말씀 언제 하셨는데요? 9월 1일 날 통과됐습니다. 9월 1일 날 통과됐는 데 언제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문병호 위원 그런데 아까 이인호 교수를 추천한 이유가 KBS 이사를 해서 했다고 그러셨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판단한 이유 중의 하나가 KBS 이사 역임하신 것도 한 이유 입니다.

○문병호 위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이인호 교 수를 추천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KBS에 계셨던 분이 KBS 이사장을 하시게 되어 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이사장보다는 좀 더 화합형으로, 그러니까 방송사 출신이 아니신 분으로 KBS 이사 경험이 있으시되 사회 원로이신 분을 찾는 과정에서 그렇게 찾게 된 것입니다.

○문병호 위원 김재홍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이틀 전에 통보받으셨나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김재홍 8월 28일 목 요일 오후에 상임위원간담회를 소집해서 그 자리 에서 처음으로 보궐이사 후보가 이인호 교수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데 정식으로 9월 1일자 회의에서 안건상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김재홍 그 자리에서 이의가 없으면 합의해서 의결 안건으로 올라갈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통보를받는 순간 이의제기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뜻의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합의된 의안상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호 위원 하여튼 이 절차를 보거나 선정된 경위를 봤을 때 이것은 명백하게 청와대에서 사전에 낙점을 해 가지고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인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국감장에 와서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면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겪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병호 위원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이렇게 독립성을 보장해 준 이유는 정말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정치적인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병호 위원** 그런데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운 영하셔야지요.

방심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저도 잘 못 진술한 것 같고, 질의한 것 같고 답변도 잘못 인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이 게시됐다, 사이버상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지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할 수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라면 본인이나 본인의 대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 사이버상에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삭제요청이나 심의요구는 본인밖에할 수 없다, 본인 또는 대리인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문병호 위원 검찰도 할 수 없고 청와대비서관 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검찰의 ○문병호 위원 요청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못 질의했고 위원장 님도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이버상의 게시글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완전히 이것은 법을 무시한 그야말로 현대판 유신과 같 은 그러한 행위다, 그런 행정이다라고밖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는데 참고인으로 오신 사무총장 님한테는 아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시지요.

.....

단통법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참고인 박희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지금 단통법에 관해서 여러 분 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 고인께서 단통법에 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참고인 박희정** 예, 작년에 법안 발의되고 나 서 저희 유통 소상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 었고요.

아시다시피 이동통신 대란이 많이 발생이 됐는 데요, 그 대란의 주범은 대형마트, 양판점 그다음 에 야간에 이루어지는 온라인, 저희 오프라인 소 상인들은 대란의 주범에서 사실은 소외되어 있었 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약 100여 건 정도의 판매 정책 이 내려오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서 단통법을 찬성을 하게 됐고 요. 그래서 말씀대로 보조금 대란은 없어졌습니 다.

그리고 미래부와 방통위와 협의 과정에서 소형 유통망의 보호방안이라는……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장씩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개정 시 논의되어서 소형 유통망 보호방안이라는 미래부 로부터 법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받고 적 극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법안 발의 작업하고 시행령 작업

에서 고맙게도 저희 의견을 여기 계신 고삼석 위 원님, 이기주 위원님, 김재홍 위원님께서 다 받아 보시고 미래부에서도 저희 의견을 다 받아 보시 겠다고 해서 법안 조문 조문 꼼꼼하게, 저희는 생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약 80페이지에 달하는 법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반 영이 상당히 안 됐고요.

단지 하나는 현재 15일 정도, 14일 정도 진행 이 됐는데 보조금 대란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매장에 손님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저희가 5000만 이용자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시점 인데요. '왜 가격이 올랐느냐, 이 집 저 집 가격 은 똑같은데 가격이 왜 올랐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손님들한테, 이용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조금 있으면 가계 통신비가 내 려간답니다' '언제요?' '조금 있으시면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이용자들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판매점 사전승낙제 를 시행했는데요. 사전승낙제는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대리점, 판매점의 통계수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 태조사, 종사자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고자 시행 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사전승낙 철회라는 기준 안이 등장을 하면서 악용의 소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안은 시행령에는 없고요. 단통법 제8조 에 의거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승낙 철회제도는 통신 3사와 그것을 위탁 운영하는 정보통신진흥 협회에서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승낙 철회가 되면 생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단통법에 보면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법 을 어겼을 때 긴급중지명령에 의해서 개별 매장 이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전승낙 철회를 맞게 되면 과태 료 내고 영업정지 당하고 생업에서 떠나야 됩니 다. 3중, 4중의 처벌규정이라고 위협을 느끼고 있 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께서 실태조사를 당 차원에서 하셔 서, 아니면 이통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서 좀 더 합리적인…… 이것은 법안에만 있지 시 행령에는 없어요. 그리고 현재 제도는 사업자가 만든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민 감하고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 평균 통신요금이, 알푸(ARPU)

가 3만 원하고 4만 원대 사이에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매 마진 구조를 보면 저희는 7만 원 이상 요금을 팔지 않으면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3만 원 평균 알푸를 팔아 가지고 2만 원 남는데요, 1대 파는 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 리고 2만 원 마진을 받게 되는데요. 7만 원 이상 요금을 팔면 20만 원 이상의 마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월 7만 원 이상의 고액요금을 팔 수밖에 없는 컨설팅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가계 통신비가 올라가겠지요. 그 5000만 이용자접점은……

현재 2만 이상 정도가 승낙을 받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7만 원 이상 요금을 팔게되면 결정적으로 가계 통신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정규분포상 3만 원대 요금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요금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판매정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신 말씀들을 저희가 잘, 또 우리위원님들께서 기억했다가 국감을 진행하면서 또미래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잘 상의를 해서…… 지금 단통법을 좀 고쳐 달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참고인 박희정 예, 제가 지금 드린 자료에는 소상공인 보호—오프라인 매장입니다—자영업 보호방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통법을 찬성을 하게 됐고, 저희가 하이마트나 재벌 유통 양판점보다 더 싸게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발 동등한 가격조건에서 경쟁을 하면 저희가 전문성이 있기때문에 경쟁에서 그리 밀리지 않을 것이다, 경쟁기회를 주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찬성을 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말씀드리면 단통법 공정경쟁 환경에서 사업자는 미래부에 표준협정 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표준협 정서를…… 저희는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법을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표준협정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해서 약 1달 동안 작업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3사에서 저희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표준협정서가 내려와서, 전자승인을 하지 않으면 대리점은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협정서

내용이 전혀 다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자한테 저희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산 끊 기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미래부 국감 잠깐 제가 시청을 하다 보니까 출고가 문제가 나왔는데요, 통신사가 출고가를 결정하는 것을 저희는 그 가격 그대로 삽니다, 대리점이요. 100만 원을 결정하면 100만 원 주고 사고요. 그것을 못 팔면 그 매입에 대한, 상품에 대한 재고 부담은 100% 대리점이 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출고가에서 저희는 마진을 1원도 붙일 수가 없는 구조이고요. 지금 단통법에 고시제 하 지 않습니까? 고시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출 고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조사 영업사원들이 다니면서 '제조사 판매정책을 쓸 수 없다. 그 이유는 사업자가 못 쓰게하고 있다'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가는 제조사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조사는 단지 사업자의 공급가로 납품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아주 교묘한, 묘한 가격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결정의 합의에 의해서 출고가가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절대로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 종사자 얘기로는 출고가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인 박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이것으로 추가질의와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박희정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7시 30분에 국 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부족하시면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상호 위원님!

○위원장 홍문종 예, 하세요.

○**이재영 위원** 제가 우리 국정감사 시작 전에 카카오톡·네이버·다음에 증인신청을 한 게 있 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양당 간사님들께서 논 의를 한 후에 알려 주신다고 했다가 제가 3사로 부터 아까 지적했던 문제와 더불어서 다른 포털 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고, 따로 보고를 받고 혹시 그것이 해명이 충분하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못 받고 있고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양당 간사 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세 군데 증인신청한 부분 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는 전병헌 위원님도 요청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이 부분을 수렴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답 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질의 내용은 이미 보내 드렸나 요? 이재영 위원님, 질의 내용이 이미 보내져 있 나요?

○이재영 위원 그쪽으로요?

○위원장 홍문종 예.

○이재영 위원 예.

○위원장 홍문종 알았습니다. 그러면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구체적인 질의는 좀 이따 하고 요.

어제 미래부하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하면서 제가 좀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방송콘텐츠산업 진흥정책권은 어디에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방통위에도 방송 콘테츠……

○우상호 위원 일부 있고 미래부에도 있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화부에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2004년도에 처음 국회 들어 와서 문방위 간사를 했는데요. 지금이 2014년이 니까 10년 지났거든요. 10년 지난 지금의 방송산 업의 환경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고 더 어려워졌 거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어차피 방송통신위원회 일을 하시 니까. 10년 후에 우리나라 방송산업이 어떤 위치 에 있을까……

여야가 어떻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방 송산업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이 렇게 예측을 해요. 별다른 수단 없이 지금처럼 가면 지상파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구조조정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종편은 아마 도태된 데도 있을 거고 신규투자자 유치하 느라고 1년 내내 헤매고 다닐 거고 아까 제가 끼 워 팔기 상품으로 방송 상품 얘기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대가 받지 못한 PP들 망한 데도 있을 거고요. 한 달에 3000~4000원 받아서 PP가 유지 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경향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송산업은 퇴 보할 것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태연하게 살아도 되는 거냐,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한 질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상파방송국의 적자 규모가 다 수백 억 대 아닙니까, 적게는 200억에서 크게는 500억~ 600억까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 니다.

○**우상호 위원** 내년이라고 해서 더 나아질 거 냐, 그런데 대체 정책당국은 뭐하고 있냐……

지금 말로는 창조경제론 얘기하면서 문화에 기 술과 산업을 얹어서 세계로 가자, 한류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장금' 그렇게 히트 쳤지만 중국에서 돈 한 푼 못 벌었거든요. '별그대가' 수억 뷰를 장식했다 그랬지만 우리나라 콘텐츠업자가 받은 것 5억 원 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방송콘텐 츠산업을 키우겠다는 거냐……

그런데 보면 어제 미래부에서도 이 질의를 했 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자기 일처럼 고민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 보면 진짜 대한민국 방송을 고민하시나……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끼워 팔기 얘기도 하고 지상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다 자기 일이 아닌 것 같은 표정들 보면서 '야, 이것 심각하다', 허원제 부위원장님은 방송국 출신이시 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넘 기면 안 된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 가 말로만 미래 먹거리 산업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말도 한가하다고 생각해요. 다 망해가고 있 는데, 내가 볼 때는 콘텐츠산업 전체 시장이 10 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반 토막 이하로 났는 데 도대체 그냥 월급 받고 살면 되나, 이런 걱정 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런 여러 가지 작은 현안들에 대한 대응을 하시더라도 별도로 이런 방송정책 전체를 한번 조정하고 정리하고 어떻게 키울 거냐에 대한 TF팀이 필요하다, 그것 없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좋으면 그냥 시장질서만잘 잡으면 되지만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 후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이것은 좀 고민을 진심으로 해 보셔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아까 제가 '규제기관으로서 규제가 실효성이 있느냐'이런 얘기 드렸는데 이것은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할 적에도 'MBC・KBS 그냥 놔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이것 규제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이통 3사 규제 이것 되게 솜방망이 징계라는 얘기, 벌써 수년째 듣고 있거든요. 규제 기관의 규제력도 약하지만 규제기관의 규제 의지 도 약하기 때문에 종편도 방송통신위원회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요, 지상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동통신 3사도 방송통신위원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런 규제기관이 과연 필요합니까? 그래 서 저는 이것 뭔가 제도를 바꿔서라도 정말 실효 성 있는 규제기관이 재탄생해야지……

그런데 지금 법에는 과징금을 3% 이하로 매기기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또 2% 이하로 제한시켰잖아요? 법에서 3%까지 열어 줬는데 방통위가 시행령에서 2%로 낮춰버리면 규제권을 줘도 안 쓰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규제기관이 제대로 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여야를 넘어서서 산업을 넘어서서 이것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떠세요? 한번 좀 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활 성화 또 방송정책의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고민 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규제기관으로서 의지가 밖에서 볼 때는 좀 의지가 약해 보이는 면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원래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데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밖에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 저희 규제기관의 원래 역할 그다음에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희 대책, 고민 이런 것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은 큰 정책, 거시적 정책에 대한, 미시적 정책만이 아니라 거시적 정 책에 대한 정리를 시작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고 요. 방송산업 생태계 점검하고 규제 방안들 검토 하고 그다음에 진흥 방안 검토하고 이걸 하셔야 된다는 취지이고.

두 번째 것은 규제기관의 규제, 재재 대상 기관들이 제재 방법과 제재기관의 결정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바뀔 것 아닙니까? 어떤 방송국도 재허가 국면이 아닐 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동안 쓰신 제재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재권을 드렸는데 규제를 제때 안 하시거나 제대로 안 하시거나 편파적으로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관 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된 규제권을 행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 민병주 위원 입니다.

방통위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빅데이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 겠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 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은 전 산업 분야의 융합과 더불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부가 가치를 높이는 창조경제 핵심동력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이용자지요-라는 양 자적 구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는 이런 현행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현행법이 적용되기 어 렵다는 건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

○민병주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는 지금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법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입 법적인 조치도,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조치도 필 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물인터넷은 사 실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그런 것들이 예상하지 못 한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하 는 데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하셔서, 지금 가이드라인 만든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 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빅데이터 개인정 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원인 분석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잘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예.

종편 출범 당시에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자극 적 또 선정적 방송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종편이 출범이 됐는데 이를 반영하듯이 2013년 53건, 올해 9월 기준으로 29건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A는 13건, MBN이 12건 등등 해서 2012년 대비 모든 종편이 증가가 됐어요.

9월 현재를 보면 JTBC 경우는 이미 6건 나타 나고 나머지 종편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데 이런 우려할, 자극적 선정적 뭐 이런 방송이 계속되는 부분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 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종편 PP 입장에서 또 시청률을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그 시청률 이 또 광고와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표를 보시면 지 상파는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인 데 비해서 종편 은 여전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 정해야 할 보도 프로그램이 고지 방송을 해야 할 만큼 품격이 없는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방통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하 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 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재승인 조건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공적 책임이라든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것을 내부 기구를 두도 록 하고 있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6개월 단위로 반기마다 저희가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 다.

저희가 편성에 직접 관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내부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 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 위원 그 '내부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이라고 가정을 하지 마시고요,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당연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 습니다.

○**민병주 위원** 또 하나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 표한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대폰을 보유한 청소년 비율이 91.5%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집계되어 있고요. 특히 휴대전화를 통한 성인용 콘텐츠 접촉 경험이 2011년에 비해서 3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나 권은희 위원님 얘기가 있으셨지만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통 또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기술적 차단 의무를 명확하게 해서 위반 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혹시 준비가 되고 계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음란물 유통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차츰 마련되어 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법률을 통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민병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 유승희입 니다.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2013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광고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 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전체 광고시장 말씀하 시는 겁니까?

○유승희 위원 예, 10조 가까이 돼요. 9조 6000 억 원인데, 이 정도 매출 규모면 다른 나라에 비 했을 때 이게 많은 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나요? 그런데 보면 최근 5년간 매체별 광고비 집행 현황을 보면 전통매체가 TV, 라디오, 신문, 잡지 그리고 새로운 뉴미디어라고 하면 종편도 있고 케이블TV도 있고 IPTV도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도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현재 매체별 광고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게 그래픽이 잘 안보이실 텐데요, 지상파 광고 시장 점유율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많이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쪽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대략 한 25% 육박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지금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지상파방송의

광고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는 지상파방송이 취약해지는 구조로 가는 것 아 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재원이 부족하면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 다.

○유승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지상파 광고 총량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 는 입장이 방송계에도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유승희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상당 부분 의견 수렴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광고 총량제를 지상파에 실시했을 경우에 지상파 광고의 증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지금 워낙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지금 해서 그것을 보고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종편도다 참여한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그 이후에 시행명을 개정하는 작업으로 들어가고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가 상당히 아날로그 식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래서 굉장히 규제 자체가 너무 나 상세하고 또 시간과 횟수를 일일이 다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규제를 넘어서서 총량 제로 시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광고를 해 라 이런 게 총량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작년 12월 27일 방통위가 광고 총 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방송광고균 형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 왔습니다.

○유승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량제 도입하기로 했고, 금년 2월에 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을 했고, 그다음에 또 8월 4일에는 방통위 3기 비전발표 시에 광고 총량제 도입을 재천명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뭐 그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공공성뿐만이 아니라 질 좋은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라도 광고시장의 점유율을 더 이상 떨어뜨

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방통위원장 입장 으로서 이 정책을 방송 광고, 지상파 광고에 대 한 총량제 도입을 조속히 지체 말고 지금 실시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주저하시는 건지, 아까 총량 제를 도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시장 점유율이 늘 어나겠느냐, 효율성,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니라 혹시 종 편의 눈치를 보시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눈치를 보는 건 아닙 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방송 광고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광고가 어느 한쪽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쪽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방송을 총괄해서 관할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광고가 좀 활성화되면서 한쪽이 더 늘 어나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이동 같은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본 다음에 다양한 광고 활성화 방안과 함께 시도를 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장 점유율이. 시장이 지금 10조 규모인데 이런 총량제를 통해 서 광고시장의 규모를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지 요. 그러니까 있는 시장을 놓고 나눠 먹기가 아 니라 이런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을 해서 지상파의 광고 매출 액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조속히 실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간접광고라든 지 다른 광고 부분도……

○유승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청자들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정책을 방 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꾸 지상파방송을 말하자면 홀대하는 방식으로 가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은 시청자들의 복리후생에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청자 권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말씀하신 것 잘

.....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유승희 위원** 조속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위원장 홍문종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심학봉 위원님!

○**심학봉 위원** 예,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전파법상 700째 있지 않습니까? 그 주파 수 배분표상에서 방송용 주파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700Mb는 지금 방 송용 주파수로 주파수 분배표 고시에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러니까요. 고시되어 있지 않습 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심학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방송용 주파수지요, 현재 상태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고시상으로 그 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법조인이시니 까, 법적 효력을 갖는 측면을 보면 방송용 주파 수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방통위의 소관 업무를 보면, 11조 3호에 보면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게 소관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700Mb에 대해 서는 방송용 주파수고, 그렇지요? 그 방송용 주 파수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방통위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야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방송위 소관 방송용 주파수를 왜 이렇게 미 래부에 자꾸 끌려 다니느냐 이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원래 아날 로그 방송을 할 때 방송용 주파수로 사용을 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 면서 아날로그 방송을 끊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반환이 됐는데요.

반환된 이후에 용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방송용 주파수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지 현 재 방송용 주파수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 기 때문에……

○**심학봉 위원** 아니, 장관님께서 꼭 미래부장관

같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그런…… 저희 도 지금 미래부하고는 사실은 정치 협의를 하면 서 굉장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학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러니까 이런 거지요.

지금 법에 용어의 정의에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 디지털 방송용 주파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러니까 이거 방송 주파수가 맞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현재는 고시표에 방송 주파수로 돼 있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어차 피 국회에서 공청회하고 공론화 과정 하겠지만 소관 부처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우리가 방 송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는 당연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부하고 협의 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학봉 위원** 협의를 하셔야지요. 협의하는 절 차를 안 밟으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여기 당연히 의 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학봉 위원 당연히 미래부장관도 오셔야 되고요 방통위위원장도 오셔야 됩니다. 그 자리는 어느 한 부처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한데 우선 소관 부처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방송산업을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이냐, 그거는 뭐 이쪽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다음에 하더라도 먼저 소관 부처에서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된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저희도가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학봉 위원 현재 광고시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장이 100이라면 더 커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더 커지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광고 기법을 다양화하면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는 광고들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창출해 낸다든지 또는 간접광고의 범위를 넓힌다든

지.....

○심학봉 위원 그래서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고총량제 문제나 간 접광고 이것도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을 해야 됩 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한쪽이 크면 한쪽은 줄 어들게 돼 있는 그런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래서 저는 양쪽이 다 클 수 있는 방향으로 파이 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광고시장을 만들어 가 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부 분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KBS 수신료 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 묶어서 이걸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야 위원들 이 여기 상임위 와서 한번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양쪽이 전부 다, 한쪽이 크면 한쪽이 줄게 되기 때문에 이게 승자독식 산 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극렬하기 때문에 아예 공론화를 시켜서 양쪽이 다 커 갈 수 있는 방향 으로 하고 이참에 지상파가 갖고 있는 문제도 동 시에 해결하는, 그러니까 패키지로 원샷으로 하 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니냐, 그래서 자꾸 규제기관이라고 한계있다고 하지만 여기 지금 차 관급만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부처에 차 관급이 네 분 계시고 장관이 계시고 하는 힘 있 는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합의제 기관으로 서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높으신 분들 배정해 놓으신 거니까 거기서 이렇게 안을 가져 와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가면 국민들 저항이 조 금 있더라도 빠른 시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또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양쪽 다 이렇게 이익이 되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 가면 방송광고 산업 파이도 상당히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좀 전 향적으로 광고시장 진흥 부분도, 규제뿐만 아니 라 고유 업무가 규제지만 또 규제에, 또 그러면 진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흥 쪽도 많이 아이디 어를 내고 정책을 담아서 같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그것이 구체화되면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학봉 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광고총 량제 하나만 가지고 하면 통과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알고 있습니다.
- ○심학봉 위원 그래서 패키지로 원샷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라는 생각을 오늘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 다.
- ○심학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심학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오늘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답변이 입장이 전일 에 있었던 미래부장관이나 원안위원장과는 사뭇 다르게 비교적 명료하고 소신껏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방통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 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통위설치 법의 기본정신은, 각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왜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느냐 하면 그 입법의 취지와 정신은 각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즉 여 야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치 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합의과정에 이르는 것이 가장 균형되고 공정성 있는 결과다라는 근 본적 입법취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마 법조 인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 점에서 운영도 오늘 답변하시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끈질긴 그런 합의를 유도하는 자세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헌 위원** 마찬가지로 박효종 방심위위원장 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방심위도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바 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입법취지와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밸런스를 잡 아가자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종다수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선택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합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에 지난 8월 달에요, 방통위 가 종편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사업계획을 미 이행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지난 8월 달에 법원에서 사업계획 미이행 종편사의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 이유가 뭐냐면 이행 가능성이 없는 시정명령은 소위 말해서 과 징금 부과가 부당하다 이런 것인데 논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

하기도 한테 이 판결의 취지는 뭐냐면 어찌됐든 종편4사의 사업계획은 법원이 판단할 때 이행하 기가 어렵다라고 사실상 판결을 한 셈이나 마찬 가지지요, 결과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획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남은 기간 동안 그걸 다 이행하더 라도 원래 정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전병헌 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전병헌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종편에 대한 재승인 조건 이행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것도 제가 볼 때 과연, 좀 전에 몇 분의 위원님 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방통위가 종편 인가 당시에 또 재인가 당시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 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서 방통위원장의 솔직담백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는 노력하면 얼마든 지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가 시정명령을 할 때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충분 하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지금 판결과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 각을 합니다.
- **○전병헌 위원** 이런 식의 판결이 나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방통위의 권위도 상당히 상처를 받 게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 사업계획 추진을 엉터 리로 하고 있는 종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충 분한 고려와 신고거래를 통한 규제와 징계와 그 리고 지금 확인 작업도 보다 더 각별하고도 세심 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 니다.
- ○**전병헌 위원** 그리고 2004년도부터 010 식별번 호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016 017 011 이런 것들을 마케팅 전략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 을 2004년도부터 모두가 010으로 통일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총 8000만 개의 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정부가 여유분으로 갖고 있는 게 530만 개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재난망 등이 추가로 개설이 되면 이것이 더 줄어들겠지요. 그 런 점이 있고, 그래서 총 비율로 따지면 8000만

개의 한 7%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번호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010 통합 취지가 현재는, 200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오히려 70% 가까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가 거의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번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 번호 발굴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 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번호를 이렇게 통신사별로 할당을 하다 보니까 어떤 통신사는 대부분 다 번호가 고갈돼 있고 또 어떤 통신사는 번호가 남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지금 역차별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 통신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번호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불편함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새로운 번호발굴 정책을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과 기술발전의 속도로 볼 때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저희도 미래부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보다는 미래부에서 번호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갈되기 전에 그런 정책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새누리당 서울시 강동을 당협 위 원장 이재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 휴식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신 게 있어요. 검찰이 직접 인터넷 댓글에 대해 포털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것은 불법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비슷한……

○이재영 위원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고 하셨으

니까 그 말이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직접하는 것은 방심위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재영 위원 검찰이 직접 인터넷 댓글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그거는 법 위반 아닌가라 는 질문에 '그거는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라고 답 변을 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법에는 방심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였었습니 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얘기가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 건 알고 계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법무부 건 정확 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 g

어제 법무부장관한테 이런 같은 질의가 들어갔을 때 법무부장관이 '삭제 요청의 취지는 포털업체와 삭제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댓글이 있을 경우 그런 댓글이 많을 수도 있겠지요,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에 대해 국민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포털과 협의하겠다, 신속히 상의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고 또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절차에 대한 홍보를 널리 할 수 있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이런 취지로 어제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한 거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취지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이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그런 취지라면……

○이재영 위원 그러면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 질의와 그 질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모르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취지가 다르 다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어제 나왔던 얘기고 속기록에 있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요, 모르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혹 시 이 얘기를 아시고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제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 지만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장관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문제는 타 기 관에서 타 부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답변하 고 굉장히 상충되는,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행히도 어제 이런 질의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니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는 저희 정통망법에 방심위를 통해서 조치를 하는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취지 는 아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 버렸네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 니다.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총 지출액이 얼마 되지 요? 말씀드릴게요. 1460억. 이 중에 타 부처 소관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한 35.4% 정도 됩니다. 꽤 많지요? 그러면 지원받은 기관 중에서 발전기 금에 납부하는 기관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타 부처에서 받는 것 중에는 납부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납부 의무는 없고 지원 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견 해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게 주로 지원하는 게 아리랑국제방송 그다음에……

○**이재영 위원** 아리랑이 굉장히 많아요, 295억.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영어FM하고 국악방 송 이런 것들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영어FM이나 국악방송은 광고매출이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발 전기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홍문종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영 위원** 이 아리랑이 어디 소관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문화관광부······

○**이재영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일반회계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이게 전부터 계속……

○**이재영 위원** 전에 왜 이랬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재영 위원** 왜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 파악하시고요 이 것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리랑TV같은 경우에는 300억씩이나 쓰 는데 납부 의무도 없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일반회 계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 만 하고 회계만 보고 전혀 관리 감독할 수 없 고……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 면 원래 공보처가 아리랑TV를 관할하다가……

○**이재영 위원** 역사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요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준 위원 정호준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타깃팅 광고에 대해서 보고받으 신 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 받은 것은

○정호준 위원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호준 위원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검색했던 검색어 등 비식별 개인정보 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사용자에게 맞춤형 배너 광고 등을 띄워 주는 것을 이른바 타깃팅 광고라 고 합니다. 그래서 웹 서핑하시는 분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customize)된 광고를 해 주는 강화 된 마케팅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너광고 노출에 비식별 개인정보가 은 연중에 활용됨으로써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울러 온 가족이 하나 의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자녀 분이나 아 니면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보면요 이런 타깃팅 광고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비식별 개인정 보 수집에 대해서 고지하거나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타깃팅 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들의 비식별 개인정보 수집 고지나 거부권 부여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혹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래서 이걸 조사하지 않은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주무부서인 방통위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현재 인터넷에서의 타깃팅 광고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 결정권을 보호하고 또 가족이 함께 쓰는 컴퓨터의 경우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녀나 청소년들을 부적절한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타깃팅 광고라고 하는 신유형의 광고가 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타깃팅 광고시장의 현황을 점검하시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호준 위원 공익광고 잘 아시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호준 위원 공익광고는 일반 상업광고만큼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2014년도 공익광고의 시 급별 노출현황을 보면 시청률이 낮은 B급이나 C 급이 한 84%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 다. 알고 계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아무래도 공익광고 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호준 위원 그렇겠지요, 수익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청률이 낮은 시간에 주로 공익광고가 편성된 이유는 현재 방송법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만 고시하고 있을 뿐 시급별 방송비율은 정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익광고의 방송 시급별 편성규정

은 방송사의 편성권 및 제반 경영수익 등에 연계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관련기관 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공익광고의 취지를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급별 방송비율에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아무래도 방송사 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준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아무래도요. 그래서 너무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공익광고가 또 완전히 잘 안 보는 시간에 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그것도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같이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방통위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 ○정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위원장님, 광고총량제하고 중간 광고 도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당장은 지상파하고 종편 사이에 여러 갈등이 있는데 사실 크게 보면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방송에서 포털 쪽으로 광고가 빠져나가는 그 추세가 더 큰 이슈 아닙니까, 그것이 더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털의 광고 규제가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포털의 선정적인 광고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조금 체계적이 지 못한 부분이……

○조해진 위원 단속 규제 말고요, 방송과 같이 그렇게 촘촘하게 시간, 방식……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규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해진 위원 없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포털에 들어가 보면 정말 아주 다종 다양하게 소비자들의 기호와 관심 끌기에 정말 효과적인 다양한 새로운 방송광고들이, 기 법들이 쉴 새 없이 새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꽃피는 현장 같아요, 포 털의 광고 패턴을 보면.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그쪽으로 안 갈 수 가 없고. 그에 비하면 방송은 정말 제가 봐도 이게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앞뒤, 위 아래로 딱 그냥 촘촘하게 그물로 얽어 가지고 창 의성이 발휘될 여지를, 표현을 좀 심하게 하자면 숨통이 막힐 정도로 꼼짝 못하게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방송의 특수성을 살 린 창의적인 방송광고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 으며, 그런 방송을 보고 누가 광고주가 이쪽에다 가 더 광고를 많이 하겠는가, 그것은 당연한 이 치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포털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거의 광고 실험장이다시피 할 정도로 새로운 광고기법 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허락한다면 지금 처럼 이렇게 지상파든 종편이든 광고가 저렇게 포털에 막 그냥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제의 대칭성도 안 맞지, 균형도 전혀 안 맞지만 포털은 완전히 풀어 주고 방송은 꽉 조여 놓고 이것도 안 맞고, 창조경제 라고 하는 창의성 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론 에도 안 맞고, 매체 간의 균형도 전혀 안 맞고, 전혀 공정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포털도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 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규제는 도입해야 되는 쪽이고 방송은 풀어 줘야 되는 그런 쪽이 아닌 가, 그런 측면에서 큰 틀의 방송광고 규제 완화 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총량제나 중간광고제를 도입했을 때 방송광고 시장이 순수하게 어느 정 도 증가할 것인가, 증가하면 그게 일부가 지상파 로 가고 일부가 종편으로 가더라도 다 어느 정도 혜택이 갈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덜 할 텐데 전 혀 순증이 없이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제로섬으 로 뺏고 뺏기는 구도로 되니까 서로 긴장하고 정 책 추진에도 장애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곧 발표될 거라고 하셨는데 시장 확대의 효과에 대한 용역을 통한 검증도 필요하 지만 정책적으로 그렇게 또 지원, 장려, 촉진 그 런 방향으로 가도록, 방송광고 시장 전체의 확대

라는 결과 쪽으로 가도록 지원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래서 지금 검토 하고 있는 것들이 가상광고의 대상을 확대한다든 지, 간접광고의 시간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새로 운 유형의 결합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 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타이틀스폰서 광고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다양한 방안의 새로운 광고, 그래서 전체 광고 시장이 더 파이가 커질 수 있는 방안 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정책으로 발표할 예 정으로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방송 외주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연구반을 올해 7월부터 운 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직 그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것은 정하지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마는 외주제도가 관계되는 부처도 문화부 하고의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려면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최종적인 종합적인 안은 좀 늦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게 있으면 거기서 논의되는 대로 저희가 중간중간에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 습니다.

○조해진 위원 외주제도의 순기능도 있지만 개 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해진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우상호** 예, 1분 간사님이 원하시 면....

○조해진 위원 지상파방송 어떻게 보면 한류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사니까 봐주신 거지요?

(웃음소리)

한류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도 그 역 할이 막대한 지상파의 자체 콘텐츠 제작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측면 그리고 외주사들 가운데 부실 외주사들이 많아져 가지고 실연자들한테 제 대로 임금 지급도 안 하고 그러면서 분규가 발생 하고 거기에 지상파로 오히려 옮겨 붙고 하는 그 런 문제도 있고 또 방송시장을 개방했을 때 외국 해외 방송사업자한테는 이런 외주 의무제작이라 든지 특수관계자제도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저는 그것은 국가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선방안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외주제작 유지 자체문제부터 해서, 또 굳이 유지한다면 특수관계자제한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을 좀 개선하는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도 특수관계자 비율을 폐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순수 외주제작 비율을 높여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비율을 서로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 지금 이 정부가 참 딱합니다. 한 편으로는 창의성이 생명인 창조경제 꽃피워야 되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비판댓글 검찰 내세워서 없앴으면 좋겠고, 이 2개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참 딱합니다.

창의력이 넘쳐흐르고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사이버에서 대통령 비난 좀 하는 것은 통 크게 놔둬야 꽃피우는 건데 참 모순 속에서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참 우리 다 딱한데 그래도 위원장님,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하고 가야될 것 같아요.

1, 검찰이 포털에게 직접 문제댓글 등 삭제 요 청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월권이에 요. 이것은 방심위가 댓글 심의해서 그 내용들 다 심의해서 삭제하건 말건 그 권한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아까 그렇게 답하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법에 그렇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두 번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검찰의 직접적인 글삭제 요청은 논의만 됐을 뿐 추진하지 않을 거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까 저와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끝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포털사에

참고하라고 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것도 대단 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국 회에서 답변할 때 신중한 판단이라는 건 안 하겠 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검찰이 삭제 요청하는 거랑 삭제 협조 를 요청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나라 이 무소불위 검찰이? 지금 우리 논의의 요지가 검찰 이 나서서 온라인에 직접 개입하려는 어떠한 시 도도 안 된다는 요지입니다. 그게 직접적인 삭제 요청이건 협조 요청이건 받아들이는 쪽은 똑같아 요. 그러니까 지금 저토록 카카오톡이 저항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순응했다가? 그래서 이 부 분은 누가 물어도 기준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협찬 관련해서 이것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방통위 직원들하고 저희 의원실 비 서관이 오랫동안 논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 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것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요. 꼭 검토하셔서 대책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 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도 살펴보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다음 지금 종편들이 방발기금 은 유예받으면서 2012년에 8억 7000만 원, 2013 년에 15억 6000만 원, 2014년에 11억 1000만 원 을 지원받았어요, 콘텐츠지원기금으로. 이것 너무 이상하고요.

그런데 반해서 OBS는 사실은 지금 40억 이상 적자난 상태면서 방발기금 내고 있잖아요, 이것 참 저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은 제가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역외재전송에 대 해서 큰 틀의 가닥을 잡고 나왔는데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서울지역 역외재전송 정책결정이 좀 지연됐거든요. 사실 이것은 일부 정책 실패도 약 간 있습니다, OBS의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OBS에 대해서도 종편만 봐주시지 마시고 약한 방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좀 검토해 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것도 지금 용역을 줘 놓고 어느 정도를 해 주는 게 적절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호 이사장 건이 계속 얘기 나

오는데 제가 이번에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 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이미 대통령께서 임명해서 직을 수행하시는 분을 지금 어쩌겠습니 까,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께서 특정 성향의 경제단체가 주최 하는 강연회에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해방 전후사 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세요. 저는 학자로서는 괜찮은데 이분이 KBS 이사장 이면서 이런 강연을 하는 것은 이사장직을 수행 하는 동안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것은 충분히 검 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위원 동의하시지요?

예를 들면 KBS 이사장이 '해방정국에서 김구 는 싫고 이승만 대통령은 좋다'이런 말 하고 다 니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안 되잖아요? 그래 서 저는 이사장 하시는 동안만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강연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 다.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쎄,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최민희 위원 이것을 동의 안 하시면 어떡합니 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제가 동의하고 안 할 부분의

○**최민희 위원** 무지하게 중요하지요. 공영방송 이사장이 계속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강연하고 다니고 야당은 계속 문제 삼고 결국은 KBS 그 런 이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인상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위원 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가슴 아파서 안 하고 싶 은데 박효종 위원장님, 제가 언제인가도 저는 이 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다 인정하고 우리의 대통 령의 영역으로, 성역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 다.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존경하건 하지 않건 누구 든 역대 대통령은 무조건 성역에 올려 보내드려 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독 그게 안 되는 되 는 분이 있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MBC가 노무현 대통령 실루엣을 이렇게 안 좋 은 일에 썼거든요. 이것 살펴보시고 적절한 조치 해 주시겠습니까? 심의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래서 하여 튼 경위 등을 파악한 다음에 심의규정에 위반하 느냐 유무를 판단해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민희 위원 저는 이것까지 하고 1분 주시면 추가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예, 뭐 제 것도 아닌데 많 이 쓰세요.

(웃음소리)

○최민희 위원 그러면 많이 쓰겠습니다.

MBC는 이미 뉴스데스크에서 김근태 전 민주 당 상임고문 그리고 문재인 의원의 실루엣을 비 리 사건에, 그리고 밥 로스의 악성 림프종 사망 사실을 전하면서 또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 문에 저는 심의하실 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장낙인 상임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상임위원 장낙인 다 보여 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처에서도 그 내용 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

○최민희 위원 저희가 이것 실루엣까지 다 해서 본떠 봤더니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썼던 그 실루 엣이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방심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이 5명 아닙니까?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 ○강길부 위원 그러면 한 번…… 이게 매주마다 열리지요?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매주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 ○강길부 위원 매주 두 번씩이나 합니까?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통신소위……
- ○강길부 위원 그러면 2011년에 한 달에 회의당

평균 처리 건수가 816건이었는데 올해는 1700건 으로 한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늘었 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늘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이 비상근위원들의 경우에는 회의 2~3일 전에 심의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전문가라도 이 많은 건수를 어떻게 처리해서, 가능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저희들도참 이게 안건이 방대하고 그래서 하여튼 로우드 (load)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하여튼 유형이라든지 뭐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효율적인 심의를 하려고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것은 분명합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것 옛날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운영할 때는 상임심의위원 제도가 있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있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건수가 옛날 보다 너무 많아졌는데 그때도 상임위원으로 뒀는 데 지금은 비상임으로서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데 개선 대책이 없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지금은 상임 두 분하고 비상임 세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사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아주 굉장히,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적인 이런 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고민하고 그다음에 건의 도 할 예정입니다.

○강길부 위원 하여튼 무슨 대책이, 상임심의위원 제도로 바꾸든지, 안 그러면 그와 유사한 뭐가 있든지, 법령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래서 과거에는 재택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어쨌든 노력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다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동일한 경력에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출신 성분이 달라서 보수에 차이가 생기는 이런 게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저희들이 2008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사실은 두 가지 기관이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과정에서 역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길부 위원** 일반직은 출신에 관계없이 연봉 액이 동일 수준으로 맞춰져 있지요, 그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강길부 위원 그런데 계약직의 경우에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연봉이 1000만 원까지 차이가 있 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알고 계시지 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 TF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계약직 문제는 지금 거 의 타결 단계에 가까이 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 다.

○**강길부 위원** 이번에 개선안 마련이 돼서 해결 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강길부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벌써 한 6년이 지났는데 두 달 만에 합의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동안에 좀 의지만 있었다면 훨씬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이번에 개선안이나와서 합의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능성은 충분하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아무튼 저도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계약직에 관한 임금 문제는 해결이 잘될 것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길부 위원 하나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문제 중에서 국내에 성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료로 공급하는 PP 업체가 있거든요. 이런 성인 콘텐츠 제작 PP가 제작하는 성인 콘텐츠가 청소년 유해성 매체물로 생각되는데 맞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강길부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성인물 제작 사업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들의 시청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유튜브 등에 그것도 직접 업

로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간접 시청을 방관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을 잘,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지금 문제는 그런 성인 콘텐츠가 유튜브에 게시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내 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래부나 이런 소관 부처하고 협의해서 사업자가 게시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전혀 그게 없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제 대로 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 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위원님의 뜻 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인천 계양을의 최원식입니다.

방심위원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방심위 한 해 시정 건수를 보니까 2012년에 한 7만 2000건, 2013년에 10만 4000건, 2014년 8월 기준으로 한 8만 건 되네요. 그런데 이의신청 건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아세요?

그러니까 12년에 50건, 13년에 67건, 14년에 8 월 기준으로 9건 그래서 이의신청 건수가 시정요 구 건수 대비해 0.1%도 안 돼요.

이렇게 이의신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최원식 위원** 방심위가 잘하고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드 리는데, 지금 시정 요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한테만 알려지고 이용자한테는 알려지지 않아 요. 그런데 이의신청 기간이 이용자도 이의신청 권이 있지만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서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래서 이 부분을 이용자들의 이의신청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

그래서 제가 첫째로 시정 요구받은 날이 아니 라 이용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15일 로 바꾸든지 아니면 시정 요구받은 날로부터 상 당히 충분한 기간을 주시든지, 두 번째로 정보통 신망법 44조의7 취급거부명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미리 의견 제출 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정 요구할 때도 이용자한테도 의견 제출 기회를 미 리 공시한다면 아마도 이의신청권이 제대로 보장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신 다음에 검토 결과를 확인국감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위원님의 뜻 에 아무튼 저도 유념을 하고, 다만 이의신청 기 간이나 이것이 너무 장기간 보장될 경우에는 명 백하게 불법적인 정보를 방치할 수도 있기 때문 에

○최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익의 형평을, 권리의 형평을 균형을 잘 잡아 주시고, 지금 이 용자들이 15일이면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형 평을 잡아 주시라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에 따른 얘기인데요. 장 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 장에 관한 고시 제6조3항을 보면 지역방송은 2015년에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 화통역방송 5%를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고시의 기준이 전체 편성의 70% 이상을 KBS· MBC·SBS로부터 수중계받는 지역방송사에 맞 추어져 있어서 100% 자체 편성하는 독립지역방 송사가 준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수중계를 받는 지역방송사는 KBS· MBC 등 지상파에 벌써 그런 자막이 들어가 있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덜 가지만 자체 편성을 100% 하는 경우에는 그걸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OBS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OBS가 자체 편성 100% 잖아요, 고시 기준 이행을 위해서 매출액 대비 매년 3.7% 이 상, 그러니까 13억 5000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돼요. 한편 SO나 PP는 이 편성 비용이 매출액의 1%가 초과되면 장애인방송 편성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좀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역방송 중에서 자체 편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문화나 방송문화 활성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그런 방송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 주시고 고시 기준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저한테 좀 얘기 를 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적한 취지에 동 감을 하고, 다만 장애인단체하고 좀 협의를 해 서……

○최원식 위원 예, 협의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리고 지역 자체 편성이 많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제도 개선에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 용역에서도 자체 편성 비율이 높은 지역방송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공익채 널하고 공공채널이 분류가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개념은 뭐 법에 달리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거의 유사한 것 같고, 다만 공공채널은 미래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익채널은 방통위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되고 정책의 비효율성이 우려돼서 사실 방통위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미래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미래부가 저희한 테 얘기한 걸 보면 '이원화에 따른 일부 문제점 이 있어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한 반면에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목적에 맞도록 방

통위로 공공채널 이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적극적인 것 같은데, 방통위가 이것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채널하고 공익채널하고 개념적인 차이가 약간 나지만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같이 선정하는 것이 보다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 부서에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식 위원 하여간 미래부와 관할 문제를 조속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공채널의 선정 기준, 실효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익채널 전문편성 분야의 규정 및 범위의 모호 성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셔서 확감 전 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종일 증인으로 계시다가 이 제 다시 감사위원으로 복귀하셨는데, 국회의 기록이신 것 같은데, 증인의 입장에서 아마 이해를 잘하실 수 있는 질의이실 것 같습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 委員 종일 피감기관으로 있다가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 으십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입장을 바꿔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성숙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송 경영악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민방 그리고 지역 MBC 그런 지역방송들은 그동안에 디지털 전환 투자하는 부담도 누적이 돼 있고 미디어렙 도입이라든지 엔스크린, 여기에 재방송 확대 이런 걸로 해서 최근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특히 미디어렙 도입으로 해서대부분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 하락은 고스란히

지역방송 광고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발표된 방통 위의 정책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대비 13년 중앙 3사의 광고매출은 약 3조, 숫자가 맞습니까? 3조 에서 2조 9800억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0.1% 감소, 반면에 동기간 지역방송 광고매출은 6500억에서 5700억, 그러니까 12%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역방송이 경영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방통위에서 이런 어려운 지역방송의 여 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 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저희가 지역방송발전특별법 에 따라서 지역방송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 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구체적으로 시기 를 언제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 고요, 물론 법 자체가 12월 시행이지만 저희가 그전서부터 준비를 해서 광고매출 부분과 관련해 서도 지금 많이 줄어든 부분이, 각 지역방송의 자체 광고매출이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찾아야 되고 저희 들도 지역방송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활성 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정 책을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런데 지역방송에서는 솔직하 게, 광고판매대행에 대한 법률 제22조 및 지역방 송지원 특별법 제4조 등에서는 지역방송에 대한 기금감면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역방송은 이를 근거로 해서 기금징수 면제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런 희망사항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책에 반영될 기미가 안 보이 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원 인이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가장 큰 원인이 뭡 니까? 이거 지금 징수 면제를 혜택을 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징수율 제도를 어느 한 분야가 적정 안 하니까 거기만 갑자기 낮추고 그렇게 하기가 곤란해서 전체적으로 징수 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서 올 해내로 징수율 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

래서 매출액에 따라서 또 적자폭에 따라서 내는 것이 달라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체계적 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내로 그 방침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합 리적인 방통위 발전기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徐相箕 委員 그러시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금 징수감면도 하나의 정책대안으로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를 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기 는 합니다.

○徐相箕 委員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런 징수감 면도 고려하고 계시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徐相箕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중에는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이 올해내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올해내로 저희들이 만 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알겠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답 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지원은, IPTV하고 종편 은 징수가 면제돼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면제는 아니고 징수율 을 0%로 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0%면 거의 면제지요. 그래서 IPTV하고 종편은 거의 면제 그다음에 위성방송 은 1.33 케이블은 1.0에서 2.8 그런 데 비해서 막 상 경영이 어려운 지역방송은 거기의 2배 혹은 그 이상인 2.78% 그런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 래서 어쨌든 간에 징수율도 높고 한 이런 지역방 송에 대해서 이런 불공평한 제도가 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지역방송의 아주 강력한 희 망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 일 내에, 금년 중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대안을 제 시해 주시고 또 그 대안 속에는 반드시 획기적인 분담금 징수감면 같은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 는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 실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 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홍의락 위원** 홍의락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방심위원장님, 아까는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지나가는 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오보방송이 거의 저거 됐는데 사실 이 오보방송이 국민의 많은 공분을 샀지요? 그런데 사실 제재를 보면 굉장히 솜방망이 제재를 한 것 으로 생각되어져서 아까의 칭찬에 비해서 이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밝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2일 방송된 MBC '섹션TV연예통신' 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 얼굴 윤곽을 음영이미지를 사용했지요? 그런데 MBC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에서 또 이 합성 이미지를 사용한 적 있는데 사실 위원장님 이런 이미지가 보도되고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지상파에서 계속 이런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멈춰야 되겠지 않습니까? 의도적이든 아니든지간에 심의를 통해서 엄중히 밝혀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응하는 제재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우상호 간사, 조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이 엄정하 게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리고요 위원장님, 불법스팸 과 태료 미수 문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 실은 국감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개선 여지가 없어요. 올 8월 기준 미납 과태료 누적이 1045억 원입니다. 아시고 계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홍의락 위원 현재 중앙전파관리소가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의무를 방통위로부터 위탁해서 수행 하고 있는데…… 이게 방송통신위원장님 거구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하는데, 지금 보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2008년도에서 2013년 6년간 불법스팸과태료 2회 이상 상습 부과대상 214건을 보면 전액 환수된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년간이 사람들, 그러니까 2번 이상 부과된 사람들을보면 과태료가 65억인데요 수납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전체 징수율은 37.9%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과태한 사람이 그걸 준수하는 건 37.9%인데 두 번

이상 한 사람들이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5%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거 관심을 쓰셔서, 징수를 포기하는 것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좀 할 수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습불법스패머들이 준동하지 않도록 해 주고 또 이런의지를 방통위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재산 조회를 하는 등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법무부라든지 그런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리고요 방통위원장님, 오늘 광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뽀로로 방영 전에 뽀로로 상품광고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게 지금 저희가 광고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인데 또 반대 측면에서는 어머니들 부모들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방심위에서 결정을하는 사항이지요? 심의규정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렇습니다. 아무 튼 이 캐릭터 광고 허용은 어린이 보호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서 균형을 취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위원 제 생각에는 콘텐츠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집중하시고, 뽀로로를 광고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나, 사실 뽀로로가 애들한테 뭐로 통하는가, 뽀통령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러면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좋지 못한 일이, 인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 의견에 공 감합니다.

○**홍의락 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홈쇼핑, 지금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적인 사전심의를 하는데 홈쇼핑 방송의 허위과장 비방 배

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청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홍의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물론 법적으로 깊이 관여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쳐 다만 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어서 정말 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봐 줬으면 좋겠고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저희들도 홈쇼핑 방송사들의 자체 심의실적을 제출받고 있 고 그다음에 심의 담당자들하고 교육이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유념 해서 더욱더 엄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의락 위원 그래서 자체 심의에 만전을 기하 는 그런 수준 말고 좀 더 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 문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희 위원**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의 주민번호 불법 수집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휴 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을 사실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통위가 금융위 에 요청을 해 가지고 신용정보법상으로 유권해석 을 긍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 사업자들이 여태 까지 주민번호 수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금 년 8월 7일 날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 보보호법이 시행이 되었고 주민번호 수집 예외규 정을 두고 있던 신용정보법도 소액결제 사업자를 제외하게 돼서 이제 소액결제 사업자가 주민번호 를 더 이상 수집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하게 되면 정 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

게 돼 있는데 법대로 한다면 휴대폰 소액결제 사 업자들 모두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2년 전에 신용정보법 해석상 수집 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다가 8월 7일 그 무 렵 돼 가지고 안행부에서 예외사유를 죽 나열하 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8월 7일부터 대체수단을 당연히 만 들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고 지금 안행부에서도 201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대체수단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 제 단속은 그 이후에 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해 가지고 대체수단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소액결제 사업자가 현재 불법으 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통위는 언제 알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안 것은 얼마 되 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알았다고 그럽니다.

○**권은희 위원** 방통위가 사실은 이것을 인지했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20일 날 금융위원회에 서 연락 와서 알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방통위는 금융위에 2012년에 요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 자가 주민번호 수집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 데요 이것을 챙기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면도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금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제서야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워낙 다양한 방면에서 수집 금지가 이루어지고 대체수단 마련하는데 시 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도 일응 2015년 2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어서 오히려 새로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걸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서 빨리 대체수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하여튼 방통위는요 2015년 2월까 지 더 이상 소액결제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 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사용에 대

해서도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제한 관련해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2014년 8월 17일까지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는 모두 다파기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알고 있습니다.
- ○권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주민번호를 파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 파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지금 조사를 시작해서 특히 큰 업체 위주로 주민번호 파기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 ○권은희 위원 지금 중소 웹사이트만 해도 한 3 만 개 되는데요 중소기업은 또 예산하고 기술이 부족해서 주민번호 파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 사업자가 주민번호 파기 기술 신청을 하면 방통위는 어떻게 해 줍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술 및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비용을 지원해 서 바로 파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오히려 많은 신청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 간은 비록 지났지만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 니다.
- ○권은희 위원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파기하면 사업자는 신용조회, 채권추심, 자동이체계좌 확인, 번호이동, 요금정산 등의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대체방안이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는 어떻게 대체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주민번호법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특 별하게 어떤 방안을 제시한 것은 현재로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권은희 위원 그런데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 일처럼 신경을 쓰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도 특히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마련하는 것은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

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권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OBS 경영 위기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OBS 방송?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경영 위기?
- **○문병호 위원** 예, OBS가 설립 이후에 올해 1/4분기까지······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적자 상황이요? 알고 있습니다.
- ○문병호 위원 누적 적자가 1380억입니다. 그래서 자본잠식률 97.1% 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OBS 경영 위기가 온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방통위도 그 한 원인을 제공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100% 지금 자체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광고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호 위원 제가 자세하게 조금 더 묻겠습니다.

미디어렙 시행 전에 OBS의 평균 광고매출 신장률이 50%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iTV 광고매출 신장률 역시 평균 102%였거든요. 그런데미디어렙 시행이 되면서 신생사 가중치로 17.3%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OBS는 사실 그냥 뒀더라면, 미디어 렙 정책을 하지 않고 그냥 뒀더라면 1년에 50% 이상의 광고매출 신장률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미디어렙 시행하면서 오히려 17.3% 묶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 방방송국은 대체로 자체편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문병호 위원 그런데 OBS만 유일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체편성 100%를 유지하고 있습 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체편성 100%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방송국은 오히려 수익은 먼 손해를 보고 있고 사실 여타 지방방송국들은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이익을 더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부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으시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문병호 위원 언제쯤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입 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거의 11월경에 제출받 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문병호 위원 12월경에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11월이요.
- **○문병호 위원** 11월경에?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문병호 위원 그리고 결합판매 지원 규모도 보 니까 지금 현재 삼점몇%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3.487%인데요. 이것도 5.3% 수준 정도 보장이 되 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OBS가 정상 경영 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꾸 OBS 측에 자본을 더 증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누 구도 증자하기 어렵습니다. 뻔히 지금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는 회사에 누가 자본을 대겠습니까?

그래서 방통위에서 어느 정도 OBS가 경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기준을 다시 좀 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호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적 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문병호 위원** 그리고 고객센터 재배치로 효율 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 또 대기업의 독과점 을 위한 편법 서비스를 규제해야 된다는 문제 그 리고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단통법이 개정이 되 면서 방통위가 할 일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문병호 위원** 이번에 단통법 시행으로 방통위

의 금지행위 의무 감시범위가 이통 3사에서 알뜰 폰 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 단말기 제조업체까 지 넓어졌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 ○문병호 위원 사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감독하 고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을 지 좀 의문입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저희가 1개 과 조직을 단통법 지원금 상한이 시행되는 3년 한시 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신설하게 됩니다. 1개 과가 더……
- ○문병호 위원 그런데 그래 가지고 될까요? 지 금 한 5만 개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결국 은 단통법을 개정을 할 때 이 문제도 조금 더 단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복잡하게 만 들어서 자꾸 감독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을 만들 때 단순화시켜 가지 고 좀 더 손쉽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를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도 한번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부분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 ○문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해진**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 또 보충질의, 추 가질의까지 세 차례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우상호 위원님, 3분 질 의하시고……

○우상호 위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방송통신 위원장님, 방송국들이 대부분 적자인데 다 어렵 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산업이 붕괴위기 에 있다'이런 말씀드렸는데 다 적자인데 다 방 발기금 면제해 주면 방발기금 고갈될 것 아니에 요? 홈쇼핑만 될 것 아니에요, 홈쇼핑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 말씀은 어려운 데 도와줘야 되는 것은 당연 한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보면 다 면제해 준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요, 정부기관인데.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취지는 아니고 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설계한……

○**우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설명 안하셔도 되고, 사실은 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는……

사실 너무 매체가 많아요, 시장상황을 안 보고 다 허가해 주는 바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2억인데 골프채널이 하나예요. 우리 골프 채널이 2개잖아요. 스포츠채널이 몇 개입니까, 인 구 4000만에? 시장상황 안 보고 막 그냥 허가해 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좀 주의하시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또 다 감해 줄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잠깐 좀 도와드리 려고 말씀드렸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감사합니다.

○우상호 위원 인앱 결제 앱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을 적에 처음에는 무료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여러 아이템 구입해서 돈 내게 되어 있는 이런 유인책인데요, 이게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린데요. 그래서 전부 무료라고 표시하는 것이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이것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우상호 위원** 주로 어린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앱 방식이거든요. 이것은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금지행위 차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방심위는 제가 들여다보니까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사업을 처음에 교육부하고 협조를 해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링해서 청소년 유해사이트가 있으면 차단시키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예산이 깎여 가지고 지금 제대로 아마 보급을 못 하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린i-Net'이라는 게 저희 집에도 깔려 있어요, 저도 애가 셋이고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13년 전 기술 가지고 지금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예산도 없어서 이게 아마 잘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청소년 유해사이트 막는 게 돈이 몇 억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산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옛날에 30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5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 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사실 교육이라고 하 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린 i-Net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 도처에 깔리게 되면 아주 그래도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그래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떻게 애들 유해정보 사이트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배려가 안 됐는가 싶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국회 차원에서 도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이 많이 도 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정말 소망하는바입니다.

○**우상호 위원** 그렇지만 청와대 오더 안 받고 그러면 씩씩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웃음소리)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물론입니다.
- ○**우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해진**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유승희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이미 한 것이기는 한데 방심위의 심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야 될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편향된 심의가 되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4년도 4월 30일 날 KBS가 세월호 관련해서 '선 내 엉켜 있는 시신 다수 확인'에 대해서 처음에 경고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유승희 위원 그리고 2014년도 7월 2일에 단원 고 학생 전원 구조 오보 방송에 대해서 9개 방송 사에 대해서 권고조치를 하셨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KBS에서 '이것 억울하다. 우리는 왜 경고조치냐?' 하니까 재심청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 계시지만 김성묵부위원장 그리고 고대석 위원께서 선처를 주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9개 방송사 오보에 대한권고조치의 형평성에 비추어 봤을 때 권고로 하자',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KBS 오디오 디졸브 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세월호 현장 방문했는데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하는 것을 삭제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박수 치는 것만 내보냈어요.

물론 KBS는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했고 그러

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권고조치 를 취했고 권고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에 박진서 위원은 '이것은 일관성과 균형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김성묵 부위원장께서 '이중 잣대가 아니고 합의가 안 되 고 이런 식으로 가면 대립이 되니까 결국 표결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신 것 같아 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권고조치로 됐는데 그 당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디오 디졸브 보도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권고조치를 취하나요, 아 니면 어떻게 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무튼 제가 알기 로는 어쨌든 오디오 디졸브가 KBS가 거기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또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가……

○유승희 위원 아니,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렇게 디졸브 하면…… 나중에는 또 유민아빠가 오랫동안 단식을 하니까 그분이 막 소리치고 항 의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방송사마다 앞다투 어서 방송을 했잖아요, 그것은 오디오 디졸브 안 하고?

그 당시에 오디오 디졸브 해서 방송을 했는데 상당히 그것은 고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렇게 해석을 선의적으로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권고조치입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때 경고조치를 그러면 합의해서 했 습니까, 아니면 표결해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마 이 권고조치 는 제가 알기로 조금 의견이 갈리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합의를 안 하고 표결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 김성묵 부위원장, 그때 기 억하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부위원장 김성묵** 예, 표결 로 했었습니다.

○유승희 위원 표결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JTBC에 관련해서는 징계조치를 했어 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청구를…… 그래서 다이빙벨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했는 데 이것에 대해서 함귀용 위원이 '의도적인 편성 프로그램이니까 이것은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런 데 의도적이냐 아니냐를 계속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 기각을 시켰는데 기각의견을 함귀용 위 원, 윤석민 위원, 김성묵 부위원장 이렇게 했습니 다. '사과가 없다' 그다음에 '결정에 권위가 있으 니까 번복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계 속해서 징계조치를 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방통위가 취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최종적으로 징계 제재 처분은 방통위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방 심위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의 이상의 경고, 관계자 징계 그 부분은 방통위가 하고 있 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것 어떻게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잘 아시는 것 처럼 저희가 그것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처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승희 위원 징계처분?

○위원장대리 조해진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어느 부분을 지 적하신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유승희 위원 JTBC 다이빙벨.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이빙벨 그 부분은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 **○유승희 위원** 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유승희 위원** 징계조치를 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재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 했고요. 원래 처음에 해 온 것은 처분 을 했고 재심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

○유승희 위원 기각을 했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각해 가지고 저희한 테 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처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재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희가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제도로서는.

(조해진 간사, 홍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승희 위원** 그래서 아까 징계처분을 심의를 하고 처분은 방통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냥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일원화 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나중에 좀 짚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시 안 하기 위해서 이것 조금만 마저 하면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번 더, 30초만……

○위원장 홍문종 예.

○유승희 위원 그래서 그 UHD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 도 어제 질의하는 중에 약간 착각을 해서 유료방 송이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이 아닌데 마 치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처럼 주파수도 모르는 위원들이 지상파방송한테 주파수를 줘라 뭐 이렇게 주장만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질의를 하는 중에 약간 착각을 한 건데, 우선은 어쨌든 UHD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UHD 방송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미래부는 유료방송 중심으로 UHD 추진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있고요. 그런데 무료 보편적 서비스 지상파방송이 UHD 방송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파수 문제 포함해서 종합적인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지상파가 UHD를 하게 될 경우에 대부분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상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상파가 UHD 방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님, 하루 종일 고생하고 오 셨습니다.

○徐相箕 委員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는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KBS 이인호 이사장님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임명 과정에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저희는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러시면 임명 과정에 문제될 게 없으면 결국은 경력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법에 정해져 있는 결 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 다.

○徐相箕 委員 그리고 최근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KBS 이사는 공공성의 책임이 있으므로 결과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토론할수 있다'하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의 우려라 할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이런 언급이 방송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그 앞부분에서인지 방송의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원들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어떤 개입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〇徐相箕 委員 그냥 미루어 짐작하신 것이지 이 것을 어떤 형태로 본인이나 주변으로부터 확인한 바는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날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에 그 런 표현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표 현을 그대로 다 외우지 못해서 옮길 수는 없습니 다마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우리 최 위원장께서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이시 고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통비법상 감청은 통신 중에 통신 내용을 취득·채록하는 것을 말하고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 내용을 보관하는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알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직접 그 판결을 본 건 아니지만 보도를 통해서 그 개요는 봤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카카오톡이 감

청 영장을 가지고 보관되어 있는 일주일씩의 기 통신된 자료를 검찰에다가 제공한 것은 감청 영 장에는 부합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잖 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쎄,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드신 그 판례 내용대 로라면 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마

○전병헌 위원 아니, 됐어요. 거기까지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병헌 위원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오전에도 제가 잠 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카톡 대표가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 놓고 이번에는 마치 해야 할 일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즉 감청 영장을 거부 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 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카카오서 비스 시스템으로는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대화 내용을 캐치할 수 없는, 감청할 수 없는 시스템 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감청 영장을 이후에 검찰이 들이댄다면 당연히 이제까지 잘못해 왔던 자료에 대한 이른 바 과잉 제출 서비스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그 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적어도 다른 포털은 몰라도 카카 오톡 대표에게 감청 영장을 들이대는 것은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도록 들이미는 것이고, 그것은 당 연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것 일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Ġ.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것은 역시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국민에 대 한 사찰과 소위 감시에 대한 공포적 분위기가 형 성되고 있는데 마치 이와 같은 위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위에 대한 선언이 소위 국사범이라든지 중대사 범을 잡는 데 치명적인 하자가 될 수 있는 것처 럼 이렇게 와전 내지는 왜곡 보도를 일부 언론에 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더 더욱이 일부 언론이나 보도를 보면 소위 말 해서 국사범 같은 것들이나 중대사범 같은 경우 만 해당이 되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같은 것 들은 해당되지도 않는다라는 취지로 일부 언론에 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보도 태 도는 대단히 심각한 현 국면에 대한 왜곡 문제라 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분명하게 그런 소위 말해서 왜곡 보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는 세월호 침묵시 위를 제안했던 대학생의 카톡과 모든 사이버망이 다 털렸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 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핀트가 빗나간 대응과 적 절치 못한 대응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왜곡되어 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요.

더 더욱이 이와 같은 문제는 지난 9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대통령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라는 그런 지시가, 사실상의 지시가 있었고 이것을 사법당국이 과잉 대응함으로써 문제가 불 거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 문제가 명예훼손이 나 허위사실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도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왜곡보도입니다.

왜냐면 9월 18일 날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사 이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자 대책회 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도가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말 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위원장 홍문종 정리를 하시라고 지금 1분을 더 드렸어요. 그런데 또 정리를 하세요?

○**전병헌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판례대로 한다면 감청 영장은 카톡에는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심위원장 말이지요, 좀 전에 우리 존 경하는 홍의락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홈쇼 핑 채널 심의가 3년 새 3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 런데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 심의는 허 위·과장 광고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런데 지난 소위 박근혜정부 1년 반 동안 방 심위에 불복해서 재심청구를 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같은 기간 3배가 늘어났어요. 이 것은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미운 다섯 살 식

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열심히 하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할 것은 제대로 안 한 그런 심의의 결과이고, 이것은 박효종 위원장이 있는 현재 기수의 방심위원회의 잘못이 대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방심위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데이터가 차곡차곡 심의 과정에서 결과가 누적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둬서 단순히 임기 3년 동안 대충 권력하고 편하게 지내겠다 또는 과잉 충성하겠다라는식의 심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번 방심위의 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우리 위원님 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들이 심각한, 치욕적인 그런 명예훼손 내지는

오욕의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하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게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역 발전, 방송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걸 부탁을 드렸 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조해진 위원 지난봄에 우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만들 때 위원님들 사이에 거의 이견 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방 송들의 그런 열악한,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현장에서 늘 봐 왔기 때문에 다 공감해서 그렇게 일단 조그마한 회생의 토대를 하나 만들 어 준다는 의미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TV를 틀어 보면 지방방송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서울에서도 그시간에는 서울 별도로 또 수도권방송이 나가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차이가 납니다. 같은 지방방송시간인데 수도권·서울에서 나가는 것하고 지역에서 나가는 것하고…… 그러니까 다른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에서 노력하는데 지역민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누리는 문화의 수준과 질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UHD 문제도 만에 하나 주파수 배정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수도권만 UHD가 나가고 지방에는 HD가 나간다고 하면 그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는 것, 그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취지고 지역의 방송들은, 어떤 방송들은 중앙의 본사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어려움에 허덕이는 방송, 어떤 방송은 독립채산인데 그것을 꾸려 나가지 못해 가지고 직원들이 다 영업을 뛰는 방송부터 해 가지고 정말 한계 상황에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는 데 실질적인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아무래도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거라서 그런 데대한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OBS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제가 우리 상임위 3년차인데 매해마다, 국 감 때마다 특정 사를 지정해서 그 회사는 어떻게 돼 가느냐, 살길이 있느냐, 버릴 거냐 이런 이야 기를 반복해서……

오늘 회사가 인천·경기를 대표하는, 1400~1500만을 대표하는 지역방송인데 대주주는 투자한계까지 다 투자를 했고 제가 봐도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자구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모든 콘텐츠는 자체 제작을 해 왔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다른 회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통위가 그런 인천·경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방송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활로를 도와주는 그런 적극적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 고, 국감 3년차에 똑같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최원식 위원** 방통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제정연구반 운영했고 요 야심차게 준비한 다음에 14년 7월 17일 방통 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고가 보류됐 는데 8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 가이드 라인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래서 권고 결정했 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최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가이드라

인이 좌초됐다, 그다음에 연구반도 종료되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지금 진짜 좌초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좌초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아무리 가이드라인이라도 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은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법 해석상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된 개인정보……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하겠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시면 이거 추진계획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담당자와 여기저기다 물어봤는데 그냥 '대략 검토하겠다'이런 막연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그거 보 셨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봤습니다.
- ○최원식 위원 그거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일단 법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지훈 박사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읽어보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그 논문은 못 읽어 봤습니다.

○최원식 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아예 입법을 통해서 정해야 될 것 같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드라인으로 한 게 아니라 아예 균형 있는 미래지향적인 개인정보보호제도 범주 내에서 입법화시키라는 입법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데 그건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빅 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보호 가치를 어떻게 같이 가져 나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균형을 잘 잡아서 검토를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으에 일청진 권리를 하 만쓴 더 드립게요

그다음에 잊혀질 권리를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잊혀질 권리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최근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인용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주당 한 530만 건의 정보삭제 요구가 들어와서 그걸 처리하느라고 비용과 처리방식에 대한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런데 거기는 찬반이 있지만 일단 위원장께서도지금 방통위 주요정책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히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랬습니다.

○최원식 위원 원칙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최근의 개인정보 주권 그다음 사생활 보호 등등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률적으로 딱 인정된 다 안 된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 위키피디아에서는 '정보검열이다' 그러고 위키피디아 설립자인 지미 웨일스는 '심각한 정보검열이다' 또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될 경우에 검색포털의 역할변화, 사업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과 구글의 관계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전제가 있고 또 한편은 아주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충분한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인만큼 공론화를 충분히 거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지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통위와 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위원님들의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자의 단말기 구매부담 가중문제, KBS 이사 임명 절차와 관련된 사항,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배정문제, 종편채널 재승인 조건 이 행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되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 오보에 대한 제재문제, 종편채널의 심의건 수 대비 제재건수 감소문제, 음란 유해사이트 증 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미흡 문제 등 다양한 문 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방송 시청자와 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최원식 위원, 김재경 위원, 우상호 위원, 이재영 위원, 최민희 위원, 권은희 위원, 문병호 위원, 민병주 위원, 조해진 위원, 전병헌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방통위를 비롯한 해당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 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확인감사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 아침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21시5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23인)

강 길 부 권 은 희 김 재 경 류 지 영 문 병 호 민 병 주 배 덕 광 서 상 기 송 호 창 심 학 봉 우 상 호 유 승 희 이 개 호 이 군 혀 이 재 영 장 병 완 전 병 헌 정 호 준 조 해 진 최 민 희 최 원 식 홍 문 종 홍 의 락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०]	인	용
전 문 위 원	정	창	모
○피감사기관 참석자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 장	최	성	준
부 위 원 장	허	원	제
상 임 위 원	김	재	홍
상 임 위 원	0]	기	주
상 임 위 원	고	삼	석
기 획 조 정 실 장	라	봉	하
방 송 정 책 국 장	정	종	기
이용자정책국장	호	남	석
방송기 반국장	김	영	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 원 장	박	ক্র	종
부 위 원 장	김	성	묵
상 임 위 원	장	낙	인
사 무 총 장	박	영	찬
기 획 조 정 실 장	최	옥	술
방송심의국장	0]	종	대
통 신 심 의 국 장	박	행	석
권익보호국장	박	우	귀
조사연구실장	조	규	상

○출석 참고인

박희정(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